



Uzbekistan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우즈베키스탄

2018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Uzbekistan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우즈베키스탄

2018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본 안내서는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세법 등을 2018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참고자료일 뿐,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우즈베키스탄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조문 등을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세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I. 우즈베키스탄 국가 개황 3
 - 1. 국가 개관 4
 - 2. 정치·사회 동향 9
 - 3. 경제 동향 14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18
 - 5. 수입규제제도 및 관세제도 21

- II. 우즈베키스탄의 기업 설립 및 투자 27
 - 1. 투자 28
 - 2. 주요 투자법 40
 - 3. 투자진출형태 및 법인설립 46
 - 4. 투자입지 여건 63
 - 5.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75
 - 6. 노무관리제도 80
 - 7. 금융제도 86
 - 8.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89

- III. 세무조사 91
 - 1. 세무조사 92
 - 2. 조세위반에 대한 제재 107
 - 3. 조세구제제도 110
 - 4. 이전가격세제 112



목차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우즈베키스탄)



IV. 우즈베키스탄의 조세제도	119
1. 일반현황	120
2. 법인세	123
3. 소득세	136
4. 부가가치세	144
5. 소비세	157
6. 기타 세목	160
7. 우즈베키스탄의 회계	180
8. 최신 개정사항	182
9. 기업인의 애로사항	192
* 참고문헌	200



책자 구성과 범위

1) 우즈베키스탄 세무안내 책자 발간의 의의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인 사마르칸트가 자리 잡고 있는 유라시아의 주요 교역로에 위치하여
 - 오래전부터 국제교류와 학문예술의 중심지였으며, 또한 금, 석탄, 우라늄,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잠재가능성이 무궁무진함
 -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의 3대 투자국이자 5대 교역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있고, 한국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도가 매우 높음
- 1992년 정식수교 후 15차례 이상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져 왔을 정도로 양국관계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오
 - 그러나 현지진출기업에 대한 세무안내는 '07년도 발간된 책자가 유일하며, 우즈베키스탄의 세법 및 세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된 우즈베키스탄 관련 세무 및 투자가이드가 필요함

2) 본 연구내용의 특징

- 복잡한 우즈베키스탄의 조세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
 - 현지진출기업과 거주자가 꼭 알아야 되는 세법과 세무사례를 상세히 소개함
- 최신의 신뢰도 높은 현지자료 반영
 - 연구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적시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과감히 배제
 - 현지 진출기업인과 주우즈베크대사관 등으로부터 적시성 있는 현안자료를 수집하여 신뢰도를 제고하였음

우즈베키스탄 국가 개황


I

- 1. 국가 개관 / 4
- 2. 정치·사회 동향 / 9
- 3. 경제 동향 / 14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18
- 5. 수입규제제도 및 관세제도 / 21



1 국가 개관

□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 3,197만명(2016년 3분기) ○ 면적 : 447,400천km²(한반도의 2배) ○ 수도 : 타슈켄트(230만명) ○ 화폐 : 우즈베키스탄 소(UZS) ○ 언어 : 우즈베크어 ○ 민족 : 우즈베크인(82.9%), 타지인(4.8%), 러시아인(2.7%), 고려인(0.7%), 기타(8.9%) ○ 종교 : 이슬람교(수니파 70%, 시아파 20%), 그리스정교(9%)
---	--

○ 국가명 어원

-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의 이름에 붙은 ‘-스탄’은 페르시아어에서 기원하며 「나라, 땅」이라는 뜻을 내재하고,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명은 ‘우즈베크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뜻임

○ 국가 역사

- 우즈베키스탄의 기원은 13세기 몽골족에서 기원하며 14세기의 칸 우즈베크 통치하에서 전성기를 누렸으며 여러 민족들의 점령기를 거치면서 쇠퇴함
- 1855~76년 러시아 영토가 되었고, 1924년 소련 내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이 세워졌다가 1991년 완전한 독립을 얻어서 현재 국명으로 개칭함



○ 자연환경

- 국토의 남쪽과 동쪽에 기름진 오아시스와 높은 산맥이 있지만, 국토의 거의4/5는 햇볕에 말라붙은 평평한 저지대임
- 기후는 사막성 대륙성 기후에 속하여 국토의 대부분이 연중 매우 건조함. 여름이 매우 길고 따뜻하며, 겨울이 짧고 대체로 온화한 편임

○ 사회 주민

-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즈베크 족은 원래 타지크 민족과 15세기에 그들을 정복한 몽골민족의 혼혈로서, 15세기까지 킵차크 칸국의 지배를 받던 유목민이었음
- 1312년부터 1340년까지 북부유목지역을 통치한 사람의 이름이 ‘우즈베크 칸’ 이었고, 우즈베크 칸이 이슬람을 강력히 전파하면서 우즈베크이라는 말이 이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져 오다가, 점차 이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15세기에 이르러 우즈베크이라는 이름이 왕조와 국가명칭 그리고 민족 명으로 사용되게 되기에 이름

○ 인구

- 우즈베키스탄의 인구는 3,197만명이며, 130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임
-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우즈베크 민족의 이슬람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으로 러시아인들과 다른 소수민족들의 입지에 대한 불안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떠나고, 옛소련의 다른 나라에서 우즈베크인이 돌아오고 있어서 소수 민족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
 - * 러시아인 비율 : 1989년 (35%) ⇒ 2005년 (3.7%)⇒2016년(2.7%)
- 우즈베크인(82.9%), 러시아인(2.7%), 타지크인(4.8%), 고려인(0.7%)¹⁾

1)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 국가 연합 전체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통칭하며, 까레이스키라고도 한다. 1860년대 조선에서 흉년과 수탈이 계속되자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로 이주해 토지를 개척하며 정착했다. 한일합병 후에는 일제 식민통치의 압제를 피하거나 또는 민족해방운동을 위한 근거지로서의 이민이 더욱 증가했다. 그러나 연해주에 살던 약 18만명의 한민족들은 1937년대 구소련 당국에 의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6,000킬로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노약자와 어린이 등 약 60%가 죽었다고 한다. 현재 우즈베크에는 18만여명의 까레이스키가 살고 있다.



○ 언어

- 우즈베키스탄의 공식 언어는 우즈베크어이며, 민족 간의 소통언어로서 러시아를 사용함
 - * 독립 이후에 우즈베크어 사용을 권장하면서 러시아어의 중요도는 떨어짐
 - * 지방, 농촌으로 가면 러시아를 전혀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음
- 우즈베크 정부의 민족주의 노선에 따라 거리의 대부분 간판이나 공식 서류가 우즈베크어로 되어있으며 2004년부터는 100% 우즈베크어로만 공식 서류가 발행됨
 - * 러시아계와 고려인 등 우즈베크어를 모르는 소수민족들은 생활의 불편과 함께 그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음
- 하지만 러시아어는 이민족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때 중요한 언어이며, 사업·학술분야 및 대학교육에서 러시아어가 교수언어가 되고 있음

○ 종교

- 주민의 88%가 무슬림이며, 이 중 다수(70%)가 수니파임
 - * 원래 불교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으나, 8~9세기에 이슬람 제국의 침략으로 이슬람화됨
- 1991년 독립 이후 이슬람 부흥 운동으로 자발적인 이슬람교육과 여성들의 베일착용이 증가하고 있음
 - * 소수종교로서는 러시아 정교회를 포함한 기독교가 대부분 차지
- 이슬람교가 다수인 나라임에도 금요일이 주말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이 주말임

□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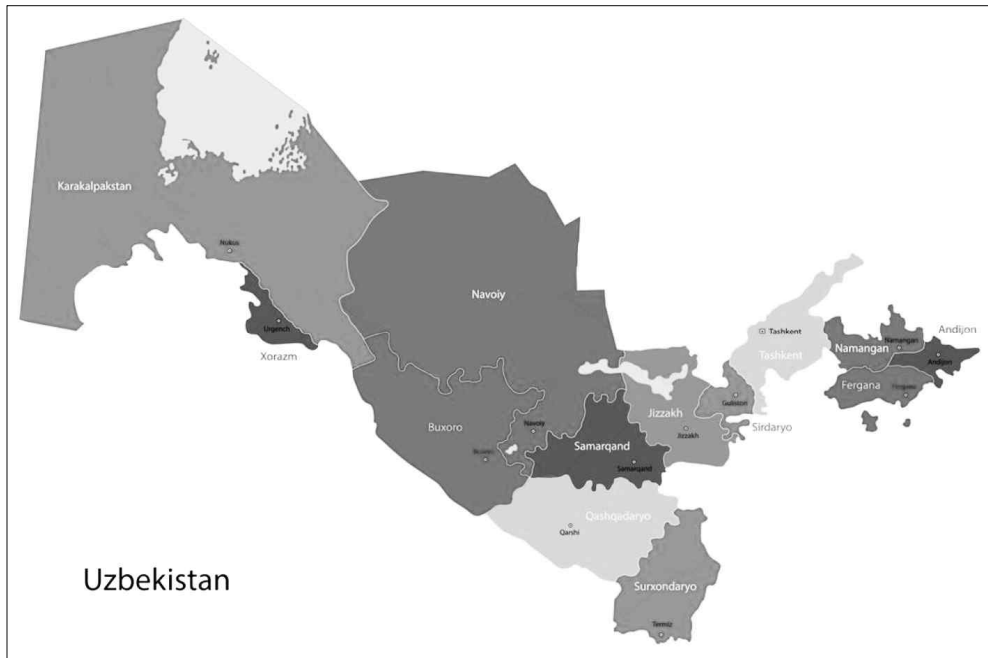
1개 특별시	수도 타슈켄트
12개주 (Viloyat)	일반광역자치단체,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페르가나, 나망간, 부하라, 안디잔, 지작, 시르다리야, 카쉬카다리야, 수르하다리야, 나보이, 호레즘
1개 자치공화국 (Respublic)	카라칼팍 자치공화국(칼라칼팍인 32.1%) 대규모 소수민족 집단에게 부여한 자치단체로 독자적인 헌법과 법률을 보유함



○ 12개의 주와 160개의 군, 1개의 자치공화국, 1개의 특별시로 구성

행정구역	중심도시	인구(명)	면적(km ²)
안디잔 주	안디잔	2,948,600	4,300
부하라 주	부하라	1,835,900	40,320
페르가나 주	페르가나	3,549,600	6,800
지작 주	지자흐	1,294,700	21,200
호레즘 주	우르겐치	1,767,600	6,100
나망간 주	나망간	2,640,500	7,400
나보이 주	나보이	938,900	110,900
카슈카다리야 주	카르시	3,072,000	28,600
카라칼파크스탄 주	누쿠스	1,809,300	166,000
사마르칸트 주	사마르칸트	3,634,200	16,800
시드라리야 주	굴리스탄	698,100	5,100
수르한다리야 주	테르메스	2,012,600	20,800
타슈켄트 주	타슈켄트	2,537,500	15,200
타슈켄트	타슈켄트	2,192,700	335

출처 : 위키백과, 2016. 3월





□ 국가체제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임기 5년)
- 대통령 : 샤프캣 미르지요예프(2016년 취임)
 - 수상 : 아리포브 압둘라 니그매토비치
- 중앙정부 소속 내국부처 장관

기관	성명
경제부	Galina Saidova
재정부	Khodjaev Batir Asadillavich
농림수자원부	Mirzaev Zoyir
노동사회부	Abduhakimov Aziz
고등교육부	Majidov Inom Urushevich
교육부	Ulugbek Inoyotov
보건부	Alimov Anvar
내무부	Azizov Abdusalom
국방부	Berdiyev Kabul Raimovich
비상사태대책부	Djurave Rustam Mirzaevich
외교부	Abdulaziz Kamilov
대외무역부	Elyor Ganiev
법무부	Ikramov Muzraf
문화체육부	Muratov Maxmudjon Muminovich
정보기술통신개발부	Shematov Sherzod Khotamovich



2 정치·사회 동향

□ 정치·사회 동향

○ 카리모프 대통령 장기집권 및 서거(2016.9.2.)

- 1990년 3월 공산당 최고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1991년 12월 대선에서 86%를 득표하여 최초로 5년 임기의 민선대통령에 당선
- 1995년 3월 개헌국민투표를 통해서 2000년까지 임기 연장 후, 2000년 1월 대선에서 단독후보로 나와서 재선 성공함
- 이후 대통령 임기연장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를 수차례 실시하면서 임기를 연장하였고, 2007년 12월, 2015년 3월의 대선까지 90% 이상의 득표율을 보이며 4선에 성공함
- 2016년 8월 리우올림픽대표단과의 만찬 후, 뇌출혈이 발병하여 상태 악화로 9월 2일 서거하면서 25년의 통치가 막을 내림
- 카리모프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권위주의적 통치기반의 공고화를 꾀하였고, 주변의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등 구 소련권 국가들의 시민혁명도미노를 차단하기 위해서 자국 내 반정부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 대표적으로 2005년 발생한 안디잔 사태로 국내정치의 위기가 고조되고 국제적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언론 통제와 이슬람 반정부 세력, NGO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음

*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지방씨족의 양대 세력인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출신 정치인들을 공직에서 해임시키는 방식으로 지방 세력 약화 정책 시행

- 카리모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서방과 인권단체는 그를 철권통치, 민주주의를 탄압한 독재자, 1만명이 넘는 사람을 정치범으로 수감한 인권 탄압자 등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나,

* 자국 내에서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국민을 보듬는 민족의 아버지이자, 공화국의 아버지, 우즈베크 경제발전을 일군 대통령 등 국민들의 전적인 지지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샤프캣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당선 및 신정부 수립**

- 대통령 유고시 우즈베키스탄 헌법에 따라 상원의장이 국가원수권한을 대행하게 되어있으나, 카리모프 대통령 서거 직후 양원결의에 의하여 샤프캣 미르지요예프 총리가 대통령권한 대행직을 수행함
- 2016년 12월 4일 실시된 우즈베키스탄 대선에서 현 대통령 권한대행인 샤프캣 마리지요예프가 86%의 득표율로 당선됨
- 미르지요예프 신임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 광범위한 정치경제사회 개혁 지속, △ 사회 안정 및 안보 강화, △ 법치 및 민주주의 강화와 시민 사회개발, △ 경제개혁 및 자유화, △ 사회복지강화, △ 국민과의 지속적 대화 등 6대 주요과제를 제시함
- 상기 과제의 일환으로 「2017~2021 우즈베키스탄 발전심화를 위한 행동 전략」 초안이 곧 완성될 것이며, 동 초안에는 △국가건설, △사법시스템 개선, △경제자유화, △사회분야발전 가속화, △적극적 외교정책 수행이라는 5대 우선과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경제부, 재무부, 대외경제부, 민영화위원회, 은행시스템, 시장인프라 관련기관 등의 업무효율성을 크게 개선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높은 성장률 유지, △지방, 특히 경제사회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가속화, △실질소득과 생활여건 개선을 우선적 관심사항으로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개편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 의회 역할 강화와 관련, 외국투자유지를 위해 외교부와 관련기관 업무에 대한 의회의 효율적 감독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원 제1부의장 직위를 신설한다고 하고, 법 불이행 통제 메커니즘 구축 및 지방의 국가 권력 기관 활동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향후 정세 전망

- 최근 미국과 EU와의 외교관계는 반테러에 대한 협조, 인권 보장수준을 높이려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의지, 유럽 몇몇 국가들의 새로운 가스 공급처 모색 등의 이유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임
-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는 카자흐스탄과는 2012년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서 양국 간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등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있으나, 그 외의 키르기스스탄과 민족 분쟁 및 인접국 아프가니스탄의 정세 등이 향후 정치안보적인 잠재위험요소로 꼽힘
-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파키스탄과의 지역안보, 외교, 경제 등 분야에서의 협력과 결속력 확대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서방 및 러시아 복수 여론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정책기조가 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고 있어 러시아와의 외교, 경제적 협력관계가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현 대통령은 카리모프 대통령보다 더욱 개방적인 성향을 보유하고 있으나, 과거 카리모프 대통령 집권 때와 비슷하게 인권이나 민주주의에서의 큰 진보나 개선은 없을 것이며, 장기집권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흐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함

□ 서방과의 관계

○ 러시아와의 관계

- 소련해체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을 벗어나고자 탈러시아를 피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정치,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털어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는 SCO CSTO 등에 가입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적극 대처 및 서방의 정치, 경제 개혁압박에 대한 반작용으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로 우즈베키스탄 대외 무역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러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투자액은 총 60억 달러로 집계됨

*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에는 Gazprom, LUKOIL 등 100여개 이상의 러시아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850여개 이상의 합작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6년 12월에 취임한 샤프캣 미르지요에프 신임대통령이 친러 성향으로 평가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양국 간 정치, 외교, 경제적인 더욱 공고화될 전망이다.

○ 미국과의 관계

- 안디잔 사태 이후 민주화와 인권문제로 양국관계가 악화되었으나, 우즈베키스탄의 대테러전 협력, 인권문제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조치 등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제재조치 일부 해제효과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점차 개선됐으며, 양국 간 장관급회담 개최를 통해서 정치,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음
- 현재 미국기업이 투자한 170여 개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양국은 경제적 협력을 위한 법적 틀을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 2013년 미국 중앙아시아 지역 외교차관보 로버트 블레이크는 우즈베키스탄의 WTO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우즈베키스탄도 가입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됨

○ 유럽과의 관계

- 안디잔 사태 후, 유럽연합은 비자제한 조치 등의 제재조치를 시행했으나, 현재 모든 제재조치는 해지됐으며 현재 아프칸 전쟁을 비롯한 반테러리스트 공조, 지역안보의제, 인권문제 개선 노력, 에너지 공급처 확보 등의 이유로 우즈베키스탄과 EU와의 관계는 점차 개선되고 있음



- 2016년 3월 EU는 우즈베키스탄의 낙후된 전력선을 가진 지역의 전력망 개선 프로젝트를 위해 1,000만 유로(약 1,117만 달러)의 재정지원계획을 발표했으며, 동 프로젝트에는 프랑스 개발위원회가 참여할 예정임

○ 중국과의 관계

- 2004년 6월 우즈베키스탄-중국 정상회담 계기로 동반·우호 협력관계 증진선언에 이어 안디잔 사태 이후 2005년 5월 카리모프 대통령 방문 시 중국,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지지 및 우즈베키스탄 국내문제 불간섭,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및 경제문화 등 실질협력증대, 우즈베키스탄 내 가스, 원유개발 참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우호협력 동반자관계 협정체결로 양국관계가 격상됨
- 2010년 6월 우즈베키스탄 국영공사와 중국석유공사가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기본협정을 맺어서, 매년 약 1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중국-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국에 공급하고 있음
- 한편, 중국도로공사는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간 철도건설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예상 사업비는 13억 5,000만~20억 달러 규모로 투자회수기간은 12.5년으로 900km 이상의 철도 건설시 동북아시아와 중동지역 운행기간이 단축되고, 이용 물류량도 연간 2,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은 정치·외교적으로 상하이협력기구, 경제적으로는 일대일로 정책과 맞물려 있으며, 최근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투자국이자 2대 교역국으로 급격하게 그 지위가 부상하고 있어, 앞으로도 러시아와 함께 지역경제 및 정치의 주요파트너로서 키플레이어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일본과의 관계

- 일본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유·무상 원조국으로 1997년 하시모토 총리에 의하여 실크로드 외교를 전개해 우즈베크 독립이후 총 35억 달러에 달하는 개발원조와 차관을 제공해왔음
- 일본이 우즈베키스탄에 운송수단 현대화, 급수설비 보수 및 건설, 의료, 교육, 농업 등 분야에 무료로 지원하는 보조금 협정을 체결하는 대신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풍부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하고 있음

3 경제 동향

□ 주요 경제지표

구분	경제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내 경제	명목 GDP	백만USD	51,076	56,297	58,600	61,600	61,692	48,600	
	1인당 GDP	USD	1,736	3,829	1,955	1,944	1,920	1,522	1,183
	경제실질 GDP성장률	%	8.2	7.1	8.1	8.0	8.2	5.3	4.8
	재정수지(GDP 대비)	%	0.5	0.3	0.3	0.2	0.1	0.3	0.2
	물가상승률	%	11.0	11.9	11.7	8.5	10.5	14.4	17.1
대외 경제	실업률	%	4.9	4.9	5.1	5.2	5.2	-	-
	수출	백만USD	14,258	15,087	14,109	12,870	12,568	13,894	-
	수입	백만USD	12,027	13,798	13,959	12,415	12,114	13,010	-
	외국인투자금	억 USD	32.77	30.16	29.49	33	33.5	-	-
	외환보유고	백만USD	9,119	10,675	13,308	14,838	14,182	-	-
	환율(연말기준)	달러당숨	1,978	2,198	2,412	2,776	3,205	8,120	8,505

출처 : IMF, EIU, 우즈베크통계위원회, WB(투자)



□ 현황분석 및 전망

○ 점진적인 거시경제의 성장 및 전반적으로 느린 구조개혁의 속도

- 최근 수년간 거시경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는 우즈베키스탄의 점진적 경제 개방정책, 건설인프라 투자 및 자국 산업, 생산육성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 세제개혁 및 세금부담 경감 등 일부 분야에서 발전이 있었지만, 구조개혁의 속도는 전반적으로 느린 편임
- 은행시스템의 개선, 무역 및 대외결제시스템의 자유화, 보다 유연한 환율정책 등을 IMF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즉각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 어려움

○ 1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는 풍부한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원면, 금, 에너지 등 천연자원을 이용한 1차 산업위주로 발달함
 - * 중앙아시아 3위 규모의 천연가스(확인매장량 1조 5억 8,000만㎥, 세계확인매장량의 0.9%), 상당량의 원류(확인매장량 6억 배럴) 및 금등이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
- 1차 산업의 수출액이 총 수출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편중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제시장의 원자재가격 추이에 지대한 영향을 받음
 - * 이런 취약성을 우즈벡 정부도 인식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기 위해 제조업 육성, 면화 및 에너지 자원을 가공하는 2차 산업분야의 생산설비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산업다각화를 꾀하고 있음

○ 신정부 수립에 따른 정치·경제변화 가속도

- 2017~2021년 간 산업생산량 1.5배, 2030년까지 GDP 2배 증대를 목표로 경제전반에 걸친 자유화 정책 추진
- 경제 발전을 위해 6개 분야 77개 세부 시행계획 추진 중이며,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경제체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금, 우라늄,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경제적 잠재력이 다대
 - 인구 3,190만명의 중앙아 최대 인구보유국이며, 금, 우라늄,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
 - 진입 장벽이 높고, 폐쇄적인 시장이나,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아서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장임

- 안정적인 진출기반조성으로 우리기업의 투자진출을 통한 시장선점 필요
 - 그동안 외화환전지연, 과실송금 제한, 이중환율 존재, 국가기관의 민간 기업관리 등으로 글로벌기업 및 선진국 기업들의 시장진출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음
 - 하지만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기업 활동 간섭금지, 외화환전 자유화, 수출 외화소득 강제 매각 폐지, 과실송금 제한 폐지 등으로 인하여 현지 투자 생산의 이점이 더욱 커진 상황임

□ 19년 주요이슈 및 전망

- 국제적 표준에 다가가기 위한 경제개방 지속 추진
 - 관세·소비세 조정 및 법인세 등 세제 개편 실시
 - * 법인소득세 인하(일부업종 제외), 이자배당소득세 인하, 부가가치세 상계 시스템 도입
 - WTO 가입 재개 추진
 - * WTO 가입에 대한 효율적인 과업수행과 주기적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로드맵을 승인하였으며, 로드맵에는 WTO가입재개와 국가법률 개정 서류 준비 작업을 목표로 하는 34개 활동도 포함되었음
 - * WTO 가입은 우즈벡 대외 경제정책 우선현안 중 하나이며, 국가의 이미지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인지되고 있음



- 국가 등급 획득 및 채권발행 확대 추진
 - * 대통령결의안을 통해 국가 등급 획득 및 채권발행 부문 자문 제공을 위하여 JP Morgan Chase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 컨소시엄 승인
- 민관협력 인프라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확대
 - * 터키 컨소시엄의 타슈켄트~사마르칸트 간 유료고속도로사업, 캐나다 SkyPower Global사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투자 등

○ 국가개발전략 추진 및 중점·신규산업육성 강화

- 중점육성산업지원강화 및 수출확대
- 가상화폐 등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 및 기술 도입추진
 - *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공문화기관의 입장권 판매를 위한 통합전산망 구축

○ EBRD, ADB, IDB, WB 등 국제금융기과와의 협력확대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우즈벡 사무소 재개소에 따른 협력관계 재정립 및 확대
- IDB, ADB 등과 중장기 국가파트너십 전략 마련 및 채택
 - * 향후 3년간 10억불을 조성하여 상하수도, 교통인프라, 전력보급, 청년일자리 마련, 보건현대화 등을 지원할 계획
- 정부기관, 공기업 등의 운영효율화 및 선진화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
 - * ADB, 우즈벡석유가스공사 구조조정 관련 컨설팅 제공 등 구조조정 지원 예정
 - * 세계은행-우즈벡 국가투자위원회 간 민간항공 현대화 유상 컨설팅 협약체결-민간항공 운영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과 관련제도, 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 예정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및 주요현안

○ 1992. 1. 22 국교 수립 후 양국간 우호협력기조 유지·발전

- 타슈켄트에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개설(1993. 12)
- 김영삼 대통령우즈베키스탄 방문(1994. 6)
- 서울에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개설(1995. 12)
- 노무현대통령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2005. 5)
- 카리모프 대통령 한국 방문(2006. 3)
- 이명박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방문(2009. 5)
- 박근혜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방문(2014. 6)

○ 양국간 교류현황

- 92년 국교수립 이후 다방면에 걸친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항상 상대국의 입장을 지지해오고 있음
-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경제성장 모델 및 경제협력파트너이며, 우즈베키스탄은 CIS 국가들 중 한국기업들의 투자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중 하나임
- 2014년 12월 기준 양국 간 연간 교역액은 20억 3,200만 달러이며, 2015년 10월 기준 11억 3,800만 달러를 기록함



□ 교역 및 수출입 동향

○ 한국-우즈베키스탄 교역동향

(단위 : 백만US\$,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 출	2,033(3.3)	1,284(-36.8)	928(-27.7)	1,180(27.2)
수 입	27(-48.5)	16(-41.0)	21(28.7)	18(-12.5)
교 역	2,060(1.9)	1,300(-36.9)	949(-27.0)	1,198(26.8)
무역수지	2,006(4.7)	1,268(-36.8)	907(-28.5)	1,162(28.2)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양국교역액은 2016년 9억 4,800만 달러, 2017년에는 5월 현재 4억 5,5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2014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여 온 교역액이 2016년에는 전년대비 27% 감소하였으나, 2017년 들어서는 회복세로 전환됨

○ 우리나라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동향

- 17년 한국의 대 우즈벡 수출은 전년대비 27.2% 증가한 11억 8,000만 달러를 기록
- GM 우즈베키스탄 완성차 부품 1차 벤더를 통한 자동차부품과 승용차 수출이 대 우즈벡 수출의 약 58% 차지
- 17년 주재국의 자동차 양산목표가 전년대비 2배가량 확대되면서 자동차 부품 수출 63.3% 증가하였으며 승용차는 GM의 DKD방식 중형차(SUV, 세단) 수출확대로 122.8% 증가
- 그 밖에 플라스틱 제품 등의 현지 생산 증가에 따라 폴리프로필렌, ABS합성수지 수출이 78.0% 증가하였음
- 아울러 한-우즈벡 농기계 R&D센터 조성을 위한 농기계, 한국형 온실에 대한 관심·수요증가에 따른 온실관련 기계·설비 및 부분품 수출이 확대되며 기타 농기계 품목수출 712.1% 증가



<주요품목별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 현황>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 (MTI)	품목명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수출			1,284,047	-36.8	927,671	-27.8	1,180,448	27.2
1	7420	자동차부품	532,507	-34.1	338,530	-36.4	552,989	63.3
2	7411	승용차	93,053	-36.0	59,525	-36.0	132,647	122.8
3	7289	기타농기계	3,905	-11.8	9,420	141.2	59,189	528.3
4	2140	합성수지	44,583	-40.7	28,282	-36.6	50,349	78.0
5	7111	원동기	79,556	-14.9	21,305	-73.2	20,643	-3.1
6	5121	의자	18,308	-46.1	11,348	-38.0	18,571	63.6
7	7112	펌프	40,810	-17.1	30,007	-26.5	18,387	-38.7
8	2290	기타정밀 화학제품	6,334	318.0	13,539	113.7	3,945	-37.2
9	7251	건설중장비	23,522	-56.5	9,472	-59.7	6,394	61.5
10	9990	기타잡제품	94	-11.6	59	-36.9	13,633	22,940.8
11	6141	철강관	4,856	-68.9	5,212	7.3	12,529	140.4
12	2221	도료	13,620	-26.8	6,315	-53.6	11,893	88.3
13	8137	소프트웨어	287	-35.2	6,992	2,333.1	11,589	65.7
14	3203	타이어	9,451	-53.9	8,810	-6.8	9,591	8.9
15	7512	밸브	3,166	-89.5	14,391	354.4	8,665	-39.8
16	6152	철구조물	3,100	-87.4	16,140	420.5	8,653	-46.4
17	1336	윤활유	5,003	-29.9	6,795	35.8	7,335	7.9
18	7216	기타기계류	31,026	192.6	11,931	-61.5	7,211	-39.6
19	5151	문구	7,036	-31.2	4,170	-40.7	7,131	71.0
20	4490	기타전기부품	176	-27.0	69	-61.1	7,063	10,191.0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 대 우즈베키스탄 수입동향

- 17년 한국의 대우즈벡 수입액은 전년대비 12.5% 감소한 1,817만 달러를 기록
- 주재국의 수출장려정책에 따라 현지 진출 자동차부품 생산법인으로부터 한국으로 일부 부품 수입확대(188.0%)



- 저밀도에틸렌과 실크면수입증가로 합성수지(142.9%) 및 천연섬유원료 (1,795.8%)수입증가

<주요품목별 대 우즈베키스탄 수입 현황>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 (MTI)	품목명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수입			16,137	-41.0	20,777	28.7	18,170	-12.5
1	2511	면린터필프	6,285	-10.7	6,739	7.2	6,815	1.1
2	4213	면사	2,779	-49.0	5,184	86.5	2,938	-43.3
3	4331	순면직물	422	369.5	2,866	578.2	2,538	-11.5
4	0156	식물성한약재 (감초 등)	3,579	15.8	2,529	-29.3	2,004	-20.8
5	7420	자동차부품	437	72.5	209	-52.2	601	188.0
6	0116	과실류	159	-71.9	557	251.5	547	-1.8
7	0191	천연섬유원료	0	-100.0	24	0.0	466	1,795.8
8	2310	질소비료	545	-61.7	313	-42.6	448	43.0
9	2140	합성수지	11	-100.0	13	0.0	406	142.9
10	0134	식물성액즙	0	0.0	171	0.0	208	21.6

5 - 수입규제제도 및 관세제도

□ 수입규제제도

○ 의의

- 우즈베키스탄은 국내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규제사항도 상당 부분 개정되고 있음



- 또한 행정절차가 매우 후진적인 국가로 강력한 수입관련 조치가 발효되면 하부행정절차가 마비되는 경향도 있음
- 특정항목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반송에 따른 보관료, 운송료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전 수출품목이 대상 품목인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수입금지 품목

- 공공질서, 영토수호, 정치적 독립 및 국가 주권의 저해와 전쟁, 폭력, 테러 및 반유대주의나 파시즘같은 종교적, 인종적 차별을 목적으로 한 인쇄출판물, 원고, 그림, 영화 등의 매체물 및 포르노 콘텐츠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수입금지품목
 - 군비, 탄약 및 군사장비
 - 항공기 부품 및 그 장비
 - 군수물자 및 항공기 제조를 위한 기계
 - 폭발물·독극물
 - 기타 금지품목

○ 수입규제품목

- 2013년 1월 29일 자로 대통령결의안 ‘자국 상품의 경쟁력 제고 및 상품 불법반입 대응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수입축소를 위한 관세 및 쿼터 등 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소비재 품목을 발표함
- 위 법규에 따라 직접적인 수입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지만, 높은 관세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수입금지에 가까운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기타 수입제한 법규

- 영토 내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각종신고서 제출의무화
 - 우즈베키스탄 국경 세관통과 상품 및 운송수단, 수송규제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규정으로 2013년 4월 1일 이후 상품 및 운송수단 수송시 항공, 철도, 도로, 해운으로 우즈베크 국경 세관을 통과하는 경우에 적용됨
- 수입 소비재 품목에 대한 라벨 부착 의무화
 - 포장제품은 상품규정에 명시된 대로 수량에 따라 기재되어야 하며, 규정이 없을 경우 적용법에 따라 해당국 언어로 상품의 제조날짜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기입해야 함
 -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상품마크 및 품질 표시상 정보는 상품의 종류와 기술 복잡성에 따라 텍스트문서 형태로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에 직접 첨부해야 함
 - 관련 소비재가 수입이나 판매의 목적이 아닌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에너지 표준기준 및 라벨링 기준 미부합 가전제품 수입금지

□ 대한수입규제동향

○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

- 2017년 현재 수입규제항목에 따른 수입규제 이외에 한국산에 대해 특별히 적용되는 수입규제는 없으나, 현재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주도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산업이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 비과세장벽 등을 통한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음
-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벨로루시 등 CIS 국가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시 무관세 적용하고 있음



○ 한국산 화물차 반덤핑 조사 착수 및 무혐의 최종판정

- 우즈베크 대외경제관계투자무역부는 2015년 6월 한국의 5톤 이하 화물차에 대한 현지 정부의 반덤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확인 결과 무혐의로 최종 판결됨
- 이번 반덤핑조사는 우즈베크의 자국보호육성 정책강화의 일환으로 정부의 자국산업, 특히 자동차 산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임

□ 관세제도

○ 개요

- 우즈베키스탄 관세정책은 우유 등 생필품 등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낮은 세율과 자국 생산 제품 보호를 위한 고관세 정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선별적 환전시행 및 환전규모의 차등규제 등을 수입억제의 간접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관세구조는 HS의 상품분류와 유사한 품목그룹별로 대분류는 2단위, 중분류는 4단위, 소분류는 6단위로 돼 있으며, 현재 관세 부과는 HS CODE 10자리에 대해 부과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수입 시 일반적으로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관세, 소비세가 각각 0%~100% 이상, 부가가치세가 0% 또는 20% 품목에 따라 부과되고 있으므로 관세가 낮다고 하더라도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지불하게 돼 실질적으로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함
- 우즈베키스탄은 WTO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WTO 등을 통한 관세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대통령령에 따라 자주 세부품목에 대한 세율이 변동하기 때문에 관계정보 획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종전에는 관세 부과 기준의 송장(Invoice)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나, 저가신고가 관행화되고 이에 따른 재정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자, 관세청은 신고가격을 무시하고 시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제품의 가격을 조사해 이를 기준으로 해 과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수입상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관세부과는 쌍무협정에 쌍방간 최혜국 대우 국가에는 일반관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지정세율의 이상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최혜국 국가 이외에는 수입여건이 좋지 않음

○ 관세행정 개혁 조치

- 대통령 결의 제305호(2011.11.17.)에 따라 One-Stop-Shop 원칙을 도입해 2012년 4월 1일부터 수출과 관련된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원산지 및 위생 등의 증명서 발급을 동시에 진행토록 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2년 1월부터 수입상품 특별바코드 표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 가스레인지, 에어컨, 냉장고, TV, 오븐, 식기세척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 세탁기, 진공청소기, DVD 플레이어, 홈씨어터, 휴대전화의 수입시 특별 바코드 상품표시를 위한 관련절차를 거쳐야 함
- 수입업자들은 통관 후 15일 내 특별바코드 상품표시를 위해 통관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세관위원회가 바코드를 제작하며, 동 상품표시에는 상품명, 수량, 수입 업체명과 회사번호, 수출업체명, 통관번호 등 해당 정보가 수록됨
- 2013년 8월부터 TV 등의 수입가전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관세가 적용 되는데 액정화면크기에 따라서 세금이 차등 부과됨

○ 2017년 4월 1일 소비세법 시행

- 듀럼밀과 혼합 밀가루 품목 소비세를 11%에서 5%로 인하



- 동식물성 유지의 소비세를 20%에서 10%로 인하
- 조제 또는 보존처리한 채소는 50%에서 10%로 인하
- 조제식료품의 소비세를 70%에서 25%로 인하
-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속품 중 2,800cm³를 초과하지 않은 신제품의 소비세 부과율을 70%에서 30%로 인하
- 곡물·곡분의 주 제품과 빵류 중 곡물시리얼 혹은 곡물제품을 튀기거나 구워 만든 완제품, 플라스틱과 그 제품, 목재·목탄, 철강류의 소비세는 면제함

<우즈베키스탄 그룹별 수입관세율(최혜국대우 세율)>

(단위 : %)

제품군	최혜국대우 세율		
	평균세율	면세율	최대치
축산물	15.3	0	60
유제품	15.8	0	47
과일, 야채, 식물	29.0	0	216
커피, 차	15.3	0	30
곡식& 리얼류	18.7	1.4	42
종유, 기름&식용유	7.9	1.7	30
설탕, 과자류	24.5	0	47
주류&담배	27.3	0	34
면화	10.0	0	10
기타 농산물	10.5	0	30
어류&생선제품	5.0	0	10
광물&금속	14.5	2.2	37
석유	16.7	0	30
화학품	9.3	0.4	31
나무, 종이	14.9	18.3	30
섬유	24.6	0	148
의류	30.9	0	160
가죽, 신발제품	16.4	0	96
비전자제품	4.8	54.7	33
전자기기	12.5	12.0	211
운송 장비	13.4	3.4	40
기타 제품	17.3	4.2	42

출처 : WTO

우즈베키스탄의 기업 설립 및 투자

II

- 1. 투자 / 28
- 2. 주요 투자법 / 40
- 3. 투자진출형태 및 법인설립 / 46
- 4. 투자입지 여건 / 63
- 5.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 75
- 6. 노무관리제도 / 80
- 7. 금융제도 / 86
- 8. 외환자금관리 및 자금조달 / 89



1 투자



□ 투자환경

○ 투자유치에 대한 태도

- 외국인 투자유치를 핵심정책으로 천명하고 있으나 외환통제, 낙후되고 과잉규제되고 있는 금융분야, 무역규제, 무역과 상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해 구소련 연방국가중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치가 가장 낮음
- 공식적으로는 모든 분야에 걸쳐 외국인투자를 환영하며, 투자가의 국적, 소재지 등에 따른 차별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주요 산업에 대해 통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에 차별적인 영향이 나타남

○ 투자매력도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보유국이자 중앙아시아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지정학적으로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 인근국가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이란, 러시아의 동부 시베리아지역까지 시장에 포함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임
- 또한 노동력이 풍부하고 동남아 등지보다 비교적 근면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등교육을 이수해 문맹률이 매우 낮고, 인건비 단순근로자가 월평균 250~380달러로 역시 매우 낮은 편임
- 토지는 국가소유로 대지 및 공장의 임차료가 매우 저렴하고, 전기, 가스 요금, 수도세 등이 저렴하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가 매우 낮은 편임
- 물류이동의 어려움 및 고율의 관세로 인해 현지에서 물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완제품수입시보다 상당한 물류비용 및 관세의 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에게는 투자 원리금의 송금보장, 국방산업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는 선진국 수준임
- 물론 외국인 투자는 등록사항으로 대외경제성에 심의를 거쳐야하고, 2,000만 달러 이상의 대형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각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거절된 건은 없음
- 2016년 10월 우즈베키스탄 내 등록된 외국자본기업이 4,900개를 초과했으며, 중국 78개, 러시아 75개, 한국 29개 등이며 산업별로는 공업 180개, 무역업 64개, 건설업 28개사 등임

○ 외국인 투자범위에 대한 구분

- 다음과 같은 외국인투자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투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간주돼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 등록하게 되어 있음
 - 미화 15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현지화(Soum) 투자
 - 투자자 중 1인 이상이 외국법인일 것
 - 외국인 투자의 지분이 전체의 30% 이상일 것
- 상기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투자는 가능하지만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주, 시,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외국인 참여기업으로 간주됨

○ 투자유망분야

- 외국인투자가 주로 이루어지는 분야는 원료 및 에너지 분야로 전체 외국인 투자의 70%가 집중돼 있음. 그 중에서도 러시아 루코일사는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분야(천연가스)에 전략적으로 지속투자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현재 Gissar 지역과 Khauzak 지역 가스 생산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착수한 상태임

- 이동통신 시장은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우즈베키스탄 이동통신 시장은 러시아 업체가 장악하고 있으며, 현재 kt가 우즈베키스탄과 합작으로 evo라는 인터넷 통신회사를 설립해 현지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기후가 온난해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이 풍부하며, 특히세계 5대 면화 수출국으로 농산물 중 면화 생산 비중이 매우 높음. 현재 대우 페르가나 면방법인이 현지에 진출해 면사, 관련제품 생산 및 수출로 연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자동차 및 섬유 분야에서 양국의 대표산업 기술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우즈베키스탄 자동차생산은 한국으로부터 약 70%의 부품 조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R&D 협력사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성 확대시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가 가능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민간경제 역할 강화 및 주요 인프라 현대화계획을 공개발표하고 2019년까지 석유화학, 전력, 기계 등 분야에서 410억 달러 상당의 900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중 230억 달러를 해외투자조달할 계획으로 해외투자자들을 꾸준히 유치할 것으로 전망됨

□ 투자 인센티브

○ 개요

- 우즈베키스탄은 2012년 외국인투자 감소 이후 다시금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회복과 투자촉진을 위한 추가조치를 발표함
- 우즈베키스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권자본금 지분의 최소 30%를 소유해야하며, 인센티브 수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경우 투자금 400,000불 이상(금융기관 제외), 그 외 일반기업의 경우 투자금 150,000불 이상(카라칼파키스탄, 호레즘주는 자본금 75,000불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외국인 투자인센티브는 관련 법령에 따른 다양한 세제감면이 주를 이루며, 핵심산업과 특정지역 투자의 경우 투자건별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투자기업간 계약에 기초해 특별규정(decree)의 형태로 결정되기도 하므로 투자시 정부와의 협상도 중요함

○ **세제혜택**

- (투자금 5백만 달러 이상 기업혜택)
조부조항(grandfathering clause)에 의거해 투자법인등록시점으로부터 10년간 세법변경에 의한 불이익금지.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가 법인설립 취소권, 인허가 취소 등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정부기관과 관보공지 등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반대법 적용에 대비 필요
- (타슈켄트시와 주 이외 지역에서 특정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 대상산업(생산업) : 전자, 가죽제품, 섬유, 봉제, 비단, 건자재, 식품, 화학제품, 제약, 포장재,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 석탄, 산업 및 농업 기계, 유리, 미생물 제품, 비고무 완구제품 등
 - 투자금 300,000불 이상시 3년 간, 3백만 달러이상 투자 시 5년, 1천만 달러 이상 투자 시 7년 세제감면(tax holiday)
 - 투자물은 경화 또는 최신 현대 설비
 - 수혜조건 : 외국인지분 33% 이상, 세금혜택으로 절감한 금액의 50% 이상 재투자, 정부의 지급보증 불요구

○ **원유 및 가스탐사, 채굴업 투자기업 인센티브(합작투자 또는 협정에 의한 투자)**

- 투자기업 및 하청 업체들에 탐사기간 중 일체의 세금 및 비세금성 각종 납부금 면제, 이들 기업에 납품하는 우즈벡 기업들에게는 부가세 면제 혜택부여
- 채굴 개시 시점으로부터 7년간 소득세 면제

○ 수출기업(용역포함, 원자재 제외)

- 법인세, 부동산세 감면 : 총매출 중 수출비중 15%~30% 기업은 30% 이상기업은 50%까지 감면
- 자유로운 환전(실제로는 외화 강제 매각 비율로 제한적 환전만 가능)
- 수출제품 생산에 필요한 물품수입시 90일까지 VAT 납부연기 가능
- 단, 도소매업, 면섬유, 원유, 가스, 귀금속 수출로 인한 매출은 제외

○ 비세제 혜택

- 기반설비 지원
 - 투자금 5천만 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지분 50% 이상시 정부가 외부 유틸리티, 공사, 통신망 설비 제공

○ 외국인 투자자 보호정책 및 개런티

- 투자활동기간 동안 제정된 법률 소급 적용(개런티 적용기간 10년)
 - 우즈베키스탄 내 투자활동 중인 외국인투자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10년간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투자자들의 투자조건을 악화시키는 경우, 투자활동기간 내 제정된 법률이 소급되어 적용됨
- 투자동의서에 기초해 추가 보호정책이 해외투자자들에게 적용됨
 - 점진적 국가 경제의 구조적 변화 및 꾸준한 경제성장을 제공하는 분야
 - 국가의 수출 잠재성을 확장 및 강화시키는 프로젝트
 - 원자재 및 재료 가공 및 소비자재·서비스를 생산하는 소규모비즈니스 분야의 프로젝트,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 관세 및 세금혜택

- 해외수출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소세 면제됨



-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 산업적 필요에 의하여, 우즈베키스탄 해외투자활동 업체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
 - 우즈베키스탄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해외 법적 실체에 의하여 수입된 상품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해외 법적실체가 수입하는 상품(총계 5,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액이어야 하며, 수입상품이 수입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상품일 것)
 - 생산분배계약에 따라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수출상품, 생산분배계약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소비자재 및 서비스, 생산분배계약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투자자 및 기타 법적실체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입하는 소비자재 및 서비스
 - 법률에 따라 승인된 리스트에 해당되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입되는 기술설비와 부품들
 - 단, 수입기술설비의 수출을 위한 무료운송의 경우(수입 이후 3년 이내), 특혜가 취소되면서 특혜적용 모든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지불 의무가 다시 살아남
- 우즈베키스탄은 수출잠재력 확대 및 수입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2019년까지 석유화학, 전력, 기계 등 분야에서 410억 달러 상당의 90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아지모프’수석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세금면제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임
 - * 관련 프로젝트 업종 : 자동차, 화학에너지 및 자원, 금속, 섬유, 전기전자, 건축자재, 제지, 제약 등

○ 투자인센티브 적용사례

- 한국기업 투자사례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영되고 있는 3대 경제특구(나보이, 지작, 안그렌)에 투자한 기업들은 자동차 케이블, 제너레이터 및 컴프레서, LED조명, 화장품, 가스 실린더 등을 경제특구 내에서 생산해 내수 및

인근, 유럽 등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

- 토지세, 소득세, 재산세, 사회세, 통합세(소규모 법인 대상), 도로 및 학교기금의 납부 일정기간 차등 면제
- 우즈베크에서 생산되지 않은 부품, 장비, 원자재에 대한 관세(통관 수수료 제외) 면제
- 장비/원자재도 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사전등록하지 않아도 수입시 관세 면제
- 1,000만 달러 초과 투자시, 10년 면세 기간 종료 후 5년간 소득세, 통합세의 50% 감면

- 외국투자기업 사례

위에서 기재한 3대 경제특구 내에는 한국 기업들을 포함해 인도, UAE, 중국, 싱가포르, 이탈리아, 영국 등 국가들의 60여개의 투자 프로젝트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며, 농식품, 전자, 화학, 의약품 등 각종 가공,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상기 기술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음

□ 외국인 투자동향

○ 투자동향

- 우즈베크 정부의 통계자료를 인용한 기사들에 따르면 2016년 대우즈베크 외국인 투자액은 37억 달러로 전년 33억 달러 대비 약 11.3% 성장함.

<우즈베키스탄 연도별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
총 외국인 투자액	3,277.4	3,016.69	2,949.2	3,300	3,700	11.3
우즈베크 정부보증차관	751	836.49	737.1	728.6	미발표	-
외국인직접투자액(FDI)	2,526.4	2,180.2	2,212	2,400	미발표	-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부



○ 국가별 투자현황

- 2012년 대우즈베키스탄 투자 국가는 약 40개국으로 국가별 투자순위는 중국이 10억 8,200만 달러로 최대를 차지했으며 러시아 6억 7,690만 달러, 한국이 5억 2,600만 달러로 뒤를 이음

<국가별 우즈베키스탄 투자액>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전년도순위변동
1	중국	2,160.74	1,082.0	-
2	러시아	815.97	676.9	-
3	한국	187.6	502.6	-
4	네덜란드	70.5	82.3	1 ↑
5	영국	42.48	70.0	2 ↑
6	말레이시아	47.55	63.1	-
7	프랑스	92.42	54.8	3 ↓
8	독일	14.01	52.6	3 ↑
9	남아프리카 공화국	35.5	27.3	1 ↓
10	베트남	8.21	18.4	4 ↑
11	터키	6.61	18.0	5 ↑

주 : 2017년 7월 확인가능 최신정보 기준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부

○ 산업별 투자현황

-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산업분야는 석유 및 가스분야로서, 러시아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하며, 중국, 말레이시아, 우리나라의 석유 및 가스프로젝트 참여가 증가 중임



<2013년 우즈베키스탄산업별 투자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산업분야	2011년		2012년		2013년	
	투자액(비율)	프로젝트	투자액(비율)	프로젝트	투자액(비율)	프로젝트
외국인투자 총액	3,872.5(100)	150	3,277.5(100)	189	3,016.7(100)	150
석유 및 가스 산업	2,276.8(58.8)	14	1,817.7(55.5)	17	1,634.0(54.2)	13
정보시스템 및 통신	356.8(9.2)	4	243.5(7.4)	4	83.8(2.8)	4
탐사	390.0(10.1)	12	123.6(3.8)	9	92.3(3.1)	12
경공업	127.7(3.3)	16	96.2(2.9)	29	105.8(3.5)	13
건축자재 및 건설	22.9(0.6)	6	1,870.3(5.5)	9	53.8(1.8)	6
투자의무	4.5(0.1)	1	3.3(0.1)	1	-	-
교통 인프라	102.0(2.6)	3	-	-	170.6(5.7)	4
농업	111.4(2.9)	11	79.9(2.4)	8	77.0(2.6)	15
교육	31.4(0.8)	7	9.1(0.3)	2	20.9(0.7)	2
에너지	27.8(0.7)	4	163.5(5.0)	11	207.1(6.9)	8
도시 유틸리티	42.9(1.1)	10	96.3(2.9)	7	104.7(3.5)	8
도로개발	32.5(0.8)	3	95.1(2.9)	3	164.7(5.5)	9
건강	14.6(0.4)	7	22.1(0.7)	5	24.9(0.8)	5
화학산업	123.0(3.2)	8	109.0(3.3)	6	83.8(2.8)	6
광업 및 금속	-	-	4.4(0.1)	2	-	-
신용라인	142.1(3.7)	17	147.6(4.5)	22	67.0(2.2)	11
가죽산업	4.3(0.1)	2	0.8(0.0)	2	1.0(0.0)	3
자동차 및 전기공학	29.1(0.8)	15	47.3(1.4)	18	18.2(0.6)	11
식품가공 산업	1.3(0.03)	1	6.7(0.2)	2	60.5(2.0)	2
제약업	28.7(0.74)	5	9.7(0.3)	9	24.7(0.8)	12
기타	2.6(0.1)	4	21.7(0.7)	23	21.9(0.7)	6

□ 한국기업 투자동향

○ 개요

- 우리나라의 대우즈벡 투자는 수교 이후 2017년 1분기까지 268건, 6억 7,550만 달러에 달하고 있음



<연도별 우즈베키스탄 투자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현지법인	지점	지사	신고금액	투자금액
1992~2005	51	0	3	611,070	309,261
2006	15	1	1	41,278	22,399
2007	32	4	3	345,765	70,264
2008	28	0	2	119,733	65,844
2009	14	1	2	41,085	32,757
2010	19	0	1	42,379	40,726
2011	13	0	2	50,743	54,955
2012	13	1	3	37,973	18,964
2013	13	1	3	36,706	13,054
2014	8	1	4	16,785	11,603
2015	6	0	0	17,607	8,009
2016	10	3	8	32,139	26,816
2017년	10	0	1	11,276	7,234
누계	233	12	33	1,405,334	682,704
	26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2017년 7월 확인 가능 최신정보)

- 우리나라기업 진출·유치 통계

(단위 : 건수, 천 달러)

구분	누계(1992~2017.1분기)	
	건수	금액
우리나라 진출	260	647,841
우리나라 유치	-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2016년 12월 확인 가능 최신정보)

- 업종별 누적

제조업(119건, 4억 3,485만 달러), 부동산 및 임대업(16건, 5,454만 달러),
 광업(7건, 4,322만 달러), 방송통신서비스(6건, 4,101만 달러), 금융보험업
 (9건, 3,512만 달러)순임

<업종별 투자현황>

(단위 : 천달러)

업종	투자(1992~2017.1분기)				
	현지법인	지점	지사	신고금액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2	0	0	2,171	758
광업	7	0	0	56,559	43,215
제조업	110	3	6	770,510	434,852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	0	0	52	0
건설업	17	7	4	7,233	4,190
도매 및 소매업	25	0	2	13,205	7,970
운수업	10	0	4	31,267	23,595
숙박 및 음식점업	8	0	0	50,479	17,23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0	1	42,303	41,010
금융 및 보험업	6	0	3	65,489	35,11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	0	0	337,066	54,54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1	0	2	10,640	10,16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	2	8	5,579	1,865
교육서비스업	0	0	1	40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0	0	80	8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	0	0	500	15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	0	1	874	758
N/A	0	0	0	82	0
합계	224	12	32	1,394,229	675,542
	268				

□ 한국기업 진출현황

○ 개요

- 석유공사, 가스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기업 외 2017년 현재 지상사협의회에 42개사 내외가 가입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각 분야 대기업, 중소기업 등 약 100개사 이상이 진출해 있음



<주요 진출기업>

업 종		현지법인/ 지사/ 사무소명
제조업 (29)	자동차부품(1)	우즈동흥, 우즈세명, 우즈동주, 우즈코람, 우즈동양, 우즈거제, 우즈동원, 우즈이래, CS, 우즈이래케이블, 우즈이래알터네이터, 우즈한우, 우즈성우, 마블렌 엘렉트로, 광진오토, 세프라, 우즈인지, 우즈오토오스탐 등
	방직/봉제(6)	대우텍스타일 부하라/ 페르가나, 신동, 대신메가텍스, 동산, 거성, 세나스방직, 영원무역
	기타(6)	GKD(조폐공사 면펠프공장), 우즈신동실리콘(실리콘), 금성(방적용 실패), 대우팩(박스), 보우(양파망), 실비아(양말)
자원/에너지(5)		한국가스공사, 롯데케미컬, 코오롱, 신동에너콤, 대우인터내셔널
전자/통신(4)		East Telecom&EVO(KT 현지법인), 삼성전자, LG전자
자동차/중장비(6)		우즈동남모터스(현대차), 에버그린모터스(기아자동차), 토우(두산중공업), GST(현대중공업), 실크로드인터내셔널(지게차 등), C&H(볼보 중장비)
금융(3)		Uz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한은행
운수/건설(12)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진, 선진운수, 유라시아레일,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HS&K, 한준건설, 우주종합건설, JH건설
물류(8)		서중물류, 범한판토스, 유니코, 우진글로벌, 태웅로직스, (주)한진, GNF Line, Ecovice, General Logics
기업서비스(2)		화우(법무법인), 원진회계법인, 씨엔에이치 파트너스(회계)

주 : 이 외 무역, 여행사, 식당, 식품점 등 자영업체 포함시 100개사 이상임

□ 우리기업 투자진출 성공사례

○ 대우텍스타일

- (진출내용) 1996년 대우에 의해 대우면방법인이 최초 설립된 후 2008년 부하라 면방법인, 2009년 통합 페르가나 면방법인 설립, 이후 대우텍스타일로 법인 통합

* 현지 생산한 단사, 합사 등을 유럽, 중국, CIS 등지로 수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페르가나 지역경제에도 고용, CSR 활동 등으로 현지신뢰도 높음



- (성공요인) 세계적 면화생산국인 우즈베크 원면을 현지 조달하고 이를 가공하여 부가가치 창출, 모든 공정을 데이터화해 관리함으로써 고품질의 제품 생산 및 품질의 표준화를 실현하였으며, 아울러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인근국, 유럽 등을 대상으로 수출판로를 개척하여 수익선 다변화함

○ GKD(Global Kosmo Daewoo)

- (진출내용) 한국조폐공사(Komsco)와 포스코대우가 콘소시엄을 이루어 2010년 투자, 설립한 법인으로 현지 원면을 가지고 주로 지폐용 면펄프 등을 생산하여 한국, 유럽 등지로 수출

- (성공요인) 세계적 면화생산국인 우즈베크 원면을 현지 조달하고, 이를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례이며, 한국의 지폐용 면펄프의 안정적 수급을 고려한 것 외에도 CIS, 유럽, 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수익구조 개발

2 주요 투자법



□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 100%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

- '98년 이전 외국인이 지분 100% 소유시 내각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조항은 삭제돼 100% 외국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됨

- 단, 외국인투자기업이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각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고, 국영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산위원회의 사전결정이 요구됨



- 100% 외국인 소유 회사 설립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현지 정부기관이나 민관기업과 합작투자형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분제한이 일반적임
- 또한 민영화시에도 주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 국산화 의무 및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 일반적인 의무규정은 없으나, 외국기업의 투자 허가시 동 요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 외국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토지 취득이 불가함. 단, 외교단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등록된 국제기구는 대부분 관저를 비롯한 업무용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 취득이 가능함
- 외국인투자회사 및 외국인은 부동산(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대신에 부동산 보유사용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음
- 보유권 획득시 토지법에 따라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보유사용권은 엄밀하게 소유권은 아니나 계약당사자인 정부와 협상여하에 따라 영구 보유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어 실제 소유권과 구별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보유사용권을 부여받을 시, 이에 상응하는 사회개발기금, 개발후 기부채납 등을 계약내용에 삽입하고 납부해야하고, 보유사용권을 제3자에게 매매시 정부를 허가를 얻어야 함

□ 금융상의 제한

○ 외환 통제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3년 10월 슌화의 완전태환을 보장하는 IMF8조를 수락했으나, 완제품 수입용 외환에 대한 선별적인 태환 허용 등 제도적 제약이 상존하고 있으며, 외환 보유하고 상황에 따라 태환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었음

- 외국인 투자기업은 제도적으로 적법한 사업활동으로 취득한 외환을 자유롭게 해외 송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유로운 환전이 보장되지 않고 과실송금도 제한적임
 - * 2016년말 기준, 환전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됨
- 2011년부터는 비거주자가 우즈베키스탄내 환전사무소에서 숨화를 경화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환전사무소에서 발행한 경화를 숨화로 환전했다는 영수증 또는 동 숨화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으로 획득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하도록 제한함
- 중앙은행 허가없이 국외에 계좌를 보유할 수 없으며, 국내에서 모든 결제는 자국통화로 이루어져야 함
 - 17.9월 시행된 「외환정책 자유화 우선조치」를 통해 시행된 단일환율 및 외화환전 및 송금제도의 안정화로 교역·투자환경 개선됨

○ 현금결제 제한

- 기업 간의 대금결제는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상 경비목적으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됨
- 은행에 예치된 자사의 자금이라도 봉급 및 출장비 등 한정된 목적에만 한정해서만 인출할 수 있으며, 종업원 급여도 국가에서 상한선을 설정함
- 또한 우즈베크 내에서 항공권 구매 시 자국 화폐인 숨화가 아닌 달러 등 경화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시 항공사는 판매금액의 100%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함

○ 현금인출 제한

- 원하는 시기에 현지은행 계좌에서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이 종업원 급여 지급을 위한 계좌인출이 적시에 안 돼 지불이 지연돼, 근로자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 통상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시장 등에서 사용가능한 카드로 지급하므로 근로자들의 반발 때문에 실제 급여신고를 축소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인플레이션 방지 등을 위해 공무원·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급여의 일정비율 이상을 현금이 아닌 직불카드(현금 인출 불가능)로 지급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외환의 매각의무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출 등을 통한 외화수입은 5일 이내에 전체 수입의 50%를 솜으로 매각해야 함
- 다만, 수출품목 생산을 위해 발생한 운송, 보험, 관세, 수수료 은행이자 등의 특별외환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 매각의무는 우즈베키스탄 기업과 외국기업에게 모두 적용됨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법의 정비

-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투자 관련은 1991년 이후 수차례 법개정과 폐지를 거쳐 1998년 4월 30일에 외국인투자법으로 정비, 발표된 이후 외국인 투자기본법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다음과 같은 외국인투자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투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간주돼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 등록하게 되어있음
 - 최소 납입 자본금 미화 15만 달러 이상
 - 1인 이상의 외국인이 기업 설립자에 포함되어야 함
 - 외국인 수권자본금 보유 지분율 30% 이상
- 상기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투자는 가능하지만,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주, 시,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음. 이 때 외국자본참여기업으로 간주되며 투자신고 절차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됨



○ 외국인투자 제한

- 법률상 명문화된 외국인 투자 제한분야는 ‘정부기관의 특별허가를 득해야하는 분야’로 규정되어있는데, 해당 산업별 승인, 심사기관은 다음과 같다.

내각회의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제조, 수리, 판매 폭발물, 유독물질의 제조, 운송 및 판매
전력생산업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 가공, 판매 파이프라인, 교량, 터널의 설계, 시공, 운영, 보수
내무부	하수처리시설, 관개시설의 시공, 운영, 수리 화재경보시설의 설계, 운영, 수리
보건부	의약품, 농산품의 판매
중앙은행	은행, 증권, 보험업

□ 투자방식

○ 구주취득(기존기업의 지분인수)

- 민영화프로그램을 통해 경매 또는 입찰을 통해 나온 기업의 지분획득
- 기존 기업 소유주와의 직접 협상을 통한 지분인수 또는 주식시장을 통한 지분 매입

○ 우즈베키스탄 기업 또는 개인과의 합작법인 설립

○ 완전독립 신규법인 설립

상기형태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권자본금 150,000불 이상, 법인에 최소 1명 이상의 외국인 참여, 외국인투자 지분 최소 30%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2002년 7월 1일부터 칼라칼팍스탄, 호레즘 지역 투자 장려를 위해 이들 지역의 경우 최소납입자본금을 75,000불로 낮춤



1) 법인형태

-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 회사 형태는 크게 영업행위를 하는 회사와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회사 두 가지로 구분된다. 영업행위를 하는 회사에는 합작회사, 지사 및 외국회사가 있으며,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회사에는 연락사무소의 형태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기업의 국내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법인, 지점, 연락사무소 등으로 구분돼 있으나, 우즈베키스탄은 지점의 경우에도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외국기업이 송금하는 운영자금을 자본금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으므로, 회사 또는 지사의 설립절차도 영업행위를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음
-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법인과 연락사무소의 혜택과 의무에 차이가 있으므로 진출하고자 하는 회사는 해당 회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

2) 법인과 연락사무소의 장단점

- 우즈베키스탄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지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관련 세금면제나 제도 간편화 등의 영업행위에 유리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나보이나 안그렌 등 우즈베키스탄이 지정한 경제자유지구에서 설립된 법인의 경우 더욱 많은 혜택이 주어짐
- 그러나 동시에 투자기간이나 투자액 등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의무 사항도 많음. 반면, 연락사무소의 경우 혜택이 적은만큼 의무사항도 적으므로 현지에서 크게 활동하지 않는 회사의 투자방식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3 투자진출형태 및 법인설립



□ 투자진출형태

○ 개요

- 외국기업은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대표사무소나 지사를 설립할 수 있음
- 대표사무소는 외국법인의 부속기관으로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활동하게 됨
- 지사는 외국법인의 부속기관으로 영업활동을 포함해 외국 모기업의 활동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할 수 있고,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립되며, 최소자본금 등 외국자본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됨
- 우즈베키스탄에서 설립 가능한 법인형태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추가 책임회사, 일반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기업연합 혹은 협회 그리고 개인기업 등이 있음

○ 법인

1) 주식회사(JSC : Joint Stock Company)

가. 정의

- 주주가 주식의 액면가치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로 보유주식 대금을 완전히 납입하지 못한 주주는 미납주식가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의 의무에 대한 각종 책임을 지게 됨
- 주식회사는 개방형태의 경우 최소 주주 숫자에 제한이 없으나, 폐쇄형태일 경우 최소 3명 이상 50인 미만의 주주로 구성되어야 함



- 개방형태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법에 따라 주식공개 매각을 통해 자유롭게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회사 정관 혹은 주식회사 법에 따라 폐쇄매각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폐쇄매각을 할 수 있음
-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주식은 설립자들 상호간에 한해 혹은 사전 결정된 사람들에 한해 배분될 수 있으며, 전체 주주 숫자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공개형태로 전환해야 함. 또한 주식양도가 제한되며 증시에 상장될 수 없고,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주주가 보유주식양도를 원할 경우 회사정관에 따라 다른 기존 주주 혹은 법인자체에 대해서만 매각이 가능함

나. 설립자본금

-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은 주주들이 매입한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결정되며 모든 주식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하고, 우선주 액면가격은 전체 설립자본금의 20%를 초과하지 못함
- 주식회사의 최소설립 자본금은 40만 달러(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고시 환율에 따라)이상이어야 하며,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최소설립 자본금은 월 최저임금의 200배 이상이어야 함.
- 폐쇄형태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월 최저임금 기준변화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되어야 하며,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액면가격 인하 혹은 발행주식 감소 등을 통해 감소되거나, 주식액면가격 인상 혹은 발행주식 증가 등을 통해 증가될 수 있음

다. 주식

- 주식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혹은 무기명식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우선주 혹은 보통주 형태로 발행될 수 있고 최저액면가액은 100숨임
- 우선주는 보유주주가 주식회사법에 명시된 대로 이익 배당금 혹은 기타 권리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폐쇄형태주식회사는 기명주식만 발행 가능함

- 주주는 납입금의 30%를 먼저 낸 후 주식회사 등록 후 1년 이내에 주식 대금을 완전히 납입해야 하며, 주식대금납입은 현금, 유가증권 그리고 기타자산 혹은 재산권 형태로 가능함
- 주식회사 자체가 매입한 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이익배당금도 받지 못하고, 매입 1년 이내에 재매각 되지 않을 경우 소각돼 그만큼 자본금이 감소돼야 함
- 주식배분 형태 및 기준은 회사정관에 명시되며 주식은 시장가격에 따라 거래되어야 하며, 회사 설립 당시에는 액면가로 매각됨.
- 주식회사는 회사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르거나 주주총회 의결 내용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을 발행할 수 있음. 모든 주주들은 주주명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총 발행주식, 액면가, 주주보유등록 증권 형태 등이 명시돼야 함

라. 주주총회(GMS :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주식회사법상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주주총회이며 주주총회는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가 있고, 정기주주총회는 1년에 1회 이상 소집돼야 함
- 주주총회의 배타적 권한사항은 주로 회사의 운영, 행정, 영리활동, 구조, 재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식회사법 또는 정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류로 정해진 주주총회의 배타적 권한사항은 이사회 또는 집행 기관에 이행할 수 없음
- 주주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60% 이상이 참석한 경우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고, 대리인을 통한 출석 및 의결권 행사도 허용됨.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되나, 일부 중요사항에 관해서는 주식회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75%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도 있음



마.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

- 감독이사회는 주식회사법이나 정관이 주주총회의 배타적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문제들 외의 전반적인 경영사항에 관해 결정하는 기관임
- 감독이사회의 및 감독협의회 의장의 선임, 감독이사회 소집과 기타감독이사회 활동과 관련되는 문제들은 정관 또는 회사 내부규칙에 따라 규정됨
- 주식회사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30명 미만인 경우 감독이사회를 둘 필요가 없고, 감독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 감독이사회의 결정사항은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할 수 있음

바. 경영진(Executive Body)

- 경영진은 최고경영자(CEO) 혹은 집단경영의 경우 최고경영진을 통해 회사의 일상 활동을 관장하며, 최고경영자 혹은 최고경영진은 주주총회나 감독이사회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 혹은 회사정관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회사를 대표함
- 최고경영자 혹은 최고경영위원들은 그들의 경영행위에 대해 다양한 책임을 지게 됨

사.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기본적인 감사기관으로서 주식회사의 집행기관 및 감독이사회 임원(감독이사회가 있는 경우)의 재무활동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함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권한은 주식회사법, 회사정관 및 주주총회가 승인한 내부규칙에 따라 정해지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활동에 대해 연간 정기적인 감독을 실시함
- 주주총회, 감독이사회, 보통주 10% 이상을 가진 주주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나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임원, 집행기관 및 기타 회사의 다른 지위를 겸할 수 없음

2)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가. 정의

- 유한회사는 1인 혹은 1개 이상의 개인 혹은 법인들이 회사 설립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자본금을 주식으로 나누어 설립하는 회사를 말함
-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의 주식은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2인 혹은 2개 이상의 법인들의 유한회사 설립문서가 설립 동의 및 회사정권이 됨. 1인이 설립할 경우 설립문서는 바로 회사 정관이 됨
- 유한회사 설립참가자들은 회사 경영활동 관련 위험에 대해 납입자본금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며, 납입해야할 자본금을 완전히 납입하지 않은 설립참가자들은 납입해야할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됨. 유한회사의 책임은 보유자산에 국한됨

나. 자본금

- 유한회사 설립자본금은 월 최저임금의 40배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설립참가자들은 회사 등록시점에서 납입신고자본금의 30% 이상을 납입해야하며, 납입증명은 은행발행서류를 서류로 확인해야 하고, 잔여납입자본금은 1년 이내에 납입돼야 함
- 회사설립 문서에 명시된 경우에 따라, 회사 최고기구가 승인한 납입자본금의 변화 및 설립참가자들의 추가 자본납입금 회사 납입 자본금에 대한 설립참가자들의 추가 자본납입은 회사 납입 자본금에 대한 설립참가자들이 보유지분을 변화시킬 수 없음

다. 사원총회

- 유한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로서, 우즈베키스탄 유한회사법에서 최고경영기구의 기능이라고 명시한 특정사안들에 대해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하며, 사원총회의 고유권한은 주로 회사의 영업, 재정, 경영 및 구조적 사안들에 대해 망라하며 사원총회는 최소 연 1회 이상 소집됨



- 의결권 10%를 보유한 설립참가자들은 언제라도 비상 사원총회 소집요구 권한을 가지며, 대부분의 사안들은 회의 참석자들의 단순 과반수로 의결되며, 회사의 주요방향 및 영업정책 혹은 다른 법인에 대한 경영참가 등과 같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66%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함
- 회사정관개정 및 납입자본금 증감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함. 주식회사와는 달리 유한회사는 감독이사회 설립 의무가 없으나, 회사 설립문서에 감독이사회 설립을 명시해야 설립이 가능함

라.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는 유한회사 최고경영자 혹은 최고경영진 활동을 감사할 권한이 있으며, 감독이사회가 있을 경우 이사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감사할 권한을 가짐
- 유한회사는 정관에 회사 및 주주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감사 지정을 명시할 수 있으며, 15인 이상이 설립한 유한회사는 감사위원회(감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
- 감독이사회가 존재할 경우 최고경영자 혹은 최고경영위원들은 유한회사의 감사(혹은 감사위원)로 선임될 수 없음. 감사위원들은 보통 사원총회 참석자들 중 선임되나, 회사 혹은 설립참가자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인사도 유한회사의 감사(혹은 감사위원)로 선임될 수 있음
- 감사위원수는 회사 정관에 명시되며, 감사위원은 보통 유한회사의 연간 경영실적 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확인, 사원총회에서 최종승인을 받게 됨
-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회사 또한 연간경영실적보고서 및 재무제표 감사 및 승인은 회사 혹은 주주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감사가 수행해야 함

마. 추가 책임회사(ALC : Additinal Liability Company)

- 추가책임회사는 1인 혹은 1개 이상의 개인 혹은 법인들이 설립하는 회사로 납입자본금을 설립자들 간에 분배, 회사 설립문서에 명시하며,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추가 책임회사 또한 유가증권 형태의 주식발행이 금지되며, 회사 설립문서 또한 유한회사와 동일함
- 추가 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 기구구조가 동일하나 주된 차이점은 설립 참가자들의 책임범위로, 납입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와는 달리 추가 책임회사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책임을 지게 됨
- 유한회사와 달리 추가 책임회사의 설립문서에는 설립참가자들이 납입자본금의 몇 배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를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범위는 모든 설립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배수가 적용됨. 만약 설립참가자인들 중 1인(혹은 1개 법인)이 회사 경영책임으로 파산하게 되면, 설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 되지 않은 한 나머지 설립참가자들이 자본금 납입비율에 따라 회사의 책임을 나누어지게 됨

바. 유한회사의 주요특징

- 국내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는 면허를 얻을 수 있음
- 참가자의 책임은 회사에 대한 그들의 기여도에 따라 제한됨
- 주식을 발행할 필요가 없이, 대신 참가자들은 정관자본에 기여함. 참가자는 자산을 제공하여 기여할 수 있음
- 참가자 회의를 통해 관리되며, 참가자가 집행기관을 선출함
- 참가자는 회사를 떠나고 다른 참가자의 동의없이 순수자산의 지분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참가자들은 동료 참가자의 기여금을 얻기 위한 선점권을 가짐
- 한명의 참가자가 있는 LLC는 다른 LLC의 유일한 참가자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참가자수는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3) 합자회사(Partnerships)

가. 종류

- 일반합자회사는 회사 설립참가자들이 회사 경영전반에 걸쳐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하며, 유한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설립참가자들이 설립하는 회사로 자본금을 납입하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납입한 자본금에 한해 책임을 지는 참가자들과 회사 경영에 직접 참가하면서 무한설립참가자들도 구성됨
- 유한책임 참가자와 무한책임 참가자는 구분되며 겸할 수 없으며, 즉 유한책임참가자가 무한책임 참가자로서의 추가 자본납입은 금지됨

나. 납입자본금 및 설립문서

- 합자회사는 창업합의문서가 곧 회사 설립문서가 되며, 납입자본금은 최소 월 최저임금의 40배 이상이어야 함

다. 설립 참가자들의 권리

- 합자회사 회사 설립참가자들은 회사 창업 합의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정기간 파트너십을 탈퇴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고 파트너십을 탈퇴할 경우 최소 3개월 이전에 통보해야함
- 합자회사의 경영은 회사 설립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설립참가자들만 참가할 수 있음

4) 개인회사(Private Enterprises)

가. 정의

-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인회사제도는 2003년 개인회사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됨. 개인회사는 개인이 단독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회사를 말하며, 설립자가 회사 정관을 승인하게 돼 있음
- 외국인이 개인회사를 설립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외국인이 설립한 개인회사는 외국자본이 설립한 여타 형태의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 부여되는 특권을 누릴 수 없음

나. 납입자본금 및 기업경영

- 개인회사는 납입자본금 또는 기업경영에 대해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설립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자본금은 현금,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자산형태로 가능함. 개인회사는 설립자가 소유자로 경영을 직접하게 됨

5)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s)

가. 의의

- 외국회사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이해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음
- 대표사무소는 별도의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적인 목적으로만 설립될 수 있으며(마케팅 및 정보수집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음
- 대외 경제통상부는 대표사무소를 등록할 책임이 있음

나. 고정사업장의 예

- 연속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지속되는 사업 활동
- 광산, 석유 및 가스정 또는 채석장과 같은 천연자원생산과 관련된 모든 활동장소
- 석유 또는 가스 파이프 라인과 관련된 활동(통제 또는 감독 포함) 천연 자원의 탐사 및 (또는) 채취; 설비의 설치, 조립, 시운전, 시동 및 유지보수
- 건설, 조립 또는 설치 프로젝트 사이트 및 이들 사이트의 작업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
- 슬롯머신(콘솔 포함), 컴퓨터 네트워크 및 통신, 채널, 오락, 교통 또는 기타 기반시설 활동과 관련된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
- 비거주자와의 계약에 기반한 사업활동으로 비거주자 대신,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한 이해관계를 대표하고, 비 권리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권한을 사용하는 활동
- 물품의 생산, 조립, 포장 또는 판매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장소



다. 고정사업장의 특징

- 위 목록은 포괄적이지 않으며 이중과세조약/협약이 고정사업장에 대한 다른 정의를 포함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함
- 고정사업장은 조직의 조세지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며 법적가치가 없음
- 세법은 등록과 추가세무 책임을 구분함. 예를 들어 특별한 정부 결의안에 따라 업그레이드 또는 개보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사는 세금 및 관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이것은 고정사업장의 정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회사가 당국에 등록하는 의무를 면제하지는 않음
- 세법은 등록기한을 놓친 경우 전반적인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당한 재정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투자진출형태별 장점

-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법인과 연락사무소의 혜택과 의무에 차이가 있으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회사는 해당 회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
-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회사 형태는 크게 영업행위를 하는 회사와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회사 두가지로 구분되며, 영업행위를 하는 회사에는 합작회사, 지사 및 외국회사가 있으며,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회사에는 연락사무소의 형태가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현지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관련 세금면제나 제도 간편화 등의 영업행위 유리한 각종혜택을 받을 수 있음. 특히 나보이나 안그렌 등 경제특구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더욱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짐
- 그러나, 동시에 투자기간이나 투자액 등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의무도 많음. 반면 연락사무소의 경우 혜택이 적은만큼 의무사항도 적으므로, 현지에서 크게 활동하지 않는 회사의 투자방식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진출형태별 절차

○ 법인설립절차

1)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신고

가. 투자신청서 제출

- 외국인으로서 우즈베키스탄 내 투자 희망 시, 우선적으로 법무부에 투자 의사, 간략한 사업개요, 예상자본금 규모, 합작투자 여부 및 지분율을 기재한 투자신청서를 투자기업의 정관과 함께 제출해야 함

나. 법무부 승인

- 법무부에서는 자신의 재량범위 내에서 투자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승인을 해 주고,
- 투자금액이 2,000만 달러 이상으로 내각의 결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나 다른 정부부서와 사전협의를 필요한 경우, 해당절차를 거쳐 승인여부를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함
- 법무부의 투자 승인 시 법무부에서는 투자기업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한 은행 및 계좌 번호를 지정해줌
- 법무부에서는 Republican Consultative Center라는 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이 있어 은행 접촉 이전에 이들의 자문을 받거나 외부변호사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투자신고 및 법인설립 전 과정에 걸친 이들의 자문 및 대행비는 1,200~1,500달러 내외임

2) 은행신고 및 자본금의 납부

가. 제출서류

- 은행에는 투자자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 방문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
 - 회사의 정관



- 투자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의사록(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
- 현지 대표의 여권 및 거주 등록증명서(법무부 투자 승인 후 관할구청에서 발급)
- 신규회사 경리 담당 책임자의 여권

나. 등록세의 납부

-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최저임금의 5배+ 500달러(납부일 기준 중앙은행 기준환율을 적용해 현지 솜화로 납부)
-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월 최저임금의 3배+500달러(납부일 기준 중앙은행 기준환율을 적용해 현지솜화로 납부)
- 법무부의 서류 보완요구에 따른 재등록 시 및 정관 변경 시는 처음 납부한 등록세의 20%를 추가 납부해야 함

다. 자본금의 송금

- 법무성에서 지정한 은행에 투자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동구좌(일종의 별단 예금계좌)에 자본금을 송금하게 되면, 자본금 입금 후 은행에서는 자본금 납입증명서를 발부함
- 현물출자인 경우에는 세관에서 현물출자한 물건의 도착 후 투자대상물의 적정가격을 산정해 투자자가 신고한 투자금액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현물출자 확인서를 발부함
- 한편,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도 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데, 이때의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우즈베크 과학기술위원회에서 평가한 후에 자본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 위원회에서는 무형재산 평가증명서를 발부해 줌

3) 투자기업의 등록

-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법인설립등록신청서

- 등록할 기업의 설립계약서 및 정관 원본 2부(우즈벡어 번역 공증)
- 투자자전원의 동의서 및 의사록(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
- 자본금 납입 증명서, 현물 출자확인서 또는 무형재산의 평가증명서
- 등록금 납부 증명서
- 투자 모기업의 등록증명서
- 기타 정부기관의 특별허가 필요한 산업의 경우와 허가증

<정부부처별 허가 발급 필요산업>

정부부처	허가필요산업
내각(Cabinet)	무기류, 부품의 제조, 수리, 판매 폭발물, 유독물질의 제조, 운송 및 판매 전력생산산업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가공판매 파이프라인, 교량, 터널 등의 설계, 시공, 운영보수 관광업
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	하수처리시설, 관개시설의 시공, 운영, 수리 화재경보시설의 설계, 운영, 수리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의약품, 농산품의 판매
중앙은행(Central Bank of Uzbekistan)	은행, 증권업, 보험업

4) 회사 인장의 등록

- 기업등록 절차를 마치고 영업행위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회사인장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록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음
 - 신청서 : 해당기업의 Letter Head에 회사인장의 등록을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
 - 인장관리 지정확인서 : 인장의 관리를 책임질 직원의 성명(통상 경리 담당직원)
 - 인장의 도안 : 실물크기



- 인장은 경찰서의 인장 등록증명서 교부 후 인장을 제작하는 회사에 제작을 의뢰하여 만듦
- 많은 인장 제작회사가 영업 중에 있고, 경찰서에서 추천해주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10달러 이내로 제작이 가능하고 1주일 정도의 시간 소요됨

5) 통계국 신고

- 거시경제부 산하의 지역통계국에 회사를 등록하며, 등록시 10달러 이내의 현지화와 10달러 이내의 현지화와 회사 개요(회사명, 주소, 전화 및 팩스, 대표자, 자본금, 투자자 전원의 신상명세서 및 지분율, 영업내역 등)을 기재해 신청서를 제출함
- 통계국에서는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등록증명서를 교부함

6) 대외무역경제부의 무역업등록(필요한 경우)

- 신청서 : 회사의 Letter Head에 무역업 등록을 신청하는 내용을 기재하고회 사인장으로 날인
- 품목명세서 :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의 내역(사후변경가능)
- 등록신청서 : 10달러 이내의 현지화
- 소요기간 : 타슈켄트 소재 기업은 3일, 그 이외 지역은 4일

7) 세무서 신고

- 상기 절차의 종료 후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9자리로 구성된 납세자 번호를 부여받고 세무서 등록증을 교부받으며, 세무서 신고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음
 - 회사의 Letter Head에 세무서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회사의 공식인장으로 날인
 - 회사의 정관
 - 투자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의사록(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

- 법무부의 회사 등록 확인서
- 대외경제성의 무역업 등록증(무역업의 경우)
- 은행계좌 확인서
- 설립 문서 등

○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1) 사무소의 등록

- 담당부서 : 투자위원회 대외경제부내의 Dept. of Accreditation
- 소요기간 : 서류 제출 후 10일 이내
- 등록비용 : 1,170달러
- 등록시 서류 작성요령
 - 사용언어 : 우즈베크어 또는 러시아어로 작성 또는 번역
 - 공증 : 모기업 주재국이 공증필요
 - 대사관 확인 :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번역의 정확여부 확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
- 등록대행사
 - Informservice 등 3곳의 대행기관이 있음
 - Informservic에 따르면, 자신들이 동 업무를 대행할 경우 서류만 완비되면 2일이면 등록절차를 완료할 수 있음(통상 2주 정도 소요됨)
 - 수수료는 500달러 내외

2) 기초 서류

- 모기업의 대한 증명서류
 - 모기업의 정관
 - 이사회 결의서
 - 모기업의 무역업등록증 또는 상공회의소 등록증
 - 모기업의 사업 내역(설립내역, 브로슈어, 회계보고서 개요 등)



- 위임장

- 대표사무소 대표자의 여권 사본
- 모기업의 대표사무소 대표에 대한 위임장

3) 신청 서류

- 신청서

- 수신인 : 투자위원회 위원장 대외경제부 장관
- 내용 : 우즈베키스탄 내 기업의 설치를 신청한다는 내용(목적, 사업내역 및 계획 등의 내용 포함)
- 작성요령 : 모기업의 Letter Head에 대표이사의 사인과 직장 날인

- 대표 사무소의 세부내역

- 개요 : 대표사무소 명칭, 주소, 존속기한
- 운영자금의 입출금 절차
- 사무실의 필요자산 및 청산절차
- 모기업의 파견인력 내역 : 여권사본과 이력서 포함

-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 공장설립

- 공장은 법인으로 등록한 회사가 설립할 수 있으며, 법인 등록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일단 법인등록절차가 완료되면 공장설립은 크게 어렵지 않음
- 법인등록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구 소련 이전에 지어진 공장 중 현재 가동되고 있지 않고 있는 공장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 법인 철수 및 절차

- 1) 해당기관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각 지역의 시청

2) 절차 및 관련 서류

- ① 법인이 소재해 있는 지역 Hokimiyat(시청), 법무부 관련 부서에 철수 및 청산신청
- ② 철수 및 청산 신청 후 하기서류들을 은행에 제출
 - 청산위원회의 청산결의안 사본
 - 법인인장과 대표자(또는 청산위원회 의장)서명 기재된 공증문서 2본
 - 소유한 모든 계좌를 폐기하며, 남은 자분을 해외 계좌 또는 지정한 계좌로 이체시킬 것임을 기재한 제출서
- ③ 고용직원, 계약자 및 파트너와의 계약을 종료한 후, 우즈베키스탄 국가세금위원회로부터 세금 미납이 없음을 확인받은 증명서를 수령
- ④ 기업의 철수 및 청산에 관해 주요 신문에 공고
- ⑤ 아래의 문서들을 Hokimiyat(시청)에 제출
 - 1개 이상의 주요 신문에 기업의 철수 및 청산을 알리는 기사 또는 광고문건
 - 국가 등록 증명서(사업등록증)
 - 모든 계좌를 해지했음을 알리는 은행이 발행한 통지서
 - 법인 인장
 - 발행된 유가증권을 폐기했음을 알리는 공인기관의 통지서
 - 모든 허가증, 면허증 원본
 - 세금 및 기타 금전상의 의무가 남아있지 않음을 국가세금위원회로부터 인증 받은 통지서
 - 국가담당부서의 최종 정산 완료 통지

○ 파산절차

- 1) 해당기관 : 우즈베키스탄 경제법원



2) 세부절차

- ① 채무자, 채권자, 검사, 세금위원회는 경제법원에 파산신청
- ② 경제법원은 채권자들의 투표에 의거 채권위원회를 구성
 - 채권자들은 지분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표권 획득
- ③ 채권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법원은 파산선고
- ④ 파산선고에 따라 다음 4가지 절차 추진 가능
 - 법정관리 : 채권자, 정부기관 등의 감독하에 12~24개월 내 추진
 - 합의 : 채무자와 채권자간 자금회수 연장 등 원만한 합의 결정
 - 외부감독 : 채권자 또는 법원에 의해 외부감독인 영입 운영
 - 청산 : 소유재산 처분 및 채권환급(청산위원회 구성)

○ 철수 관련 법령

-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법인 철수 관련 법령은 지난 2007년 4월 발표된 대통령령 제630호 ‘법인의 자발적 청산 및 사업기관 해산절차 개선’을 다루고 있으며, 법인 철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www.lex.uz에서 확인할 수 있음

4 투자입지 여건



□ 특별경제구역 소개

○ 개요

- 우즈베키스탄에는 현재 3개의 특별경제구역(FIEZ Navoi, FIZ Angren, FIZ Jizakh)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9~2014년 해당 지역들에 33개 신규업체 (주로 합작회사)가 설립돼 총 투자규모는 2억 6,900만 달러를 기록함

- 주로 중국과 한국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2016년 5월 기준 경제특구에 54개 투자프로젝트가 완료되고 총투자규모는 4억 1,120만 달러로 집계됨
- 2015년 기준 경제특구의 수출규모는 4,200만 달러이고 전년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발표됨
- 2016년 10월 26일 우즈베크 정부는 ‘자유경제구역 활동 증진 및 추가 방안’ 대통령령을 채택해 현재 운영중인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구, 안그렌 특별산업지구, 지작 특별산업지구 등 3개 특구의 명칭 및 운영제도를 단일화함
- 또한 우르구트(사무르칸트주), 기취두반(부하라주), 코칸드(페르가나주), 하자라습(호레즘주)4곳에 추가 자유경제지구를 개설하는 대통령령을 공시함

1) 나보이(Navoi) 지역

- 2008년 12월 나보이 지역을 우즈베키스탄의 첫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함.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한항공과의 협력을 통해 나보이 공항을 중앙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키우고, 물류기지로서의 공항과 경제특구를 상호 시너지 효과로 결합시켜 한국과 같은 경제발전모델을 추진할 계획임
- 나보이 경제특구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외국인 투자선호도를 높이고 첨단산업기지 건설 및 사회인프라 구축, 국가의 산업잠재력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 2013년 상반기 자동차가스실린더, 밸브, 조인트 및 폴리머를 생산하는 업체 두 곳이 설립됐으며, 15개 이상의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음
- 나보이 경제특구에 투자한 기업(최소투자액 300만 달러 이상)은 관세를 포함한 각종 세제감면, 외환 및 외국인 체류에 대한 각종규제 완화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나보이 경제특구 입주대상 산업분야
 - 전기전자제품



- 정밀기계 및 자동차 OEM 부품
 - 의약품 및 의료제품
 - 식품가공 및 포장
 - 플라스틱 및 폴리머
- 나보이 경제특구 입주 시 인센티브
- ① 세금우대 :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세, 재산세, 토지세, 인프라 개발세, 도로기금 및 학교기금 면제
 - 투자액 30만~300만 달러 : 3년
 - 투자액 300만~500만 달러 : 5년
 - 투자액 500만~1,000만 달러 : 7년
 - 투자액 1,000만 달러초과 : 10년(면세기간 종료 후 5년간 소득세, 통합세의 50% 감면)
 - ② 외환정책
 - 특구 내 계약과 관련해 외화로 결제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우즈베크 법인들로부터 공급물품, 서비스, 용역 구매 시 외화로 지불가능(수입/수출품은 가장 편리한 형태 및 조건으로 결제 가능함을 적시)
 - ③ 세관정책
 - 우즈베크에서 생산되지 않은 부품, 장비, 원자재에 대한 관세(통관수수료 제외)면제
 - 장비/원자재도 수출용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내각에 사전 등록하지 않아도 수입 시 관세 면제
 - ④ 입출국 및 체류
 - 비자발급 및 노동허가 발급 시 우대

2) 안그렌(Angren) 지역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제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지난 2012년 4월 안그렌 특별공업지구 설치령을 제정함

- 교통, 통신, 전력, 도로, 수도시설 등의 인프라 시설 구축 및 개선을 위해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통신 발전 내각 결의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안그렌 특별공업지구 내 상하수도, 전력, 도로, 철도, 가스공급 등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시행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약 6,000만 달러를 투자해 경제특구 내의 공장가동을 위한 인프라 시설을 갖출 계획이며, 30만 달러 이상의 외국어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의 세제혜택이 주어질 예정임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한국의 자동차 부품, 전자, 화학 부문의 기업들에게 안그렌 경제특구 투자를 요청함
- 2016년 5월 기준 본 지역에 10개 투자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고, 투자규모는 1억 8,100만 달러로 그중 해외직접투자는 1억 3,140만 달러를 기록함
 - * 현재 3개의 외국 및 합작회사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한국(2개사), 불가리아(1개사) 기업이 있음

3) 지작(Jizzakh) 지역

- 지작특구는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 중 가장 늦게 설립된 곳으로 2013년 3월 18일 우즈베키스탄 故 이슬람 카리모프 전 대통령이 ‘지작 특별산업지구 조성’에 관한 결의안에 서명해 2013년 5월에 설립됨
- 위 결의안에 따르면 지작 특별산업지구는 지작 및 시르다리아 지역에 조성될 예정이며, 지작특별산업지구는 지작 및 스리다리아 지역에 조성될 예정이며, 지작 특별산업지구는 하이테크 및 혁신적인 생산기법 도입을 통해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있는 상품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지작특별산업지구는 30년간 지정됐으나 추후 연장이 가능하며,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는 세금 및 관세혜택을 적용할 방침임
- 한편, 2013년 7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지작 특별산업지구 운송, 생산, 기술 인프라 구축 도입 방안결의안을 발표함. 이에 따라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총 4,831만 달러 규모의 약 17개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임



- 아울러, 2013년 10월에는 지작지역 도시개발계획을 승인함. 계획에 의하면 북동부지역에 새로운 지구를 건설함으로써 주거지역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 인프라 구축 및 조경산업을 포함한 도시의 역사적 기념물 근처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게 됨. 해당 지구에는 2016년 5월 기준 20개 투자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고, 투자규모는 1억 62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그 중 해외직접투자는 5,73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현재 5개의 중국회사가 운영 중임

□ 지역별 투자여건

1) 카라칼팍스탄(Karakalpakstan) 지역

가. 경제발전 상태

-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의 국내총생산량(GDP)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2015년도 GDP는 전년대비 10.7% 상승한 4조 5,346억 습을 기록했으며, 산업 생산 21.6%(2조 1,151억 습), 농업 6.5%(1조 2,304억 습), 건설산업 9.5%(1조 2,758억 습) 및 소매업 매출 12.9%(2조 3,722억 습)등 성장을 기록함
- 2016년 3분기는 전년대비 GDP 18.0%(4조 5,346억 습), 산업생산 91.7%(2억 7,761억 습), 농업, 임업 및 어업 6.3%(1조 1,165억 습), 건설사업 5.2%(9,685억 습) 및 소매업 매출 14%(2조 1,105억 습) 성장을 기록함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3분기 누적)
GDP	3조 6,321억 습	4조 4,859억 습	4조 5,346억 습
전년대비 증가율	108.4%	110.7%	118.0%

나. 광물 및 원료 산업

- 건축재료 생산 재료들은 Amudarya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또한 Beruni, Karauzyak 지역에서도 반려암 및 각섬암, 석회암, 활석, 장석과 같은 건자재들을 생산하고 있음

- Kegeyli 지역은 황산나트륨(세라믹, 유리, 기계 및 비료생산용)과 벤토나이트를 생산하며, Kungrad 지역은 천연가스와 가스 콘텐세이트를 생산함
- 가스확인매장량은 2억 1,940만 cubic meter이며 콘텐세이트 매장량은 780만톤 이고, 탐사 결과 황산나트륨과 식탁염 또한 확인됨. Muynak 지역에서도 천연가스와 가스 콘텐세이트가 확인됨

다. 산업적 잠재성

- 카라칼파스탄 공화국은 우즈베크 가장 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아랄해 지역을 끼고 있어 풍부한 가스 및 지하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이와 연관된 연료, 화학 및 석유화학, 금속 제품 생산산업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가스 및 석유생산량의 증가는 동 산업분야 발전을 가속화했으며, 쿤그라드 소다 플랜트가 발전이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2005년부터 추진돼 오던 수르길 가스전 개발 및 가스화학플랜트 건설사업은 2015년 완료돼 상업생산에 돌입했으며, PP, PE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라. 공화국내 외국인 투자

- 2010년 기준 카라칼팍 공화국 해외투자 유치금은 3,817억 4,100달러에 달 하며,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은 2,103억 9,100달러에 달함
- 공화국 내에 40개의 해외투자기업이 등록돼 있으며, 2010년 조사된 주요 합작기업으로는 ASIA-SILK(베트남-누에고치 생산), MANGIT INVEST PLYS (우즈베크-중국, 제과류), AMUDARYOTEX(영국, 면화), MSKh Agrosnab(카라 칼팍-우크라이나, 농산품), OBELIX INTERNATIONAL(카라칼팍-스위스, 폴리 에스테르), KARAKALPAKE NERGOHIM(카라칼팍-러시아, 전자재)가 있음

마. 자연조건

-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은 우즈베키스탄 북서쪽, 아무다리야 강줄기를 따라 위치해 있으며, 대륙성 기후를 보임



- 여름에는 매우 고온건조하며, 1월 평균기온은 -5~8℃임. 겨울최저온도는 -38℃까지 내려가며, 6월의 평균온도는 +26~28℃이고, 7~8월 평균온도는 +50℃임

바. 인문조건

- 공화국인구수는 2016년 3분기 기준 180.9만명에 이르며, 인구수는 매년 0.7~0.8%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심지역 인구수는48.6%, 그 외 지역 인구수는 51.4%를 이룸
- 공화국의 행정구역은 14개 지역으로 나뉘볼 수 있으며,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의 수도는 Nukus 도시로 30만 37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사. 교통 및 커뮤니케이션

- 공화국의 주요화물운송수단은 차량수송이며, 현재 공화국 내 4,389km의 고속도로가 있으며, 2010년 3,170만톤의 화물이 공화국 내 운송됨
- 공화국의 880km에 이르는 철도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및 러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연결되며,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을 통과하는 Chardzhou-Kungrad-Beneu-Makat 철도는 중앙아시아를 러시아와 유럽국가로 이어주는 주요철도임

2) 안디잔(Karakalpakstan) 지역

가. 경제발전 상태

- 2015년 기준, 지역경제성장률은 GDP 3.6%(10조 6,760억 쉰), 산업생산 - 11.3% (9조 2,261억 쉰), 농업 8%(4조 5,598억 쉰), 건설산업 13.7%(1조 4,128억 쉰) 및 소매업 매출 14%(5조 5,902억 쉰)을 기록함
- 2016년 3분기 기준 지역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GDP - 1.5%(7조 2,028억 쉰), 산업생산 - 31.5%(5조 3,170억 쉰), 농업, 임업 및 어업 6.4%(3조 3,466억 쉰), 건설사업 20.8%(1조 2,822억 쉰) 및 소매업 매출 14.4%(5조 292억 쉰)을 기록

나. बैं킹 및 금융시스템

- 안디잔 지역 주요은행은 Central Bank of for AndijanProvince, Pakhtabank, Savdogarbank, Gallbank, Alokabank, Industrial-construction bank, Asakabank, Microcredinbank, Ipotekabank, etc 등임
- 2010년 166조 4,000억 습(1억 140만 달러)에 이르는 자본을 제공함

다. 농업

- 안디잔 지역은 면화, 누에고치, 과일 및 채소, 메론 재배에 적합한 기후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메론, 원예, 면화가 주요재배작물이며 양, 소, 말 등의 사육을 중심으로 축산업이 발전하고 있음
- * 농업은 안디잔 지역 GRP의 33.2%를 이룸

- 현재 재배지역의 부족으로 농업분야는 생산효율성 제고를 통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2015년 총 67.7만톤의 농산물을 수확해, 밀 55.7만 톤, 면화 28.4만 톤, 감자 29.2만 톤, 채소 141만톤, 작과류 10.6만 톤, 포도 6.8만톤, 육류 12.6만 톤, 우유 82.2만 톤, 달걀 4억 7,360만 개 등을 생산함

라. 광물 및 원료산업

- 안디잔 지역의 주요광물자원은 모래, 자갈이고, 2,420만 cubic meters의 벽돌 원재료가 매장돼 있으며, 주로 Khanabad, Marhamat, Pahtaobod, Hudjaobod, Izbaskan, Kurgantepa에 매장돼 있음
- Andijan 및 Bulakbashi 지역에 5,270만 cubic meters의 라임스톤이 매장돼 있으며, Andijan, Asaka, Pahtaobakskom, Shahrikhon Bulakabashi에 미네럴워터가 매장되어 있음

마. 산업적 잠재성

- 기계공학, 자동차, 전력, 경공업 및 식품산업, 생화학 산업이 해당 지역에서 큰 발전을 보이고 있음
- 급격한 발전은 동 산업에서 고품질 제품 생산을 가능케 하며, 이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



바. 자동차 산업

- ‘UzDaewooAuto’ 활동이 1996년 7월 시작되어, 매년 25만 대의 자동차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GM Uzbekistan은 지역 내 가장 큰 기업으로 자리매김함
- 2014년에는 24만 5,600대 판매실적을 기록했으며, 2017년 Tracker, 2018년 Cruze 등 신차를 출시할 계획임

사. 외국인 투자

- 자동차 산업등에서 한국 등 15여개사 이상이 투자진출함

아. 해외투자기업

- 총 83개의 해외투자기업이 등록됨. 2010년 이 기업들은 33억 8,420만 숨에 달하는 제품들을 생산하며, 1만 7,900명 이상이 이 기업에 종사하고 있음
- 등록된 해외투자기업 중 25개 기업이 면화 생산 전문업체이며, 8개 기업이 건축분야 업체이며, 7개가 소비자재를 생산함. 12개 기업은 기계공학업체, 39개 기업은 운송 및 커뮤니케이션 지원 서비스업체임

자. 자연조건

- 안디잔 지역은 매우 건조하며, 대륙성 기후임. 7월 평균기온은 27.3℃이며, 겨울철 1월 평균기온은 -3℃임. 지역 내 작물 영양생장기는 273일이고, 평균 강수량은 200~250mm임.
- 안디잔 지역의 키르기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페르가나 지역과 북서쪽으로는 나망간 지역과 맞닿아있으며, 토지면적은 총 4,300km²에 달함

차. 인문조건

- 안디잔 인구수는 2016년 3분기 기준 294.8만명에 이르며, 안디잔 지역은 14개 행정구획으로 나누어짐

- 세부 구획명은 Altinkul, Andijan, Asaka, Balikchi, Boz, Bulakbashi, Jalakuduk, Izbaskan, Kurgantepa, Marhamat, Pahtaabad, Ulugnor, Hojaabad and Shahrihan임

타. 교통

- 안디잔 지역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총길이는 8,200km에 달하며, 철도는 262km에 달함. 이러한 교통인프라는 다음 지역의 화물수출 및 수입운송을 가능케 함
 - ① Andijan-Osh-Ishkertam-China(Karakorumhighway)-Karachi seaport(Pakistan)
 - ② Andijan-Osh-Andijan-southern sea ports of China
 - ③ Andijan-Tashkent-Samarkand-Termez-Afghanistan
 - ④ Andijan-Tashkent-Samarkand-Russia-CIS countries
 - ⑤ Andijan-Tashkent-Turkmenistan-southern sea ports of Iran
- 지난 2016년 6월 수도 타슈켄트와 동부 페르가나 지역을 잇는 123.1km의 안그렌-팍 철도(터널 19.2km 포함)가 완공됨. 이에 따라 타슈켄트-안디잔 직통노선이 8월부터 개설돼 일일 10대 이상 화물운송을 시작했으며, 곧 일일 20대 규모로 증가될 계획임
- 이번 신규노선 개통으로 타지키스탄을 경유하는 기존 노선 사용 필요성이 줄어,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2,500만 달러 상당의 타직측 지불비용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3) 지작(Jizzakh) 지역

가. 경제발전 상태

- 2015년 기준, 지역경제성장률은 GDP 9.1%(3조 8,971억 습), 산업생산 13.8%(1조 3,117억 습), 농업 6.2%(3조 1,071억 습), 건설산업 11.7%(7,982억 습) 및 소매업 매출 18.2%(2조 3,505억 습)을 기록함
- 2016년 3분기 기준 지역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GDP 9.1%(3조 4,385억 습), 산업생산 18.3%(1조 3,271억 습), 농업, 임업 및 어업 6.2%(1조 9,177억 습), 건설사업 12.5%(7,083 습) 및 소매업 매출 14.4%(2억 1,177억 습)을 기록



나. बैं킹 및 금융시스템

- 지작 지역에는 26개의 상업은행과 3개의 신용조합, 24개의 보험회사가 있음
- 해당 지역에 소재한 주요상업은행으로는 National Bank for Foreign Economic Activity, Khalq Bank, Turon Bank, Microcreditbank, Agro Bank, QishloqQurilish Bank, Asaka Bank, Ipoteka Bank, Industrian and Construction Bank 등이 있음

다. 농업

- 지작 지역의 경제 또한 농업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해당 지역에는 300일 이상 맑은 날이 지속되기 때문에 농업에 유리한 기후조건을 토대로 관련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음
- 전체 GRP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9.6%에 이르며, 2010년 기준 해당 지역의 농산물 및 관련상품 생산은 총 8,300억 달러에 달함. 이는 2009년 보다 106.1% 성장한 수치임

라. 광물 및 원료산업

- 지작지역에는 건축산업에 필요한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으며, 각 행정구획마다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주요광물자원들이 있음
 - Gallyaral : 규회석(400만톤 예상 매장량)
 - Uchkulach, Farish : 중정석
 - Gallyaral, Kutermin, Dunyo-Tepa, Khavast, Farish, Yangiabad : 시멘트 원료
 - Malguzar, Aktas, Sharaksay, Kulsuyuk : 석판

마. 산업적 잠재성

-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 통틀어 알카라인 건전지, 양말, 니트 제품, 밀가루, 동물사료 등의 생산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음
- JSC Djijak plastic 등의 대규모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에 34종의 소비재재를 포함한 50개의 주요 산업제품들이 현재 생산되고 있음



바. 화학 산업

- 우즈베키스탄 최대 화학 산업 기업 중 하나인 Jizzakh plastics는 플라스틱 가공처리 및 플라스틱 파이프 제조, 폴리에틸렌 필름 생산품 제조를 주요 산업으로 두고 있으며, Sogniana Pipe Plast, Zamonaviypolimerquvur 또한 동종 업계(폴리에틸렌 및 폴리에틸렌 파이프 생산)에서 활동하고 있음

사. 면화산업

- 지작 지역은 면화산업에 있어서 큰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22만 4,000톤의 면화가 매년 생산되고 있으며, 면화가공 산업으로 7만 1,100톤의 무명섬유가 총 6개 면화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음

아. 외국인투자

- 총2억 3,000만 달러가 지작 지역에 외국인직접투자로 유치됨. 2010년 해당 지역의 해외투자금은 지난해 대비 140.8% 증가함
- 해외투자의 광범위한 투자유치,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위해 우즈베크 정부는 2011년도에 지역투자프로그램과 지작 지역 산업발전 프로그램 2011~2015를 실행해 옴

* 이 프로그램은 1억6,320만 달러에 상당하는 총 122개의 투자프로젝트 실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에 730만 달러가 FDI로 유치됨

자. 자연조건

- 지작 지역은 우즈베키스탄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Syrdarya강과 Zarafshan강 사이에 위치함
- 지역면적은 2만 1,200km²에 달하고, 이는 우즈베키스탄 전체 영토의 4.8%에 해당하는 면적임. 이 지역의 1월 평균온도는 +1℃, +4℃, 7월 평균온도는 +28℃이며 평균 강수량은 400~500mm임

차. 인문조건

- 해당 지역의 인구수는 2016 3분기 기준 129.4만명이며, 12개의 행정구획으로 나누어짐



타. 교통 및 커뮤니케이션

- 지각 지역은 투자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한 공공인프라시설들을 두루 갖추고 있음. 우즈베크 전역을 잇는 철도망을 갖추고 있는데, 이로 인한 상품의 출입이 용이한 상태임
- 이 지역에 설치된 고속도로의 총길이는 4,071.8km²이며, 철도는 250km임. 지역 내 철도, 고속도로 등의 교통망은 해당 지역내 Farish, Pakhtakor 행정 구획에 소재한 Uchkulach 광산과 면화산업 지역 등을 연결해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5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 투자위협도

○ 개요

-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주요 수출품목인 천연가스, 금, 면화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2004년부터 최근 10년 이상 연 7%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무역 및 재정수지 흑자와 정부주도의 다양한 인프라 개발 등으로 투자도 활성화되고 있음
- 2016년말 고 카리모프 대통령 9월 2일 서거 이후 불확실한 후계구도, 경제불안 등이 우려됐으나 사프캬트 미르지요예프 총리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해당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됨
- 아프가니스탄과의 접경 등의 지리적 종교적 특성에 따른 테러위험이 잠재적인 불안요소로 남아있으며, 향후 러시아와 중국, 서방 사이에서의 외교노선 향방이 잠재적인 투자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1차 산업 상품 수출비중이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등락과 같은 대외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낙후된 금융환경과 부정 부패 등으로 기업경영 여건이 양호하지 않은 편임
- 외채상환능력 및 외채상환 태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OECD는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신용등급을 6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음

□ 투자진출 시 애로 유의사항

1) 금융상의 제한

○ 외환통제

- 우즈베키스탄에 투자 진출하는 기업의 최대의 문제점은 외화환전이 어렵다는 점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3년 10월 숨화의 완전태환을 보장하는 IMF8조를 수락했으나, 완제품 수입용 외환에 대한 선별적인 태환 허용 등 제도적 제약이 상존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 상황 등에 따라 태환상황은 매우 유동적임
- 2016년말 기준, 환전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비거주자가 우즈베키스탄 내 환전사무소에서 숨화를 경화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환전사무소에서 발행한 경화를 숨화로 환전했다는 영수증 또는 숨화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으로 획득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하도록 제한함
- 중앙은행의 허가 없이 국외에 계좌를 보유할 수 없으며, 국내에서 모든 결제는 자국 통화로 이루어져야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화지출은 외화수익, 이윤 범위 내에서 가능함

○ 현금 결제 제한

- 기업 간의 대금결제는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일상경비목적으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됨



- 은행에서 예치된 자사의 자금이라도 봉급 및 출장비 등 한정된 목적에 한해서만 인출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는 종업원 급여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상한선이 설정돼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1년 8월부터 비거주자가 우즈베크 내에서 항공권 구매 시 자국화폐인 솜화가 아닌 달러 등 경화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 시 항공사는 판매금액의 100%를 과태료로 납부하도록 함

○ 현금 인출 제한

- 원하는 시기에 현지은행 계좌에서의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이 종업원 급여 지급을 위한 계좌인출이 적시에 안 돼 임금지불이 지연돼, 근로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인플레이션 방지 등을 위해 공무원 /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급여의 일정비율 이상을 현금이 아닌 직불카드 (현금인출불가능)로 지급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외환의 매각의무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출 등을 통한 외화수입은 수취 후 5일 이내에 전체 수입의 50%를 솜으로 매각해야 함
- 다만, 수출품목 생산을 위해 발생한 운송, 보험, 관세, 수수료, 은행이자 등 특별외환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매각의무는 우즈베키스탄 기업과 외국기업에게 모두 적용됨

○ 환전

- 외국인 투자기업은 건별로 환전신청을 해 심사 후 환전을 받고 있음. 제품 물품을 국내에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 전액은 구좌에 입금되고, 입금된 금액 중 회사의 경비로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건별 심사 후 환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통상적으로 외화환전에 적어도 6개월~1년씩 걸리는 등 현지화를 외화로 환전받기가 매우 힘들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외화환전문제를 경영 주 애로사항이라고 함.

- 자유로운 환전의 미보장과 더불어 물품 또는 서비스 수출을 통한 외환 수입은 수취 후 5일 이내 50%를 중앙은행에 강제 매각하는 등의 정부의 강력한 외환통제 또한 투자 리스크로 작용함

○ 부패 및 비효율 행정

-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조사 결과, 166개국 중 153위를 차지하는 등 현지 관료들의 횡포와 비리, 비효율적 업무추진, 법률 및 제도의 미정비 등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업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현지 합작 투자자와의 마찰 등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됨
- 따라서 투자 결정 이전에 현지 법률과 제도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현지 관료 등과의 인맥형성도 권장할 사항임. 또한 합작투자 계약시에는 예상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명문화해 둬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마찰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함

2)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 토지취득 제한

- 외국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토지취득이 불가함. 단, 외교단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등록된 국제기구(대표자 관저를 비롯한 업무용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취득이 가능함)
- 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이 불가함. 단, 외교단, 우즈베크 정부에 등록된 외국 언론사 직원, 상주 투자법인의 직원, 국제기구 직원, 그리고 우즈베크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은 거주용부동산에 한하여 구입 가능함

○ 부동산보유 사용권

- 외국인투자회사(법인) 및 외국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대신 부동산 보유사용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음
- 보유사용권 획득 시 토지법에 따라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보유사용권은 엄밀하게 소유권은 아니나 계약당사자인 정부와 협상 여하에 따라 영구보유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어 실제 소유권과 구별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부동산보유사용권 사용조건

-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보유사용권을 부여받을 시, 이에 상응하는 사회개발기금, 개발 후 기부체납 등을 계약내용에 삽입하고, 납부해야 함
- 상기 부동산 보유사용권을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외국인 또는 법인이 동 토지의 보유사용권을 제3자에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 필요

3)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한(100%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

- 1998년 외국인 투자법 개정 이전에는 외국인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내각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동 조항은 폐지 삭제되어 100% 외국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됨
- 단, 외국인투자기업이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각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고, 국영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산위원회의 사전 결정이 요구됨
- 100% 외국인 소유 회사 설립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현지 정부기관이나 민관기업과 합작투자형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분제한이 일반적임. 또한 민영화 시에도 주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음

4) 국산화의무 및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 일반적인 의무규정은 없으나, 외국기업의 투자 허가 시 동 요건을 부과할 수 있음



6 - 노무관리제도



□ 노동법 개관

○ 개요

- 우즈베키스탄 국민 및 외국인의 우즈베키스탄 내 고용은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의 적용을 받음. 노사관계는 단체협약 및 개별고용계약서에 따르며, 고용계약서는 우즈베키스탄 관련 법규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해야 함
- 모든 국내의 기업들은 인력소개소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고용할 수 있음

□ 노동관련 규정

○ 근로기록부

- 우즈베키스탄 국적인은 고용주에게 개인 인적사항 및 과거, 현재의 근로 기록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록부를 제출해야 함
- 이 근로기록부는 종업원의 일시적 질병 혹은 장애 등으로 인하여 국가 사회보장기금에서 지불되는 금액을 산정함과 아울러 종업원의 국가연금 권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급됨
- 종업원의 근로기록부가 없을 경우, 고용주는 고용개시 5일 이내에 신규 근로기록부를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함

○ 건강검진

- 사업주는 고용계약 시, 사전 의료검사 및 근무 중 체계적 의료검사를 아래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함



- 18세 미만 근로자, 60세 이상 남성, 55세 이상 여성, 장애인,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거나, 야간업무 또는 수송관련 업무를 하는 자
- 식품업·유통업, 그리고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등학교·간호학교 등 아동교육 및 양육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관의 선생님

○ 수습기간

- 고용계약 당사자들은 합의에 따라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수습기간 내에 사용자는 언제든지 고용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음

○ 최저임금

- 임금액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계약에 따라 정해짐. 임금은 법령에서 정한 최저금액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최대액은 제한되지 않음
- 지급형태와 체계, 보너스, 추가지급, 이익금, 인센티브는 단체협약 또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위원회 또는 다른 근로자 대표기구와의 계약, 규범에 따름
- 임금지급은 금전형태로 지급해야하며, 유사노동으로서의 보상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됨.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인별 보수지급 조건의 변화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는 허용되지 않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허용되며, 근로자에게 예상되는 변화에 대하여 최소 2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 함
 - 기술 또는 생산 및 노동조직변화로 이전 보수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기타법령에서 정한 다른 경우
- 초과근무와 주말 또는 공휴일 근무는 최소 2배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함. 구체적인 보수수준은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단체협약에 정하지 않은 경우 노동 또는 근로자 대표기구와의 합의에 의하여 사업주가 정함

- 야간근로시간은 일반임금의 1.5배보다 낮지 않게 지급해야하며, 야간근로로 증가된 보수는 기본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단체협약으로 야간근로에 대한 보수를 정해야 함.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기구와 합의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수지급수준을 정할 수 있음
- 임금지급일은 단체협약 또는 기타지역 노동규범에 의해 정하며, 최소 1개월 2회 이상이 돼야 함. 우즈베크 정부는 특정부류의 근로자에 대해 임금 지급기간을 예외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 임금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보수는 해당일 이전 일에 지급해야 함. 단체협약에서 사업주의 과실로 보수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을 규정할 수 있음
- 임금은 정부가 정해 고시한 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2017년 5월 우즈베키스탄의 월 최저임금은 지난 2016년 10월 개정 이후 변동 없이 149,775숨을 유지하고 있음

<최저임금>

연도	최저임금
2009년 12월	37,680숨
2010년 12월	49,735숨
2011년 12월	62,920숨
2012년 8월	72,355숨
2013년 12월	96,105숨
2014년 9월	107,635숨
2014년 12월	118,400숨
2015년 8월	130,240숨
2016년 10월	149,775숨
2017년 12월	172,240숨
2018년 7월	184,300숨
2018년 11월	202,730숨

주 : 2018년 12월 현재 2018년 11월 기준



○ 주당 근무시간

- 정상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됨. 주당 6일을 근무 시, 일일 근로시간은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일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자의 동의 시 시간 외 초과근무를 할 수 있으나, 일부 특정 범주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 외 초과근무가 허용되지 않음. 시간외 초과근무는 2일간 4시간 혹은 연간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은 시간당 평균임금의 2배 이상을 지급해야 함. 한편, 사용자는 초과근무시간에 비례해 다른 날에 휴가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여전히 평균임금의 1배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해야 함
- 야근근무는 22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야간으로 간주하며, 일 근무 시간의 1/2 이상이 야간에 발생할 경우 야간근무기간은 1시간 단축돼야 함. 그러나 지속적인 생산이 필요해 6일 근로 1일 휴무로 교대제를 하는 경우와 같은 생산조건 하에서 요구되는 경우 야간근무는 주간 근무와 동일하게 취급됨

○ 휴가

- 다른 직업을 가진 근로자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는 휴식, 근로능력 유지를 위해 연가를 제공받아야 하며, 이 경우 업무(직위)를 유지하며 평균 임금이 지급돼야 함
- 우즈베키스탄의 공휴일은 연간 9일이며, 연간 유급 휴가기간은 근무일 기준 최소 15일 이상임. 연령, 건강에 따라, 다음의 경우 기본 연가가 연장돼야 함
 - 18세 미만인 자 : 30일
 - 장애인 1급 및 2급 : 30일
- 연가기간은 주당 6일 근무를 기초로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비근무 일인 공휴일이 휴가기간 중에 있는 경우, 휴가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병가

- 종업원의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한 일시적 결근에 대해 고용주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 출산휴가

- 출산 유급휴가는 출산 이전 최소 70일 이상, 출산 후56일(합병증, 쌍둥이 출산 시 70일)동안이며, 출산 전 실제 사용한 휴가일에 관계없이 완전히 제공돼야 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0일 이상 부여할 수 있음
- 출산휴가기간에 대하여 종업원의 정규급여와 동일하게 급여가 지불되나, 고용주가 국가사회보장기금에 납부해야 하는 기부금에서 공제되는 형식으로 실제로는 모두 고용주에게 환불되는 것임
- 출산휴가 이후, 여성이 희망하면 아동이 2세에 도달할 때까지 육아휴직을 제공해야하며, 법령에서 정한 급여를 받음. 여성이 희망하는 경우 3세에 이를 때까지 무급휴가를 제공해야 함.
- 육아휴직기간 동안 여성의 종전 업무(직위)는 유지되어야하며,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업무경력 및 근무기간에 포함돼야 함. 또한 단체협약 또는 다른 기업규정, 고용계약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의 차기 년도에 유급연가를 산정하는 근무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음

○ 우즈베키스탄의 외국 근로자

- 우즈베키스탄 노동법령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이 노동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노동허가서를 받아야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위 노동허가서에 기해 노동활동 권리확인서를 받아야 함
- 위 노동허가서와 노동활동권리확인서는 우즈베키스탄 주민노동 및 사회보호부 산하의 대외노동이민국에서 발급함
- 노동허가서 및 노동활동권리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이민국에서 정하고, 이민국은 서류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노동허가서 및 노동권리확인서 발급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함



- 외국인근로자 개인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절차는 외국인 근로면허 발급 절차와 유사하며, 외국인 근로면허 및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모두 유효기간은 1년 이내임. 외국인 근로면허 발급 수수료는 월 최저임금의 10배이며,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는 무료로 발급됨
- 노동허가 취득을 위해 제출서류는 신청서 2본, 근로자의 신상설명서 2본, 고용계약(안), 사진(2매)이 부착된 고용주의 각서, 근로자 여권사본, 근로자의 교육 및 자격증명서, 해당 업무 관련 외국인력 필요를 증명하는 지방노동기관의 서한, 고용허가서, 수수료 납부 은행 영수증 등 임

○ 임금

- 임금액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계약에 따라 정해지며, 임금은 법령에서 정한 최저금액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최대임금액은 제한 없음
- 지급형태와 체계, 보너스, 추가지급, 이익금, 인센티브는 단체협약, 또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위원회 또는 다른 근로자 대표기구와의 계약, 규범에 따름
- 임금지급은 금전형태로 지급해야 하며, 유사노동으로서의 보상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됨.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인별 보수지급 조건의 변화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허용되지만, 근로자에게 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함
 - 기술 또는 생산 및 노동조직 변화로 이전 보수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기타 법령에서 정한 다른 경우
- 임금 지급일은 단체협약 또는 기타지역 노동규범에 의해 정하며, 최소 1개월 간 2회 이상이 되어야 함.
- 특정부류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기간을 예외적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임금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보수는 해당일 이전 일에 지급해야 함. 단체협약에서 사업주의 과실로 보수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을 규정할 수 있음



○ 노동조합

- 법에 의하여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차별도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불이익 또는 응징을 두려워해 단체교섭권 또는 노조가입을 잘하지 않음
- 노동조합은 정부 중심적이며 종속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조합연맹 이사회는 35,800개의 기초조직과 14개의 지역노조가 소속되어있으며, 공식보고에 의하면 근로자의 60%가 가입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 대통령실에서 노동조합연맹 수뇌부를 지명하며, 노조이사회는 노조 수뇌부 선출에 관여하지 않음. 즉 모든 지역별 및 지역별 산업노조들은 국가가 통제하며, 독립적인 노조는 없음
- 법에서는 파업권을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그러나 최근 수년간 국영 광산업 및 에너지 기업 근로자들이 임금인상과 임금적시 지불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인 결과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보도가 있었음. 참고로 우즈베키스탄은 ILO의 13개 협약에 가입되어 있음

7 금융제도



□ 은행산업 현황

○ 개요

- 우즈베키스탄에는 2017년 7월 현재 27개의 은행이 영업 중으로 정부가 농산물 수출촉진과 타슈켄트 지역 도시개발을 위해 각각 설립 추진 중인



국영 Uzagroeksport Bank와 Polytaht Bank가 추가될 경우 29개의 은행으로 늘어남

- 은행설립 시 최소 설립자본금은 10백만 유로임

○ 한국계 은행

- 구대우은행의 지분을 인수해 진출한 KDB Bank Uzbekistan이 있으며 국영은행들을 제외할 경우 우즈베키스탄 상업은행에서는 총자산면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음

○ 비중

- 우즈베키스탄 금융부문 중 총 자산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외 의존도가 낮아 글로벌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있지 않음
- 정부, 은행 및 경제부문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있으며, 정부는 은행을 통해 경제개혁 및 투자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자원을 배분하고 있음

○ 최근 추이

- 최근 수년간 연간 8% 내외의 높은 경제 성장률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은행 총 자산 및 대출규모가 연간 약 30% 이상 대폭 증가했으며, 총 자본금의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상업은행에 대한 대폭적인 증자에 힘입어 매년 20% 내외로 확대되고 있음

○ 향후과제

- 실물경제의 지속성장에 힘입어 외형적으로는 꾸준한 성장세에 있으나, 아직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타 CIS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으며, 보다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정부 주도하에 금융산업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의 간섭, 은행에 대한 낮은 신뢰도, 일부 국영은행의 독과점, 정부의 엄격한 외환통제, 국제기준에 맞는 규범적용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임

□ बैं킹서비스

○ 개요

-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बैं킹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우즈베크 중앙은행을 비롯해 30개의 상업은행이 있음
- 상업은행은 새로운 업체들의 발전금 및 투자 프로젝트 발전금을 포함한 모든 बैं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대표은행 : National bank for Foreign Economic Activities, Asaka Bank, Agro bank, Promstroy bank
 - * 외국은행과 코레스 계약을 맺고 있는 은행 또한 존재하며, 가장 큰 코레스 은행이 UzKDB 은행임

○ 현금카드 사용

- 최근 몇 년 동안 바이어와 판매자 거래를 위하여 VISA를 포함한 현금카드 사용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
- 몇몇 지불시스템이 800만 개의 카드들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업은행과 발행인 간의 지불시스템은 국내 통화의 비현금 지불방식을 지원하는 Uzkart standard 지불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주요기업 및 중견기업들도 위 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불할 수 있음



8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외환관리

○ 환전 및 수익금 본전 송환

- 환전은 우즈베키스탄의 '통화규정' 법률에 의거 이루어지며, 서비스 및 소비자재의 수입, 외국인 대출서비스, 통근수당, 해외 투자자들의 기타 수익금의 본국송환 등이 현행법에 의거해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들임
- 업체 및 기관들을 위한 우즈벡 습화의 교환가능 통화로의 환전은 우즈벡 공인은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외화구입 및 판매율에 따라 이루어짐

○ 습화 교환 의무

-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현행법상 해당 업체는 자사의 달러 전용계좌에 수입이 송금된 날짜에서 5일 이내에 그 수입의 50%를 반드시 국내 통화인 습화로 교환해야 하나,
- 중소기업들은 서비스 및 소비자재 수출로 생기는 수익을 반드시 달러에서 습으로 바꾸어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됨

□ 자금조달

○ 대출 및 임대서비스

- 우즈베키스탄 대출의 주요재원은 상업은행들이 제공하며, 해당 은행들의 주요제공 서비스로 창업자본 대출, 운전자본 보충, 필요설비 구입 자본 지원, 수출 및 수입활동 지원 등이 있음
- 우즈베키스탄 민법 및 담보 관련 법률에 따라 은행대출이 이루어지며, 대출신청자는 대출의 최소 125%에 해당하는 담보물(동산 또는 부동산)을 은행에 제시해야 함



- 대출신청자는 프로젝트 금액의 최소 25% 이상 투자해야하며, 차입금이자율은 UZIBOR + 2%(최대 4%)로 원가회수 및 프로젝트 리스크에 의하여 결정됨. 이와 더불어 상업은행은 LIBOR+2%(최대 6%) averaging LIBOR+4%로 외국은행의 크레디스 라인에 따라 경화로 고객들에게 대출할 수 있음

○ 대출신청시 필요문서

- 대출신청서
- 현금흐름(Cash Flow)이 제시된 비즈니스 플랜
- 금융보고서
- 공인기관의 세금감사 표시가 있는 계정잔액(잔고)
- 손익계산서
- 하기 상태의 담보물
- 부동산 또는 증권
- 은행 및 보험회사의 보증
- 제3자의 보증

○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

- 2017년 6월24일 중앙은행은 재할인율(refinancing rate)를 종전 9%에서 14%로 인상함
- 이번 중앙은행의 결정은 상반기 인플레이 및 숨화평가 절하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현 이자율은 대출투기 수요증가 및 인플레이 급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정부는 금번 재할인율 인상을 통하여 국내 외환 자유화 전환여건조성, 실물경제 대출증가, 인플레이 안정화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며, 향후 국내 가격안정화가 되는 경우 재할인율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힘

세무조사

Ⅲ

- 1. 세무조사 / 92
- 2. 조세위반에 대한 제재 / 107
- 3. 조세구제제도 / 110
- 4. 이전가격세제 / 112



1 세무조사



□ 세무조사의 의의

○ 세무조사의 의의

- 세무조사란 국세청(과세관청)에 소속된 세무서 직원에 의하여 행사되어지는 확인으로서, 세무서에서 독점적으로 행해짐
- 세무조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납세자의 재무경제적 활동에 대한 일반세무조사와 단기세무조사로 나누어짐
- 납세자의 재무경제적 활동조사는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순응도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회계, 재무, 통계, 은행 및 다른 납세자의 문서에 대한 검토와 비교를 포함하고 있음

□ 세무조사의 유형

○ 일반세무조사(Counter Audit)

- 일반현장조사를 지칭함
- 기업활동 일체에 의하여 통합되고 다양한 납세자에 의하여 소유되어지는 문서를 비교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 의하여 수행되어지는 조사임
- 지정된 당사자와 관련된 납세자의 영업에 영향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어서, 과세관청에서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할 때의 일반세무조사는 제3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짐

○ 서면조사(document tax audit)

- 납세자의 금융거래 등 서면조사



- 특별히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부서에 의하여 조사실현용 조정계획에 근거하여 행해짐

○ 단기조사(unannounced tax audit)

- 단기간 내에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특정거래에 대한 조사로서 납세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서 수행됨
- 단기조사를 하는 경우
 - 회사의 청산 시
 - 대통령 또는 우즈베크공화국정부 결정에 따라 조사 필요성이 있을 때
 - 납세자에 의한 세법위반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존재가 있을 때

□ 세무조사의 종류

○ 계획조사(정기조사)

- 납세자의 재정·경제 활동에 대한 조사계획수립 및 승인을 받는 세무조사

○ 비정기조사

- 당국의 결정에 따라 납세자의 금융활동, 법인 청산 등 단기 검증뿐 아니라 법률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

□ 세무조사 참가자

○ 세무조사의 참가자

- 세무공무원, 대표자, 회사직원
- 필요한 경우 전문가, 통역, 증인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원의 상업산업 대표와 지사는 우즈베키스탄의 상업산업 세무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



□ 세무조사의 근거

○ 계획세무조사

- 권한 있는 기관의 계획조사를 위해 사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 특별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부서 또는 이에 대응하는 하부부서에 의하여 조사승인 된 조직의 실현계획에 따라 선정되어야 함. 선정은 권한 있는 세무당국의 증명력을 가진 도장에 의하여 서명되고 인증되어야 함
- 과세관청의 조사명령, 조사대상, 조사목적, 조사관 구성, 조사기간, 조사 시기, 증명사항을 포함해야 함

○ 비정기조사

- 현재조항의 4가지 부분에서 예상되어지는 경우를 제외함
- 조사대상, 조사목적, 조사관 구성, 조사기간, 조사시기를 포함해야 함

○ 시장쇼핑단지

-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시기, 정당성을 부여하여 과세당국이 결정

○ 청산법인

- 서면통지, 조사목적, 조사시기, 조사관 구성하여 과세당국이 결정

○ 조사관 신분증(I.D)

- 시험명령과 신분증으로부터 해야 하는 샘플은 특별히 권한이 부여된 당국 과의 합의를 거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세청에 의하여 특정되어짐

□ 세무조사 기간

○ 세무조사기간의 제한

- 원칙 : 조사기간은 조사통지일로부터 시작해서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단기세무조사기간 : 근무일 기준으로 1일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연장조사는 허용되지 않음
- 예외 : 특별히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서 연장가능. 단, 중소기업은 제외됨



○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 세무조사 연장 시 문서로 공식화되어야 하며, 연장된 날짜, 인적사항, 조사공무원, 조사명령 등록증(숫자와 날짜 포함)을 명시해야 함
- 기간 산입여부 : 법인이 세무조사 중지시 기간 정지됨

□ 세무조사 주기

○ 세무조사기간

- 복합세무조사는 현재 두 조항 항목에 걸쳐있다고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1년에 1회 이내 실시
-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 성실사업자는 2년에 1회 이내 실시
- 중소기업, 농장, 장의사는 4년에 1회 이내
- 민간은행, 기타 금융기관은 5년에 1회 이내 실시
- 기타사업체는 3년에 1회 이내
- 창업중소기업, 농장은 등록일로부터 최초 3년간 조사대상에서 제외
- 단, 상기조항에도 불구하고 세금 및 과태료를 미납 시 정기세무조사 받을 수 있음
- 현지 출장확인한 바, 통상 5년에 1회주기로 실시한다고 하며, 연초에 세무조사 명단을 미리 공표함

□ 세무조사 요건

○ 조사공무원의 준수사항

- 세무조사는 89조 조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함
- 세무조사는 입법조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영업을 중단 해서는 안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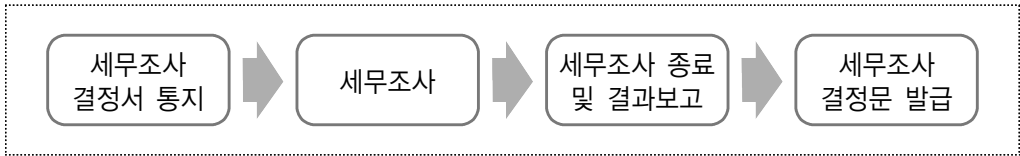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 세무조사 착수 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조사예고통지를 해야 함

○ 서면조사

- 서면조사는 사업활동과 관련된 보고서를 기초로 하며, 위반 사항 발견 시 현장조사로 전환될 수 있음
- 서면 조사 시 조사기간 동안 정기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 세무조사 흐름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행동강령 및 조사계획 준수

- 세무조사는 승인된 행동 강령에 따라 진행됨
- 조사 중 과세쟁점의 숫자와 범위, 준수하여야할 세법행위의 목록, 검증과 관련된 기타정보 등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우즈베키스탄 국세위원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계획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

○ 조사권 남용금지

- 세무조사는 당초 세무조사에 주어진 조사범위와 세무서의 조사범위역량을 넘어서 과도하게 수행될 수는 없음

○ 재조사시 조사범위

- 재조사는 조사받은 납세자와 관계가 있는 부분에만 수행
- 재조사를 실시할 때 검증대상과 관계없는 자료 요구는 금지
- 조사대상기간은 감사 연도의 직전 5년을 넘을 수 없음



○ **조사공무원의 제출요구권**

- 조사 시 권한을 부여받은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을 조사하면 재고사항 파악, 문서 제출요구, 문서와 물체 인출, 납세자나 사업장의 경영진 또는 재무담당자로부터 설명을 수취할 수 있게 되며,
- 은행계좌의 동결조치, 전문가를 끌어들이고, 전문지식을 임명하고, 세법 위반으로 확인된 것의 제거를 요구하고, 현재의 세법코드와 다른 법률 행위에 의하여 관계되어진 다른 행동을 이행할 수 있음
- 조사보고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함

□ **납세자의 권리**

○ **조사공무원 접근금지 권한**

- 납세자는 세무서 직원이 세무조사의 세목 또는 과세기간과 관련이 없는 문서로 자료요청을 받는 등 주어진 권한 밖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서 직원의 사업장으로의 접근을 거절할 권리를 가짐
- 조사 중 납세자는 해당 조사기간에 대한 신고서 내용의 수정 및 추가를 할 수 없음

□ **세무조사의 착수**

○ **세무조사 착수 순서**

- 단기감사의 경우 납세자에게 조사목적을 알리고, 세무조사 공문을 제출
 - 세무조사목적을 납세자에게 통지함
 - 조사본부에서는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특수한 ID를 제공함
 - 입법에 의하여 설립된 명령에 따라서 조사등록서 기입
 - 일반조사 또는 단기조사의 실현을 위한 조화계획에서 추천된 사본과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세무당국의 임명 명령사본과 수령증을 납세자에게 건넨

○ 세무조사의 시작

-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됨
- 세무조사 통지서의 수취를 납세자가 거절하면, 세무서는 직원과 납세자에 의하여 서명된 문서를 발행함
- 서류의 수령을 거절하여도 세무조사의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서류 수령 거절 시 세무공무원은 해당 사유를 법령에 따라 작성

○ 조사 시 납세자 협력사항

- 납세자는 조사공무원들이 관할구역 또는 부지에서의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단, 4개 부분과 8개 문서에 의하여 명기된 경우를 제외함
-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사업장을 조사할 권한이 있음
단, 조사 공문 또는 증명서가 없거나 세무조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지 않거나 공문 상 세무공무원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
-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납세자가 통지서를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제외하고 규정된 절차에서 두 개의 조항 중 하나가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발행되지 않은 통지서를 받았을 때
 - 순서에서 조사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거나, 그 또는 그녀가 세무조사 시 특별한 ID(신분증)를 제공하지 않음
 - 순서에서 명시된 조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거나 만료된 경우
 - 조사관이 조사를 위한 기록서에 기입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 주거용 건물에 대한 세무조사는 허용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공무원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공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공무수행 방해로 기소를 받더라도 세무조사가 취소되지는 않음



□ 사업장 및 재산목록 조사

○ 세무공무원의 사업장조사 권한

- 필요 시, 세무서 직원은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사업장, 창고, 무역 부지, 수익을 창출하는 장소 또는 조사를 위한 과세대상 및 재산목록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음

○ 납세자 조사 시 권리

- 사업장과 부지의 조사 시 증인(예; 세무대리인)이 참여할 권리가 있음
- 조사를 받는 자 또는 조사를 받는 자의 대리인은 이러한 자를 참여시킬 권리가 있음
- 필요시 사진촬영, 비디오 녹화를 할 수 있으며, 문서에서 반영된 복사본은 문서에서 취해짐

○ 조사서 작성 및 재산조사 명령조건

- 문서는 101조 조항에서 명기된 요구사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함
- 세무조사를 위한 재고명령은 우즈베키스탄 재무부의 인가 하에 국가세무 위원회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요구

- 세무 조사 시 조사대상 기간 동안의 세금 계산, 납세 및 의무적 납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납세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법률 96조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서류의 압수가 가능함

□ 서류 및 물품의 영치

- 세무조사 시 세법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압류 가능함
- 납세자의 활동 중단을 초래하는 서류 및 물품은 법원의 허가 후 영치 가능
- 23시부터 06시까지 문서 및 물품의 압류 금지
- 세무조사와 관련이 없는 문서와 물품의 영치는 금지
- 압수 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게 확인시켜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설명해야함
- 납세자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절할 경우 강제적으로 압수할 수 있음
- 문서와 물품의 영치는 납세자가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함
- 강제로 문서물품을 영치 시 관련되는 모든 문서와 물품을 납세자 및 압수에 참여한 사람에게 확인시켜야함
- 서류는 원본 혹은 납세자의 도장으로 증명된 사본으로 제출받음
- 세무공무원은 사본으로 불충분하거나 원본문서가 없어지거나, 은닉되거나, 조정되거나 바뀌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원본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원본 서류 압수 시 세무공무원이 인증한 사본을 납세자에게 줌
- 원본 서류 압수 후 5일 이내에 사본을 전달
- 압류 물품에 대한 리스트를 2부 작성 후 1부는 납세자에게 전달
- 문서는 101조에 예정되어지는 요구사항에 따른 문서와 물품의 영치에 대하여 기록됨. 해당 원안에는 영치된 물품과 관련된 정확한 이름, 숫자, 개인물품의 모양과 가능한 물품가액 등이 작성되어있어야 함
- 수령 거절 시 세무공무원이 기록 관리하며, 해당사본은 납세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고, 발송 후 3일이 경과하면 납세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



□ 은행계좌 거래 정지

- 납세자의 계좌정지는 형사상의 부당거래 및 테러자금지원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짐
- 납세자의 은행계좌를 중지시킬 수 있는 경우
 - 세무조사 시 세무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 신고 된 주소에 납세자가 없는 경우
 - 세금 및 재무제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세무공무원이 사업장 조사 시 납세자의 불법적인 방해로 조사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기면 세무서는 법원에 신청해서 납세자의 은행 및 재무신용 단체의 계좌거래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
- 미등록 상품(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경우 최대 5일간 은행 계좌를 중지시킬 수 있음
-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회계정보가 세무서의 모니터링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세무서가 납세자의 은행계좌를 동결하도록 법원에 신청가능

□ 조사시 전문가의 참여

○ 전문가의 참여 및 임명

-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세무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고,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음
- 과학, 예술, 기술 및 기타 특수 분야에서 전문가의 특수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음
- 전문가의 임명은 세무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이 요청하며, 기관장의 승인에 따라 임명됨

○ 전문가의 권한

- 전문가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파악할 수 있고, 추가 자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
- 전문가는 제공된 자료가 충분치 않거나, 전문지식을 안내할 때 충분치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
- 전문가는 서면형식으로 결론을 발표함. 결론은 조사 시 리서치에 대한 정보, 도출된 결과 및 제시된 문제에 대한 답변 등을 수록함
- 전문가는 세무기관과 전문가 간의 계약에 따라 수행

○ 추가적인 전문가 영입

- 결론이 불명확하거나, 완전치 않으면 추가적으로 전문가를 발표할 수 있음
- 기존에 참여했던 전문가의 결론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전문가를 영입해서 발표할 수 있음
- 추가적인 전문가는 현재의 법조문에 근거하여서 임명할 수 있음

□ 통역사의 참여

- 필요한 경우 통역사가 세무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
- 통역사는 세무조사와 관련이 없고, 언어와 번역 및 청각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자임
- 통역사는 세무공무원이 임명하며, 소환에 따라 출두하여 번역문을 작성함
- 통역사는 그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통역사의 서명에 의하여 공인되어진 원본에 기재할 때에 경솔하게 통역하면 경고를 받음
- 통역사는 세무기관과 통역관 간의 계약에 따라 수행



□ 증인의 참여

- 세무조사의 범위 안에서 증인이 참여할 수 있음
- 증인은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이 없어야 함
- 세무공무원은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증인은 활동사실, 내용 및 결과를 기록으로 증명해야 하며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음

□ 세무조사 수행범위에 대한 조사결과 문서

- 세무조사 수행 시 조사문서가 작성되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됨
 -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 조사근거, 유형 및 기간
 - 조사 착수 일시 및 장소
 - 조사 기간
 - 문서작성자의 직위, 이름
 - 참가한 사람의 인적사항
 - 조사 내용 및 순서
 -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사실과 상황
 - 서면조사 시 조사된 조사기간
- 이 조사결과 문서는 참가자들이 모두 읽어야 함
- 참가자들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결과문서와 세무조사 시 자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조사결과문서는 조사에 참여하거나 목격했던 세무서직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함
- 사진, 동영상, 비디오 녹화물, 그 외의 자료 등이 해당 문서에 첨부될 수 있음



□ 세무조사 결과 등록

-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의 세무조사 내용을 작성
 - 조사 장소, 증서 작성 날짜
 - 조사 수행근거
 - 조사 유형 및 조사 기간
 - 조사 실시한 주 세무 공무원의 성, 이름
 - 개인 기업가의 성, 이름
 - 조사 기간 동안 관리 기능이나 회계 기능을 수행 한 공무원의 성, 이름
 - 위치(우편 주소), 납세자의 은행 세부 사항 및 그 식별 번호;
 - 이전(과거) 조사에 관한 정보;
 - 검토 기간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한 문서 정보
 - 조세 법률의 관련 규범을 참조하여 조세 범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있을 경우)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결론
- 세무조사 완료 후 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조사보고서에 이 내용도 작성
- 세무조사 증명서는 3부 이하로 작성
- 증명서 모든 사본에 세무공무원이 서명하고 1부는 납세자에게 전달
- 납세자는 받았을 때의 날짜가 특정된 사본의 수취를 확인하여서 모든 사본에 서명을 해야 함. 남아있는 사본들은 세무조사의 다른 자료에 첨부됨
- 세무조사 결과통지문서의 납세자 송달일을 세무조사 종결일로 간주함
- 납세자가 수령 거부 시 세무공무원은 조사보고서에 이를 기재하고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며 그 순간 세무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함
- 세무조사 자료는 세무위원회 절차에 따라 조사완료일로부터 다음 근무일 이전에 제출



□ 세무조사 자료에 대한 기관의 검토

- 세무조사 자료는 조사 완료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15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차장이 검토해야 함
- 세무조사 자료 검토 시 과다 결정이나 기타 세법위반 등을 검토해야 함
- 자료 검토 시 다음의 문서가 작성됨
 - 세무 조사 자료의 검토 장소 및 날짜
 - 세무 조사 자료를 검토하는 사람의 성, 이름 그리고 그의 직위
 - 세무 조사 자료의 심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
 - 해당 세무조사 자료
 - 세무 조사 자료, 신청 및 심사 결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 및 그들의 검토에 대한 결과
 - 세무 조사 자료 검토 시 심사 된 서류
 - 세무 조사 자료의 검토 과정에 대한 기타 정보
- 납세자는 세무조사 완료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세무조사 보고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
- 세무조사 자료 검토 시 정당한 사유에 출석할 수 없음을 통지한 경우 3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연기
- 납세자에게 반복 통지함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시 납세자가 부재하더라도 진행함
- 납세자가 문서와 검토서를 수취하는 것을 거부하면, 이에 대한 주석 사항을 문서에 기재함
- 세무조사 자료 검토 시 의정서 3부 작성하여 1부는 납세자에게 전달

□ 국세청의 결정

- 세무당국은 자료 검토 후 근무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함
 - 세금계산, 의무적 납부액 부과, 벌금과 기타 처벌
 - 법률위반이나 거부 등 장부상의 위반에 대하여 납세자를 기소
- 세무당국의 결정 시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평가 된 세금의 액수, 기타 의무적인 지불금, 벌금, 벌금 부과
 - 감사에 의해 확실히 된 납세자가 행한 조세 범죄의 상황, 해당 상황을 증명하는 문서 및 기타 정보
 - 납세자의 특정 조세 위반에 대한 책임 부여 결정, 위반 행위를 규정한 조약 및 적용 가능한 책임 부여 방안
 - 조세 위반의 배제 조건 그리고 이 법 제 104 조 제 1 항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 기타 의무 납부 금액 그리고 벌금
 - 납세자가 조세 위반에서 배제된 경우 벌금을 면제 할 권리 그리고 확정된 부과된 세금, 기타의 의무 납부액 및 벌금의 납부
- 세무당국은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결정서 사본을 전달
- 거부 혹은 전달 불가 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발송 후 3일이 경과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

□ 국가기관의 집행

- 납세자는 세무당국이 결정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서에 명시된 세금과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조세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기간 내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벌금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규칙은 수익금을 과소 신고하거나 회계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 조세 위반을 시정하지 않거나 부과된 세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은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납세자에 대한 벌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세무조사를 이용한 불이익 금지

- 세무조사 시 부당행위로 납세자의 재산에 해를 끼쳐선 안 됨
- 세무조사 시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은 법률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모두 보상받을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에게 손해 배상이 부과될 수 있음
- 세무조사 시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단 입법행위에 의하여 예상되어지는 경우는 제외함

2 - 조세위반에 대한 제재 

□ 조세 위반

○ 의의

- 조세위반은 부당한 행위로서 납세자의 유죄이며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짐

○ 개인의 책임

- 조세위반에 대한 책임은 16세부터 적용 받음

○ 일반적인 세금위반

- 본령에서 규정된 방식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조세 범죄로 기소할 수 없음

- 본령에서 개인이 저지른 과세 위반에 대한 책임은 우즈베키스탄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개인 기업가가 저지른 과세 위반에 대한 책임은 법인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됨

○ 과세위반에 대한 경감 및 가중

- 세금 범죄에 대한 책임을 경감 사유
 - 개인 또는 가족에게 심각한 위해에 의한 범죄 위탁 시
 - 위협 또는 강압에 의할 시
 - 법원이 인정하는 경감 사유에 해당할 시
- 세금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가중 사유
 - 이전에 비슷한 조세범죄가 있는 경우

○ 미등록 제재

- 비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납세자는 국가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벌금으로 처벌
 - 개업 후 30일 미만 : 최저임금의 50배 또는 순수익의 10%
 - 개업 후 30일 이상 : 최저임금의 100배 또는 순수익의 50%
- 재화를 과세당국에 미등록 시 벌금으로 처벌
 - 등록기한 30일 미만 : 최저임금의 50배
 - 등록기한 30일 이상 : 최저임금의 100배

○ 수익금 과소신고 및 재화은닉

- 법적으로 출처가 확인되는 재화를 제외하고 미등록 물품 보관 시 : 물품 가치의 20% 벌금
- 미등록 물품이 국가로 귀속되는 경우 벌금 제외



- 미등록 물품은 수익금의 과소 신고로 인정됨
 - 상품판매로 인한 수익금 회계전표에서 누락
 - 상품판매에 대한 서류 위조 및 폐기
 - 재고자산의 창고 부재

- 세무보고서 제출 절차위반
 - 세금신고서 지연제출 또는 신고서가 허위일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행정 책임을 짐

- 회계위반
 - 부실한 회계처리 또는 절차 위반에 따른 세금을 결정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법인은 행정책임을 짐
 - 행정처벌을 받아도 법인인 납세자는 회계기록을 복원하여야 함

- 무면허 및 기타 무허가 활동
 - 면허 및 기타 무허가 활동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짐

- 송장발행 절차 위반
 -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서비스)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자가 아닌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송장을 작성하면 송장에 명시된 부가가치세의 20%를 공급자에게 벌금으로 부과
 - 벌금은 구매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재계산은 하지 않음

- 관리위반
 - 회계 금전등록기, 신용카드결제기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하거나 구매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기타 유사 서류의 발급이 의무임에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의 30배에서 50배까지 벌금이 부과



- 상기 벌금 적용 후 1년 이내 다시 위반 시 최저임금의 75배에서 100배 까지 벌금 부과
 - 금전등록기를 이용한 회계처리 위반 또는 신용카드 지불 거절 시 최저 임금의 100배 벌금 부과
 - 상기 벌금 적용 후 1년 이내 다시 위반 시 최저임금의 200배까지 벌금 부과
- 세금납부기한 위반 및 기타납부의무 위반
- 세금 납부시기 및 기타 납부의무 위반 시 납부 마감일 다음날부터 매일 0.033%의 벌금을 부과
 - 벌금은 총 미납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권리가 확인되지 않은 토지사용
- 권리가 없거나 권리보다 많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 세액과 같은 벌금부과
 - 법인 : 4배, 개인 : 3배

3 조세구제제도

- 불복 청구권리
- 모든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세무기관의 결정 및 세무공무원의 비리에 대해 상급 국세기관 또는 법원에 불복할 권리가 있음
- 불복청구의 절차
- 불복청구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함



- 세무기관의 상급기관에 불복한다고 해서 법원에 불복할 권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님
 - 세무기관의 상급기관 불복 시 불복된 결정이나 집행이 중지되며, 추가적인 세금징수, 의무적인 납입 및 기타제재 등이 불복의 결정전까지는 중지됨
 -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할 때 관련서류와 함께 불복하는 세무기관에 문서로 통보해야함
- 상위기관 불복절차와 불복청구 기한
- 세무 상위 당국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함
 - 상위 과세당국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불복 시 증빙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 불복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서는 해당 불복청구 시 첨부됨
- 상급기관에 고소제기에 대한 결정
- 세무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및 공무원에 대한 고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불복 청구인에게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함
 - 상급기관은 다음의 권리가 있음
 - 당초 결정대로 결정
 - 불복된 결정고지 등에 대한 결정취소 또는 경정
 - 결정 또는 새로운 결정을 바꿀 수 있음
- 상급기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 불복청구에 대한 상급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취소 등의 후속조치가 취해져야 함
 - 항소한 납세자에게 3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결과가 통보되어야 함



4 - 이전가격세제



□ 이전가격 세제

○ 의의

다국적기업의 가격정책에 대한 세무당국의 규제제도로써 다국적 기업 전체로서의 세후 순손익 극대화를 위해 특수 관계기업간의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세부담률이 높은 국가에서 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 또는 모회사가 소재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

○ 이전가격 세제 법령의 도입

- 2009년 12월 30일 이전가격세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최초 도입되어 시행됨 (30.12.2009. N ZRU-241)

○ 이전가격 적용대상 외국법인

- 우즈베키스탄에 등록된 법인사업체로서 외국정부와 외국인인 주투자자인 회사
- 우즈베키스탄에 등록되고, 외국에 법적인 실체가 있고, 창업자(참여자, 멤버)가 같은 법적 또는 자연인인 자

○ 특수 관계자의 범위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지분의 20% 이상을 보유
- 일방기업이 타방기업의 최대주주이면서, 타방기업의 투자지분의 10% 이상을 보유
- 일방기업이 차입기업의 투자지분의 20% 이상이고, 증장기차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하여 보증하거나 타방기업에 대여한 경우



- 일방기업 이사회 이사진 50% 이상이 타방기업에 의해서 선임되거나, 재무정책 및 사업활동의 결정권을 가진 임원이 타방기업에 의해서 선임된 경우
- 거래당사자가 본사와 현지법인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외국법인/개인의 현지 법인들인 경우
- 일방기업이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 타방기업의 무형 자산권 또는 지적 재산권을 이용하고, 해당 비용이 일정기간동안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일방기업에 의해 제조/ 거래 물품에 사용되는 원재료, 재료, 부자재 등 투입물품 등이 50% 이상 고정자산 감각상각 비용분 제외)타방기업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
- 일방기업에 의해서 판매되는 동종물품의 50% 이상이 타방기업에 의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제되는 경우

○ 정상가격의 정의

- 정상가격이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이들의 국내외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로서 특수 관계없는 자(독립 기업)간의 거래(비교대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함
- 이전가격과세는 통상적인 가격을 정확히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상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이런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당국이나 납세자 모두가 불가능하므로, 정상가격을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 조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임
- 여기서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라 함은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계약조건,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시장 및

경제여건 등의 측면에서 당해 특수 관계 거래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의미함

○ 정상가격의 결정

- 재화나 용역의 특성, 수행기능분석, 계약조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 거래건수 고려

○ 정상가격 산출방법

-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CUP)
- 재판매가격법(RPM)
- 원가가산법(CP)
- 비교가능이익방법(CPM)
- 이익분할법(PSM)

○ 적용원칙

- 거래조건에 적합하고, 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한 가장 충분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방법
- 정상가격의 범위(사분위값 사용)

○ 비교가능성 분석

- 재화나 용역의 특성
- 수행기능분석(기능, 위험, 자산)
 - *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 계약의 조건
- 경제적 여건

○ 특정경우에 있어서의 정상가격의 산출

- 확장분석
 -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 등으로 확장분석 Comparables수는 최소 5개



- 기간 간 수치 적용
최초 결정된 이전가격에 대해 5년간은 이자율, 인플레이션 등 경제지표를 적용한 이전가격 사용가능
- 과세당국이 세액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 불법 및 무효한 증빙, 근거 없는 자료기준으로 특수관계 거래가격 또는 이의 결정
 - 잘못된 제3자 거래 사용
 - 관계사 거래 명세서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 요청시 이전가격보고서 미제출
 - 세무서의 입증요청에 90일 이내에 입증 못하는 경우
- 과세당국의 세액 등 경정방법
 - 협력의무를 충실히 한 경우에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함
 - 협력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는 세무서의 데이터베이스 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협력의무
 - (정상가격원칙 준수) 미준수시 과소 신고 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 부과
 - (관계사 거래명세서 제출) 법인세 신고 시 제출의무 있고,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 (이전가격보고서 구비) 법인세 신고 시 자료구비의무, 세무서 요구 시 30일 이내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 최대 30일 추가 연장 가능

□ 이전가격과세 대응방안

1) 사전대응

○ 이전가격과세 가능성의 사전인지

- 사업 확장을 하는 동안 원재료, 제품의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나는 거래를 통하여 낮은 영업이익을 시현
- 수출판매 또는 임가공의 단순기능 수행하여 낮은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영업 손실 기록
- 관계사간 명확한 근거 없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무형자산을 사용(로열티지급)하면서 영업 손실 기록

○ 이전가격과세관련 협력의무 수행

- 연말 세무조정계산서에 유첨되는 이전가격거래 신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함
- 이전가격산정 보고서의 구비 및 세무서 요청 시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에 대한 정기적인 Update 및 가격산정근거를 문서화해야하며, 제3자와의 거래가격과 정기적으로 비교해서 거래가격을 조정할 것
- 세법 이외의 우즈베키스탄 내의 다른 기업관련 법률 의무 준수 여부 확인

○ 세무조사 전 업무 대응

- 연간 이전가격 연구보고서 및 기타자료는 연간 업데이트와 현재의 기준으로 작성할 것



- 이전가격 위험 자체 평가 수행 및 기존 논쟁사항에 대한 필요한 개선 사항을 반영
 - 세무당국에 의해 요청된 자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실시
- **조사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대응방법**
- 조사관에 대한 우호적인 응대, 자료제출시 성실한 협력
 - 자료제공으로 인하여 과세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파악
 - 적극적인 선정기준 및 comparables 제시
 - 이전가격전문 세무대리인에 용역 의뢰

우즈베키스탄의 조세제도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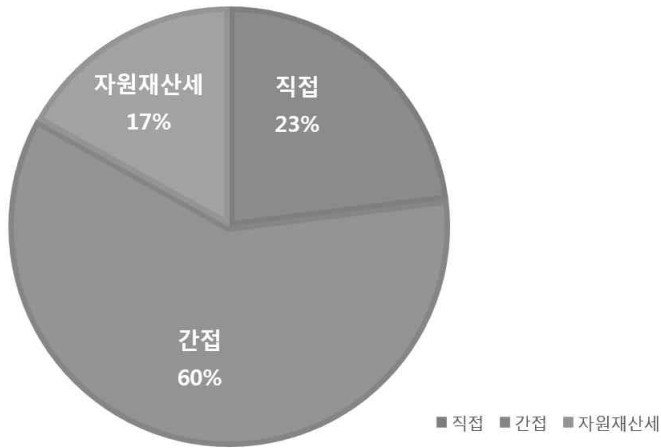
- 1. 일반현황 / 120
- 2. 법인세 / 123
- 3. 소득세 / 136
- 4. 부가가치세 / 144
- 5. 소비세 / 157
- 6. 기타 세목 / 160
- 7. 우즈베키스탄의 회계 / 180
- 8. 최신 개정사항 / 182
- 9. 기업인의 애로사항 / 192



1 일반현황

□ 세수

2018년 세수



○ 세수 62,229.5조원(2018년)

- 직접세 12,805.4조 원
 - 법인세 2,510.9조 원
 - 무역과 사업체 조달에 대한 기여 통합세 1,907.6조 원
 - 중소회사를 포함한 기여 통합세 2,100.5조 원
 - 사업활동유형별 고정세 1,077.6조 원
- 간접세 33,404.3조 원
 - 부가가치세 22,019.4조 원
 - 행사세 8,348.8조 원
 - 관세 1,415.3조 원
 - 가솔린디젤세 1,323.2조 원
 - 구독숫자 세 302.5조 원



- 자원과 재산세 9,714.5조 습
- 재산세 2,158.9조 습
- 토지세 1,266.6조 습
- 하층토세 6,203.1 조 습
- 초과이익세 1,367.7조 습
- 기타 세금 4,937.6조 습

□ 우즈베키스탄 세무행정

○ 근대적인 세무행정의 출범

- 1991년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하면서 근대적인 세무조직이 만들어짐
- 지금과 같은 세법형태를 갖춘 것은 2008년부터이고, 2016년 4월 25일에 2차 개정됨

□ 우즈베키스탄 국세청 조직

○ 조직현황

- 타슈켄트 본청(국세청) 위치함
 - * 홈페이지 주소 : <https://my.soliq.uz/>
 - * 소재지 : 타슈켄트, A, 카디 리 세인트 13a
13a, Abdulla Kadiri str., Tashkent, 100011 Republic of Uzbekistan
 - * 전화번호 : 244-97-16
- 본청에서 전체 세법적용과 관련된 세무행정 명령을 지휘함
- 12개의 지방청이 있고, 그 아래에 일선세무서가 존재함

○ 타슈켄트지방국세청

- Abay str.4, Shayhantohur district, Tashkent city. 100011. Uzbekistan
- 지방청장 : 카유모브 샤리프존 (전 정보화지원자문센터장)
- 직원현황 : 지방청 내 156명, 세무서 1,599명



○ 지역별 세무서

행정구역	주세무국	시 세무서	지방세무서	합계
칼라칼팍 자치공화국	1	1	14	16
안디잔주	1	2	14	17
부하라주	1	2	11	14
지작주	1	1	12	14
카쉬카다리야주	1	1	13	15
나보이주	1	2	8	11
나망간주	1	1	11	13
사마라칸트주	1	2	14	17
수르한다리야주	1	1	14	17
시르다리야주	1	1	14	16
타쉬켄트주	1	4	14	19
페르가나주	1	4	15	20
코레즘 주	1	1	10	12
타슈켄트 시	1		11	12
합계	14	25	169	208

○ 지역별 세무공무원 숫자

행정구역	주세무국	시 세무서	합계
칼라칼팍 자치공화국	88	525	613
안디잔주	91	782	873
부하라주	89	633	722
지작주	77	423	500
카쉬카다리야주	85	642	727
나보이주	77	368	445
나망간주	85	642	727
사마라칸트주	97	876	973
수르한다리야주	84	524	608
시르다리야주	81	422	503
타쉬켄트주	112	1,126	1,238
페르가나주	96	1,085	1,181
코레즘 주	84	585	669
타슈켄트 시	156	1,699	1,855
합계	1,302	10,344	11,646



□ 조세조약

○ 이중과세 제거를 위한 조세조약

- 이중과세조약을 현재 52개 국가와 체결 중임
- 이중과세조약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 법률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함
- 이중과세조약이 행사되기 전에 관련 있는 세무당국의 승인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원천세액면제를 위한 적용 권리를 가짐
- 아직까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의 이중과세조약에 근거한 세금 경감신청에 대하여 상당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음

2 법인세



□ 일반사항

○ 납세의무자

- 거주자, 고정사업장 있는 비거주자 법인
- 비영리법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님. 단, 과세소득 발생 시 납세의무 발생

○ 과세대상

- 국내 발생 이익,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비거주자의 경우 원천징수)

○ 과세기반

- 과세 가능한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을 뺀 금액, 손실 이월공제 가능



□ 총소득

○ 총소득의 구성

- 재화, 용역의 판매에 대한 소득
- 회계원칙에 근거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
- 소득 불포함 (16항목) : 실질적으로 소득이 아니거나 법 규정에 의해 받은 금액

(예시)

- 법정기금으로 받은 기부금
- 단순파트너십에서 지분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재산, 재산권)
- 재화, 용역의 판매에 대해 선급금으로 받은 금액(재산, 재산권)
- 소유권이전까지 법 규정에 의해 담보, 보증금 형태로 받은 금액(재산, 재산권)

○ 재화, 용역, 서비스판매에 대한 소득

- 부가서비스 포함, 부가세 · 소비세 · 가솔린/디젤/가스소비세 제외
- 중개활동 소득의 경우 받은 보수(대가)
- 출판사, 편집사의 경우 신문, 잡지 판매소득에는 광고수익도 포함
-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이전에 대한 소득, 재산 임대소득, 재산 로열티 소득 등이 이들 재화의 판매가를 초과하는 경우 이 금액은 서비스 판매소득으로 간주, 단 비영리단체는 예외.
- 장기계약건 소득은 현 과세기간에 실질적으로 진행된 용역의 비율에 따라 소득을 계산함(주로 건설계약)

○ 소득 조정 요인

- 전체 혹은 부분 반품
- 계약 조건 변경



- 할인

- 반품, 철회

* 위의 조정은 1년 이내 해야 하며, 보증기간이 있는 경우 보증기간 내에 해야 함
또한 증빙서류 있어야 함. 위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조정됨

○ 기타 소득

앞에 언급되지 않은 소득, 상품·용역 판매/제조 이외의 소득

- 고정자산, 기타자산 처분으로 인한 소득

- 운영리스 제공으로 인한 수입

- 금융리스 제공으로 인한 수입

- 무상으로 받은 재산, 재산에 대한 권리

- 재고자산으로 인한 부수 수입

- 현 신고기간에 알게 된 전년도 수입

- 채무 면제 이익

- 배당 청구권으로 받은 이익

- 이미 비용이나 손실로 인정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금

- 농장에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

- 공동활동 참여로 인한 수입

- 채무자로 부터 받은 변상금

- 환율 차이로 인한 소득

- 배당금과 이자

- 로열티, 사용료

- 기타 직접적으로 생산, 제조, 판매와 관련없는 소득

□ 비용

○ 개요

- 증빙서류 필수,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함



- 손실 인정은 회계정책이나 법에 의해 인정된 것에 한함
- 비용이 실제 발생한 과세기간에 공제가능하고 한번만 공제가능함
- 외화로 표시된 비용은 원화로 환산 (회계규정 준수)

○ 물질적 비용

- 원재료, 구성품, 중간재
- 포장재, 제조/판매재화 준비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수리를 위한 여유 부품
-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재고자산, 내부 물품들
- 운송이나 생산 등에 사용한 연료
- 토지개간 비용, 기타 환경보호 비용
- 법 규정 한도 내 물 사용비
- 운송 중이나 생산 중에 발생한 기계적인 손실(법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인정)
- 법에 규정된 자연적인 손실 범위 한도 내에서 저장, 운송 중 재고자산의 손실, 손해 인정

* 환불되는 포장재가 제품에 포함될 경우 그 제품의 취득가에서 포장재가격은 차감함.
환불여부는 계약서를 보고 판단함

○ 인건비

- 공식적인 양식을 사용하고 봉급체계 시스템에 따라 실제 수행한 일에 대해 대가로 받은 임금.
- 학위 수당
- 법인의 경영부서, 운영지원부서에 근무하는 부서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 성과급
 - 연간 성과에 대한 보상금
 - 지방법에서 규정된 보너스
 - 전문적인 기술, 멘토링에 대한 대가지불



- 상급자 수당
 - 합리적 제안에 대한 대가지불
 - 노동과 관련 없는 일시적인 보너스
 - 휴가비와 물질적 원조
- 보상금
 -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한 대가
 - 위험수당
 - 야간근무수당
 - 대체근무수당
 - 출장수당
 - 교대근무수당
 - 채굴수당
 -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지불금
 - 법정휴가(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금으로 보상),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법정휴가, 교육훈련을 위한 법정휴가
 - 강제휴가에 대한 지불금
 - 헌혈한 근로자에게 주는 휴가
 - 공공의무 수행을 위한 노동에 대한 대가
 - 근로자(고용인)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쉬는 시간에 대한 지불금
 - 일시적 장애수당
 - 건강검진이나 육아시간에 대한 지불금
 - 청년학비보조수당
 - 법에 규정된 장애수당
- 감가상각비
- 회계원칙에 의해 상각이 가능한 자산은 고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눔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

1. 토지부지, 사용가능한 천연자원(물, 심토 등)
2. 생산적인 가축
3. 박물관 가치(박물관 품목들)
4. 고정자산
5. 조각 기념물
6. 자동차 도로, 보도, 공공정원, 주정부 관할 공공시설

<고정자산 정률법 분류>

1. 건축물 (5%)
 - 건축물, 석유정/가스정, 석유가스저장소, 수로관, 다리, 댐, 강과바다의 정박시설, 철길, 탱크, 농장내부 관개망, 스포츠/레크레이션 시설, 온실 등
2. 이동장치(8%)
 - 통신 장치, 전력 라인, 내부 가스 파이프라인, 수도/하수/열 네트워크 등
3. 동력기계 및 장비(8%)
 - 열기술장비, 터빈장비, 가스터빈플랜트, 전기모터, 디젤제너레이터 등
4. 운송수단을 제외한 가동장비와 활동유형별 장비(15%)
 - 모든 종류의 경제활동에 관한 기계 및 장비
 - 농업용 트랙터, 기계, 장비
 - 데이터전송 디지털 전자장비, 위성장비, 휴대통신장비, 영화스튜디오 장비 등
5. 운송 수단
 - 철도 차량, 배, 항공기 → 8%
 - 차량, 트랙터 → 20%
 - 시 교통수단, 특정화된 운반 차량 → 10%
 - 기타 운송수단 → 20%



6. 컴퓨터, 주변장비, 데이터처리장비, 복사기 (20%)

7. 위에 속하지 않는 고정자산

- 지속적인 농장(조림지) → 10%
- 그 외 → 15%

* 감가상각률을 적용함에 있어 위에 각 자산마다 정해진 상기 상각률을 초과할 수는 없음, 조세목적상 위에 정해진 상각률보다 더 낮은 상각률을 적용할 수 있다.

○ 기타 비용

- 납세자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 법인이나 개인이 수행하는 용역, 서비스
- 고정자산 및 기타자산 유지비용
- 임대비용
- 허가, 라이선스, 인가를 받기 위한 비용
- 판매시장 연구비용
- 작업복 세탁비용, 내부 도구들 수리비용
- 광고비용
- 공식 행사 비용
- 보증기간 동안의 수리, 유지비용
- 이동전화기, 우편물서비스 이용비용
- 사업상 출장비용 (증빙서류 필수)
- 훈령에 의해 결정된 보상금 지불비용
- 외국 전문가 초대 비용
- 회계감사 비용, 컨설팅 비용, 정보서비스이용 비용, 회계기록 유지 저장 비용
- 은행서비스, 중앙유가증권보관소, 증권시장 전문가서비스 이용비용
- 인력 훈련, 재훈련 비용, 업무능력 향상 교육비용
- 각종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세금
- 법에 규정되어 납세자가 사업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기부금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비용, 안전장비의 제공비용
-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베이스 이용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 등 총 63개 조세법에 나열됨

○ 이월공제 가능한 비용

-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생한 당해 연도에 소득에서 공제가능하지만 회계 규정에 의해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 공제가능한 비용은 다음과 같음
 1.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한 비용
 2. 모든 종류의 장비 와 기계 설치를 위한 복잡한 테스트 비용
 3.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기업의 인력 모집 및 훈련비용
 4. 회계와 세법의 감가상각방법 차이로 인한 세법상 감가상각비용을 초과한 비용
- 부실채권은 그것이 대손으로 확정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공제가 불가능한 비용

- 통상적인 물질적 가치를 초과한 비용, 손실
-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한 비용
- 고용인에게 제공한 물질적 혜택 비용
- 법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한 현장 수당, 개인 차량 이용비용
- 연금 이자
-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지불한 산업재해 보상금
- 법정 한도를 초과한 환경오염, 물오염에 대한 벌금
- 계약서상의 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연체 이자
- 사업계약, 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가산세, 벌금



□ 금융기관 법인세 특징

○ 금융기관 서비스판매에 대한 소득

- 대출금에 대해 받는 이자
- 금융업무 수수료
- 고객 현금 서비스, 문서 인증 및 지불, 펀드모집으로 인한 소득
- 통화 교환(환전업무)으로 인한 소득
- 제3자 보증 제공에 대한 보수
- 귀중품, 중요문서 저장, 보관에 대한 수수료
- 현금 운반, 귀중품, 문서 운반, 배송 수수료
- 포페이팅, 팩토링 실행 수수료
- 은행 전문적인 활동,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기타 수수료

○ 금융기관의 공제가능한 비용

- 현금, 귀중품 저장 보관비용
- 고객이 예치한 계좌로 지불하는 이자비용
- 중앙은행에서 정한 위험대비 보관금

□ 보험회사 법인세 특징

○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수입

- 보험료 수입
- 보험에 대한 커미션, 재보험계약에 따른 이익에 대한 보너스
- 예치된 보험금에 대한 이자수익
- 보험대리인, 브로커, 중개인에게 제공한 서비스 수수료
-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 기타 보험과 관련된 활동으로 받은 수수료

○ **보험회사에서 인정되는 비용**

- 재보험 계약에 들어가는 비용
- (재)보험 의무사항 이행에 들어가는 비용
- 보험사고로 인해 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지불해야 되는 지불금
- 보험기관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사건(사고) 예비 기금
- 보험활동과 관련하여 제3자 법인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

□ **증권시장 전문가 소득세 특징**

○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득**

- 주식(유가증권) 판매 서비스 (부실 증권은 제외)
- 유가증권시장에서 중개서비스 제공
- 고객 기금을 사용하여 이익창출을 하고 받은 보수
- 증권시장, 증권 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
- 투자자산 운영 수수료
- 컨설팅 수수료
- 기타 전문적인 활동에 대한 대가

○ **비용**

- 라이선스를 가진 자에게 지불하는 기부금형태의 비용
- 트레이딩 플레이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
- 전자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 **비거주자 소득**

○ **고정사업장을 통한 비거주자의 소득**

- 과세 가능한 소득이 이 법에서 인정되는 비용합계의 7% 이상이어야 한다.



-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소득
 -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비용 인정(발생장소 국내 국외 무관)
 - 고정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법인이 공제받을 수 없는 비용
 - 국내 영토에서 발생하지 않은 행정비용
 - 문서로 미확인되는 비용
 - 원천징수된 세금과 상계
-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
- 비용공제 불가
 - 비거주자의 투자자금 대여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
 - 배당, 이자, 단순파트너십 참가수입, 로열티, 임대 및 전대소득, 보험금 소득, 운송수단 제공에 따른 소득, 국제운송 관련 소득, 무상으로 받은 자산, 기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 서비스
 -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함
 - 원천징수율은 중앙은행에서 결정함
 - 소득 면제 혹은 감소 신청을 하면 주 세무당국은 30일 이내 결정을 함
 - 원천징수된 세금과 지불하여야 할 세금은 상계가 가능하며 환급발생시 환급신청 가능
 - 국제 조약에 따른 세금감면 면제 입증시 원천징수된 세금 환급
 - 거주자, 고정사업장 있는 비거주자는 지불한 세금을 12개월 내에 환급 받을 권리가 있음
 - 세무당국은 외국어로 되어있는 서류를 내국어로 번역 요구 할 수 있음
 - 세무당국은 환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
 - 문서에서 확정된 기간 동안 거주자로 간주 가능
- 비거주자의 재산 판매 소득
- 문서에 근거한 세금계산 (취득가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

-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모두 지불한 후에 재산 등록 가능
-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대금 지불시 법에 규정된 비율대로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함
- 과다 원천징수되었을 경우 환급 가능함(원천징수 영수증, 거래증명서 필요)

□ 단순파트너쉽 이자배당소득

○ 배당, 이자소득의 특징

-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 등으로 인한 소득은 세금 면제
-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된 배당, 이자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

○ 단순 파트너쉽 과세

- 단순 파트너쉽 참가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총소득에 포함되고 법인세로 과세됨
- 파트너쉽 참가 대가로 지불한 재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은 반영하지 않음

□ 법인세 혜택 및 법인세율

○ 혜택

- 형사기관, 정부안전관련기관, 시민 개인연금을 관리하는 인민은행(면세)
- 대중교통수단 제공 업체, 문화재보존 업체, 장애인 병자를 위한 의료장비 생산 업체(면세)
- 자기주식 판매(면세)
- 전체 고용인원의 3%이상 장애인을 고용한 법인(장애인 고용 1명당 법인세 1%씩 감면)



○ 과세소득의 감소

- 총 과세소득의 2% 이내의 환경, 건강, 복지, 스포츠, 교육 등을 위한 기부금
- 총 과세소득의 30% 이내의 현대화,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기금, 비용 발생연도부터 5년 이내에 감소혜택 적용가능, 3년 이내 관련 재산·기계를 팔면 혜택 취소
- 고용인에게 제공하는 내 집 마련 자금
- 종교단체, 공공기관 소유 기업의 이익

○ 비거주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 배당과 이자, 보험금 (10%)
- 국제통신, 국제운송(항공기) (6%)
- 그 외 비거주자 소득 (20%)

○ 손실의 이전

- 법인에서 발생한 손실은 향후 5년간 이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연속된 공제받는 과세기간의 과세소득의 50%이내로 공제가능
- 손실의 이월공제로 환급이 발생할 수는 없다.
- 재합병할 경우 결손금 인계가 가능

□ 신고 및 납부

○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 과세기간 (역년) : 1.1 ~ 12.31.
- 신고기간 : 매분기



- 신고절차
 - 분기별 다음 25일까지 고정사업장 혹은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 연말까지 사업 종료(폐업)시 실제 종료일로부터 한달 이내 폐업관련 서류 제출

- 납부 절차
 - 분기별로 계산된 법인세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10일까지 납부

- 유보세금의 계산절차
 - 비거주자로부터 원천징수 된 세금에 대한 증빙서 및 계산서를 제출

- 세금 상계
 - 국제조약에 근거한 상계, 지불증빙서 필요

3 소득세



□ 일반사항

- 납세의무자
 -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

- 비거주자 개인 소득세 특징
 -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 과세대상

- 개인소득

○ 과세기초

- 총소득 - 면제소득(비용공제 ×), 외화의 경우 실제 수령한 날의 중앙은행 환율에 의해 국내통화로 환산

□ 종합소득

○ 개인소득세의 구성

- 노동대가 형태, 재산소득, 물질적 혜택, 기타 소득
-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노동법에 의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지급받은 금액, 혜택
 - 무역연합위원회의 물질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금
 - 지급받은 통근 비용
 - 축하금, 휴양비로 받은 금액
 - 유니폼, 공식의류, 일에 필요한 신발 등 지원물품
 - 다른 지역 출장비로 받은 금액
 - 각종 보상금(상해·질병·유족 보상금 등)
 - 현장수당, 교육비, 장기생명보험료, 젊은 직원 주택구입비, 직원역량 향상위한 비용

○ 임금

- 노동계약에 의해 받은 노동대가(현금, 그 외 형태의 대가)
- 학위수당, 명예수당, 성과급, 급여



○ **격려금, 성과금**

- 연간 일에 대한 보상금, 보너스 형태의 성과금, 전문적기술 멘토링 수당, 상급자수당
- 제안에 대한 성과금, 일시적인 보너스

○ **보상금**

- (사막 같은)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수당
- 위험 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초과근무 수당, 복수장소 근무수당
- 법에 규정된 범위내의 보조수당
- 교통환경에 따라 제공되는 교통편의 혜택
- 지하에서 근무하는 추가수당
- 현장수당, 출장경비

○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보수(법인세 파트와 유사)**

- 법에 의한 지불금
- 연간 기본 휴가(유급)
- 열악한 근무환경 보상휴가, 교육을 위한 휴가
- 12살 이하 자녀(장애인은 16살 이하) 돌봄 휴가, 혈액 기부를 위한 휴가
- 공공의무의 수행을 위한 휴가 등

○ **재산 소득**

- 배당·이자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 특허권, 산업재산권, 라이선스로 인한 소득
- 로열티

○ **물질적 혜택 형태의 소득**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치
- 직원에게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물품의 가격 차이분



- 요양원 치료 비용, 질병 치료 비용
- 채무면제액

○ 기타 소득

- 장학금, 정부기관이나 환경단체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위자료
- 가축판매소득, 면화판매소득
- 경쟁에서 받은 금전적 상품
- 미술, 문학 등 창조적인 작업으로 받은 소득
-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받은 상금
- 보험 보상액

□ 혜택

○ 비과세소득

- 긴급상황과 관련한 물질적 지원(최저임금의 12배 한도)
- 레크레이션 활동비
- 직원과 그 가족의 의료비(증빙서류 필요)
- 한도 내에서 국외에서 외국화폐로 받은 임금
- 일시적 작업에 대한 보수
- 정부기관, 대통령령, 훈령에 의해 받은 포상
- 국제 경기 우승 상금
- 헌혈에 대한 보상금
- 가축과 가축생산물 판매 소득
- 국외 국내 경쟁에서 받은 상금
- 퇴직금, 유족보상금(최저임금의 6배 한도)
- 법정기금에 대한 배당금
- 가족 간병 수당



- 위자료
- 주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 공동주거에 대한 보조금
- 주 연금
- 주주 참여자에 지불되는 소득
- 26세 이하 수업비, 학비
- 특수관계자에 주식 무상이전
- 면화 재배 수입

○ 면세소득

- 영사관, 대사관 직원들의 소득
- 현역군인
- 헌법기관 판사
- 노동영웅 등 영웅과 관련된 상금
- 전쟁참가자, 장애인
- 현역군인의 미망인, 유족연금

□ 세율 및 과세기간

○ 소득종류에 따른 세율

- 최소세율 적용
 - 고산지대, 사막 등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받은 수당
 - 일시적인 농가 용역으로 받은 소득
 - 대여자산으로 인한 소득
 - 무상으로 받은 주식
 - 부동산 판매 수입



○ 비거주자 소득세율(공제×)

- 배당, 이자소득 (10%)
- 국제운송수단 제공 서비스로 인한 소득(6%)
- 그 외(20%)

○ 과세기간, 신고기간

- 과세기간 : 1.1~12.31
- 신고기간(회계기간) : 매분기

□ 지불원천에 따른 소득세

○ 지불원천에 따른 소득세

- 보수형태로 지불하는 금액, 물질적 혜택, 재산소득
-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개인에게 주는 물질적 혜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개인이 소득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함

○ 대리인에 의한 원천징수

- 소득을 지불하는 자는 소득을 지불할 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금부과

○ 원천징수 계산 절차

- 과세대상 및 확정된 세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월 원천징수
- 소득세는 개인의 연금계정에 납부하는 금액만큼 감액
- 개인이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유한 자료를 근거로 주세무당국은 재계산을 함(주사업장이외의 소득 합해서 재계산)
- 이전 근무내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납세자 식별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최대금액으로 원천징수 됨
- 종업원에게 지급된 총 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30일 이내에 법인이 등록된 주세무당국에 신고



○ 신고서 제출 절차

- 과세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관할 주세무서에 주된 근무장소 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제출(다음 사항 포함되어야 함)
 - 납세자 식별번호, 성명, 주소, 세무대리인 번호 등
- 총 합산소득에 대하여 신고
신고기간 다음달 25일까지 누적된 원천징수세액과 실제 세액에 대해 신고

○ 납부 절차

- 계산된 소득세는 납부대리인에 의해 예산으로 지불되어짐
- 월말로부터 5일 이내에 법인의 은행에서 지불되는데, 잔액이 부족한 경우 잔액에 비례한 금액이 지불됨

□ 소득신고의 근거

○ 신고서에 근거한 과세

- 원천징수되지 않은 부동산 수익, 로열티, 주사업장 외에서 받은 물질적 보수,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 등이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함

○ 로열티

- 로열티를 받는 개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가능
-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관련 비용 인정되지만 총수입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비용 예시 : 창작활동에 필요한 건물 및 건물임대비용, 재료 취득 비용 등

○ 개인 연간총소득 신고

- 서면 신고(주사업장 소득 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 신고서 포함 사항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시민권, 납세자의 주소, 납세자 식별 번호, 소득원, 유형별 연간소득, 소득관련 비용, 혜택사항, 최종 납부할 세액
 - 우편이나 전자적 형태로 제출 가능
 - 과소신고 시 납부기한 전까지 자진 수정해야함, 납부기한 후는 벌금 부과
 - 주세무당국이 신고서 오류를 발견한 날은 납세자가 그에 대해 서면 통지서를 받은 날임
- 소득 신고서 제출 절차
- 신고기한의 다음해 4.1일까지 제출
 - 당해연도 4.1일 이전에 거주자가 된 외국인은 이전연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시적으로 일한 외국인은 해당 과세기간동안 실제로 일한 기간만큼 신고서를 작성하고 출국 한달 전까지 과세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득세 납부 절차는 소득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결정됨
 -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대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주세무당국이 결정하여 고지
- 납부 절차
- 다음해 6.1일까지 납부
 - 국외 은행계좌에서 납부할 경우 소득세 납부일의 중앙은행 환율로 재계산하여 납부됨
 - 월세를 받는 개인은 월세 수령일 다음달 5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에 실제 소득에 따라 재계산됨(과다납부한 금액은 다음해 6.1일까지 환급되어짐)
 - 소득세 납부일은 은행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날,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한 날짜임



○ 외국인 소득 과세 특징

- 국제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가 면제되거나 혜택받을 수 있음
-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불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 있음
- 국내 증권시장의 결제 및 정보센터는 세무기관으로 간주됨

○ 비거주자 면세 절차

- 개인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 이중과세방지 국제조세조약에 근거
- 세무당국은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하여 결과 통지

○ 외국 납부세액 공제

- 국외 세무당국에 납부한 증명서, 기타 납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필요

4 부가가치세



□ 납세자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매출액이 발생한 법인
- 비거주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대리납부)
- 물품을 수입하는 법인 또는 개인
- 동지(파트너) : 단순 파트너십 업무를 위임받은 법인(수탁자)



- 과세대상 : 물품 판매 거래, 수입거래
- 물품 판매 거래
 - 재산권의 이전, 상품 및 기타자산의 선적, 재산의 양도
 - 독립된 하부조직과의 자산의 판매, 이전 거래
 - 운영리스에서 부동산 제공
 - 제조품의 이전
 - * 부가세 대상거래가 아닌 것
 - 자기 공급
 - 같은 조직 내부 거래
 - 반품 가능한 용기
 - 단순 파트너십 참가지분 거래
 - 은행, 보험회사 자사로의 재산 이전
 - 신탁관리 종료시 소유주에게 재산 양도 거래
 - 무상 보증기간 내의 유지·보수 서비스
- 과세 및 비과세 거래의 결정
 - 일반 매출 거래 → 과세
 - 이 법 208조, 209조, 210조에 의해 비과세
 - 비거주자가 국내 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 서비스 매출액은 수령자인 국내 거주자의 과세 대상 매출액에 포함시켜야 함
- 과세 대상 수입품
 - 법 211조 면세품을 제외한 수입품
- 재화(용역)의 판매 장소
 - 우즈베키스탄 영토 내의 거래
 - 선적 당시 우즈베키스탄 영토 내에 있었던 재화(용역)
- 판매 거래의 완료 일자

□ 공급시기

- 재화의 공급시기 : 선적(이전)일
- 담보 된 재산의 공급 : 담보물의 소유권 이전일
- 재화의 양도, 용역의 수행, 입금(법인의 사업 활동 관련 유무 불문) : 재화의 양도일, 용역의 제공일, 송장 또는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의 제출일
- 재화의 반품 : 반품이 확정 된 날
 - * 계약서에 명시 된 기간 내의 반품일 경우
- 용역의 공급 시기 : 송장의 발행일 또는 확인 가능 한 서류의 발행일
- 재화 또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송장 발행일
 - * 계속적 공급이란, 계약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
- 비거주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을 때 : 송장 수령일

□ 과세가액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
 - 무상으로 재화를 이전 또는 용역의 제공 : 제도가격 또는 취득가액
 -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재화를 수출하면서 외화로 거래하는 경우 : 실제 해외 판매 금액
 - 고객이 제공한 자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 : 가공 용역 가액
 - * 소비세 과세대상일 경우 소비세 포함
 - 수입 상품의 판매 : 상품의 판매가격
 - * 과세가액은 수입 시의 부가가치세 금액보다 낮을 수 없음
 - * 소비세 과세대상 재화는 소비세 포함
 - 정부가 가격(관세)을 결정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 확정된 가격(관세 금액)
 - 중개서비스 : 수수료(이자) + 추가경비



- 비거주자가 위임한 중개서비스 : 판매 물품의 가격
 - *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액보다 낮을 수 없음
- 정부의 가격규제 상품 : 판매가격 - 구입가격
- 휘발유, 디젤 연료, 가스 : 판매금액(소비세 제외)

○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액 외

- 건설, 설치, 수리, 시운전, 설계 및 연구 : 계약서에 기재된 용역 가액
 - * 고객이 원재료 공급 시, 원재료의 가격은 과세가액에서 제외
- 고정자산과 무형자산의 처분 : 판매가액 - 장부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부동산을 금융리스로 이전 : 사용수익이 끝난 자산의 가치 - 장부가액 (부가가치세 포함)
- 제조한 자산을 리스(임대) : 리스자산의 원가
 - * 리스자산의 원가 : 리스 제공자의 회계 규정에 따른 장부상의 금액
- 건설 중인 자산의 매각 : 판매가액 - 장부가액(부가가치세 포함)
- 신용기구가 채무 상환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판매 : 판매가액 - 담보된 부채(부가가치세 포함)
- 직원에게 티켓, 시즌권, 상품권(투어)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타 티켓의 판매 : 판매가격(부가가치세 포함) - 구매가격
- 부가가치세가 상계되지 않은 부동산의 판매 : 처분가액 - 장부가액(부가가치세 포함)
- 화물 운송 서비스 : 서비스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수수료
- 담보물의 양도 : 질권자가 판매한 자산의 금액
 - * 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용금액보다 적을 수 없음.
- 고정자산, 무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의 저당권 : 판매가격 - 장부가액 (부가가치세 포함)
- 반품 가능한 상품이 지정기간 내 반품되지 않은 경우 : 계약서상 매출액 (부가가치세 포함)



□ 과세가액의 조정

- 상품의 전부 또는 부분 반품
- 거래 조건의 변경
- 가격변동, 구매자에 의한 할인
- 수행된 작업, 제공된 서비스의 취소
 - * 과세가액의 조정은 보증 기간이 설정된 재화(용역)에 대하여 1년 이내
 - * 서류로 확인되는 것에 한함
 - * 특성 사건이 발생한 조세기간 내에 조정

□ 과세대상 수입물품

관세와 소비세는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됨

□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서비스에 대한 과세특례

- 저작물, 서비스 :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판매금액
- 지불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매출일의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의 환율로 재계산
 - * 별도로 열거된 저작물, 서비스가 저작물인 경우 위 내용 적용 안 됨.

□ 면세

- 1) 정부 수수료, 특허료
- 2) 유치원 교육기관
- 3) 환자와 노인 돌보기 서비스
- 4) 장례 및 묘지 관련, 종교단체의 판매 및 예식
- 5) 치골용 장비, 정형외과 보철, 장애인용 장비 및 수리·유지를 위한 서비스
- 6) 의료기관의 의료 산업 워크숍 제품
- 7) 우표(수령 우표 제외), 카트, 봉투



- 8) 연금 및 급여 지불을 위한 통신 서비스
- 9)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 및 혁신 작업
- 10) 도시철도 서비스, 철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교외 교통 여객운송서비스
- 11) 교육서비스(고등, 중등, 전문 2차, 직업 교육 기관 포함)
- 12) 허가 된 귀금속
- 13) 의약품 및 수의학, 의료 및 수 의약품
- 14) 우즈베키스탄 공함, 항공 운항과 항공기 정비서비스
- 15) 요양소, 건강휴양지 및 보건서비스, 관광 및 여행, 체육 문화 및 스포츠 기관 서비스
 - 건강휴양지 및 보건서비스 : 리조트, 클리닉, 진료소, 기숙사, 주택, 아동 휴양캠프, 기타 레크레이션 사업을 포함함
 - 관광 및 여행 : 계약서에 포함된 운송, 숙박, 식사, 견학, 문화, 스포츠 및 기타서비스 포함
 - 체육 문화 및 스포츠 기관 서비스 : 스포츠 대회,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이벤트, 스포츠 단체 및 학교에서 개최하는 행사,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스포츠 및 기술 장비, 일반 체육
- 16) 국가 재산의 사유화
 - * 2003.12.25. 삭제
- 17) 지질학적 및 지형학적 연구
- 18) 인쇄물, 인쇄 및 출판 서비스
- 19) 텔레비전 및 라디오 이와 과년 된 제품 및 서비스, 우즈베키스탄 국립 정보원
- 20) 수출 물품의 운송, 선적, 하역 서비스
 - * 2009.12.31. 삭제
- 21) 국제조약 따른 대출 및 보조금을 통해 법인이 구매한 물품 (업무 및 서비스)

- 22) 주택 유지보수 및 수리
- 23) 환경 영향 평가 서비스
- 24) 언어 교육 및 기록 서비스
- 25) 농산물 생산
- 26) 고정자산, 무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예금 또는 주식 분담금의 법정기금 이전
 - * 2003.12.25. 삭제
- 27) 국가 예비 목록의 갱신
- 28) 통신 검색 시스템의 기술적 수단,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서비스
- 29) 국가 재산 관리를 위한 투자자와 투자 의무로 이전 된 재산
- 30) 도서, 학교 교육 용품 및 시각 보조기구, 의약품 및 의약품 도매 판매
 - * 2009.12.31. 삭제
- 31) 임대 서비스
- 32) 미디어 및 서적 배달 서비스
- 33) 상업 은행의 부동산 건설(국내 자금 사용)

□ 면세되는 금융서비스

- 1) 대출, 대출이자, 보증, 보증에 대한 이자 징수
- 2) 예금, 법인 및 개인의 계좌 개설 및 유지
- 3) 이체, 사채, 수표 및 채권 회수
- 4) 국내 화폐 및 외화의 거래(지불 수단으로 사용 된 것 제외)
- 5) 법인 및 개인의 유가 증권 계좌 개설 및 유지
- 6) 증권(주식, 채권 및 기타 증권 포함)
 - * 증권 거래는 유가 증권의 저장, 권리의 기록, 이전 및 등록부, 거래 조작을 포함함 (단, 생산을 위한 서비스는 제외된다)



- 7) 법인의 법정 기금에 증권, 지분의 판매
- 8) 청산 절차
- 9) 신용장 개설
- 10) 기금 전환을 위한 운영
- 11) 외환 거래
- 12) 현금 운용
- 13) 임대 약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임대인의 소득 비율에 따른다)
- 14) 몰수 및 인수
- 15) 부동산에 의한 단기 대출
- 16) 연금 제도의 전환
- 17) 은행에서 제공하는 원격 유지 보수 서비스

□ 면세되는 보험서비스

1) 보험서비스 제공자

- 보험, 공동 보험 및 재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료
- 재보험으로 이전 된 계약에 따른 수수료 및 상여금
- 보험대리인, 중개인, 감사원 및 기타 전문가의 서비스 제공 수수료
- 재보험사의 보험료 분배금 상환
- 제 3자의 대위변제 청구에 따른 소득
- 보험 계리사, 보조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소득
- 재보험사에게 양도 된 이자
- 생명 보험 계약에 대한 차입금으로 인한 소득
- 보험사(재보험사 포함)의 보험금의 투자 활동으로 인한 수입
- 법령에 따라 피보험자의 청구권 실현으로 발생한 소득
- 조기 종결에 따른 재보험 계약의 보험료 일부 상환액



2) 보험 계약자

- 예방 조치를 위한 자금
- 보험 계약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자금
- 보험 계약에 따른 자금

□ 면세되는 수입물품

- 1) 개인이 수입 한 관세법 상의 면세품
- 2) 외교 공관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거주하는 가족구성원의 사용 포함)
- 3) 인도주의적 원조로 수입
- 4) 자선 목적으로 수입 된 물품(정부, 국제기구를 통한 기술 지원 포함)
- 5) 국제조약에 따라 차입 또는 보조금을 통해 수입 된 물품
- 6) 의약품, 수의학 의약품, 의료 및 수의학 제품생산을 위해 수입 된 원재료
*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는 수입 기성 의약품 및 수 의약품에는 적용 불가
- 7) 국가 재산 관리를 위해 협정에 따라 수입되는 재산
- 8) 통신 사업자 및 검색 시스템의 기술적 수단
* 국가 또는 특별 기관에 의한 승인 필요
- 9) 목재

□ 영세율

- 1) 외화 획득을 위한 제품 수출(귀금속 제외)
-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서 수출하여야 함



- 수출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 수출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 계약서
- 세관 신고서
- 대리인을 통해 수출용으로 물품 판매 시 제출 서류
 - 위임장 및 계약서 사본
 - 수출 통관 신고서 사본

2) 외교관 등에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외국 공관에 공적사용을 위해 판매 된 재화 또는 용역
- 외교관 및 행정 인력,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을 포함
- 영구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도 호혜주의 원칙에 의해 영세율 적용

3) 관세법에 따라 수입 된 물품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제품

4) 국제운송 서비스

- 외국인과의 직접 계약 또는 상품 운송을 위한 국제 협정이 있는 경우
- 출발 또는 도착 지점이 우즈베키스탄 국외일 것

5) 공공서비스

- 물, 하수도, 위생, 에너지의 공급

□ 부가가치세의 상계

○ 상계의 요건

- 1) 재화(용역)의 구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하여야 함
 - 상품(용역)은 영세율을 포함한 과세대상이 해당 됨
- 2) 송장의 발급



3) 재화의 수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것

- 관세가 면세되는 경우도 포함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경우, 은행의 송금확인서 첨부

- * 대리인에게 위임한 영세율 수출의 경우, 대리인이 수령한 외환 수입 금액의 비율로 상계
- * 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원재료의 유지보수를 제공하는 것도 상계의 대상
- * 비거주자가 수입한 재화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동안 판매 된 제품의 비율로 상계
- * 상계의 대상 :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법인
-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도 상계 가능
- * 임대, 지적 재산의 사용권 부여는 용역으로 간주

○ 상계세액의 재계산

- 1)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 2) 승인 범위를 초과하는 물적 자원의 손실
- 3) 승인된 소비율을 초과하는 열에너지
- 4) 과세자가 비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상계 받은 재고자산과 완제품
- 5)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의 변경

○ 부가가치세 상계 대상이 아닌 것

- 1) 고정자산, 무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금융리스로 이전한 자산
- 2)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아닌 법인이 구매하는 재화(용역, 저작물)
- 3) 면세 재화(용역)를 생산하는 법인
- 4) 우즈베키스탄 영토 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재화
- 5) 무상으로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
- 6) 공제되지 않는 경비에 사용되는 재화의 구입

□ 세금계산서

1) 필수 기재사항

- 날짜와 일련번호



- 선적 서류 또는 계약서 날짜 및 번호
- 성명, 주소, 사업자번호 및 매입자 성명, 사업자번호
- 판매 상품 및 용역과 단가
- 수량
- 관세 금액
- 소비세 세율 및 금액
- 부가가치세 세율 및 금액
 - * 세금계산서는 전자 또는 종이의 형태 가능

2)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예외

- 승객 수송 서비스
- 금전 등록기 또는 영수증 제공 시
- 수출입 물품의 등록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재산의 양도
 - * 별도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로 규정 된 것 제외
- 개인의 금융거래
- 양수인에 대한 보험서비스
 - * 재화 인도, 작업 수행,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 영수증은 송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면세거래는 송장에 부가가치세를 표시하지 않음
 -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일에 발행
 - 단, 과세되는 전기, 물, 가스, 통신, 철도, 은행, 계속적 공급은 월합 세금계산서 발행
 - *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국내 통화로 표시
 - * 외화거래의 경우 중앙은행의 환율로 환산하여 표시

3) 수정세금계산서

-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발행
-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
 - 수정 세금계산서의 일련번호 및 수정일
 - 최초 세금계산서의 일련번호와 날짜



- 과세표준의 조정금액
- 부가가치세의 조정금액
 - *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 의무 있음

□ 과세기간

- 과세 기간은 1역년
- 소기업 및 중소기업 : 분기별
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 : 매 월

□ 세금계산서 제출

- 소기업 및 중소기업 :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25일
- 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 : 매월 말의 다음 25일
 - * 1역년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 시 연말까지 제출 가능
 -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등록해야함

□ 세액의 납부

- 소기업 및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
- 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 : 매월말의 다음 25일
재무제표 제출 시 여말까지 납부일 연장
-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 관세법에 의한 납부마감일

□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 별도 규정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에 포함



- 환급액이 납부 세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
- 환급 순서
 - 1)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충당
 - 2) 다른 세목의 세금에 충당
 - 3) 납세자의 계좌로 송금
 - 상계 후의 잔액은 법정 이율에 따라 환급가산금이 계산됨
 - 환급 신청서는 초과 납부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 후 12월 이내 제출

□ 부가가치세 환급

- 종이 또는 전자 형태의 환급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한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충당
- 법인의 환급 신청 시 제출서류
 - 1) 수출하는 법인 : 외환 거래 내역서
 - 2) 송장(invoice) 사본

5

소비세



□ 납세자

- 법인, 개인
 - 영토 내 소비세 품목 제조사
 - 소비세 대상 품목 수입하는 곳
 - 소비세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단순 파트너십의 동지(참여자)



□ 과세대상

- 소비세 물품의 판매(선적)
 - 소비세 대상 품목 무료 이전 포함
- 기부금, 파트너십 참가 지분으로 소비세 대상 품목 이전
- 자가 사용 소비세 대상 품목
- 소비세 대상 품목의 수입, 반입

□ 소비세 대상품목 거래일자

- 소비세 대상 물품을 구매자에게 운송하는 날
- 담보 목적인 경우 소유권 이전 날짜
- 수입물품의 경우 통관일

□ 과세표준

- 절대가격으로 고정되어 있는 소비세 대상 품목은 그 재화의 부피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
- 생산된 가축 소비재는 판매된 소비재의 가격이 과세표준
- 소비세 대상 품목 판매가격이 실제 비용을 고려한 가격보다 낮을 수는 없음
- 수입품의 경우 관세법에 의해 결정된 세관가격

□ 과세표준의 조정

- 물품의 전부 혹은 일부 반환, 반품



○ 거래 조건 변경

○ 할인

* 증빙서류 필요. 상품거래 후 1년 이내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소비세 대상 물품 수출 확인

○ 수출용 소비세 대상 물품 공급 계약서

○ 세관 신고서

□ 소비세 대상 품목 리스트 및 소비세율

○ 소비세 대상 품목은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됨

○ 소비세율은 제품원가와 물리적 측정단위 별로 고정비율로 설정됨

□ 세금계산 순서

○ 결정된 과세표준과 확정된 소비세율에 따라 계산

□ 세금공제

○ 우즈베키스탄 관세 영역에서 소비세 대상 품목을 취득 또는 수입할 때 우즈베키스탄 영토 내에서 지불한 소비세 금액만큼 공제

- 소비세 금액이 인보이스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세관신고서 등에 명시된 소비세 금액을 공제

□ 과세기간

○ 매월



□ 신고서 제출 절차

- 과세기간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 납부절차

- 관세법에 의해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
 - 수입된 소비세 대상 물품 중 소비세 인지 우표를 붙여야 하는 경우 소비세는 우표 부착 전 납부되어야 함

□ 소비세 인지우표 부착

- 담배 및 주류 제품에는 반드시 우표 부착해야 함

6 기타 세목



□ 하층토 사용에 대한 세금

- 하층토 사용자는 세금을 지불. (탐사, 광물 원료 및 무기물 추출을 위해 하층토를 사용하는 법인 및 개인)
- 초과이익세

□ 광물사용세

- 과세대상
 - 하층토에서 광물 자원 추출하여 가공 수행
 - 추출된 광물량에 대해 과세(광물목록은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



- 가공처리를 거친 완성된 탄화 수소 - 고체 무기물

* 일반적인 국내수요를 위해 추출되는 일정량의 광물자원은 과세 대상이 아님
(과세대상이 아닌 광물자원 목록은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

○ 과세표준

- 추출된 광물량에 대한 가중평균 판매가격
- 판매가격이 없을 경우, 추출(생산)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

○ 과세기간, 신고기간

- 과세기간 : 1.1 ~ 12.31
- 신고기간 : 법인 → 분기, 개인 → 1.1 ~ 12.31

○ 신고 및 납부절차

(신고)

- 법인 → 신고기한의 다음 달 25일 또는 연말까지(연간 제무제표 제출 기한까지)
- 개인 → 1년에 한번, 과세기간 다음해 2.1일까지

(납부)

- 소기업, 중소기업, 개인 → 신고서 제출기한보다 늦지 않아야 함
- 그외 법인 → 신고기한의 다음 달 25일 또는 연말까지(연간 제무제표 제출기한 까지)

□ 초과이익세

○ 납세자

- 특정광물을 추출하는 하층토 사용자

* 생산 공유계약에 의해 하층토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초과이익세 부과 *



- 광물을 이용하여 특정유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
- 그 외 대통령령으로 결정된 대상자
- 과세대상 : 법으로 정한 예상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
- 과세표준 : 비용제외한 순 초과이익
- 과세대상이 되는 광물목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짐)

□ 보너스(혜택에 대한 세금)

- 하층토 사용자가 한번 지불하는 세금(상업적 탐사 등에 대하여)
- 광물 탐사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는 면허에 대해 세금 지급
 - 면허증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 세무당국에 납부
- 매장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광물에 대해 지급(상업적 발견 보너스)
 - 발견된 광물 매장량에 대해 부과, 과세표준은 발견된 채굴가능한 광물 자원의 가치임
 - 토양채굴 지역 사용권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25일 이내 상업적 발견 보너스 계산하여 신고
 - 납부는 면허 취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루어져야 함

□ 외국인 투자자 특혜

- 생산 공유 계약에 관한 법률
- 생산 공유 계약은 외국 투자자에게 특정기간 동안 계약서에 명시된 토양 지역에서 광물 자원을 독점적으로 추출할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임
- 외국인 투자자가 지불해야 할 세금
 - 이익세, 토지세, 수자원 사용에 대한 세금, 하층토 사용에 대한 세금, 단일 사회급여, 소비세



○ 외국인 투자자 과세 특징

- 생산공유계약에 따라 발생한 소득과 다른 소득 구분하여 신고 납부
- 생산공유계약에 따른 특정 성과를 달성할 때 보너스(추가세금) 납부
- 환경오염에 대한 법에 따른 분담금 납부
- 법인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
- 외국인 투자자는 통관수수료를 제외하고 관세 면제를 받음
- 외국인 투자자가 법인이 아닐 경우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참여자 중 세금관련 책임수행자를 지정하여 주 세무당국에 신고하여야 함

□ 수자원 사용세

○ 우즈베키스탄 영토 내에서 기업활동을 위해 수자원을 사용하는 자

- 비거주자 법인인 경우 고정사업장을 통한 기업활동 수행시

○ 과세대상

- 강, 호수, 저수지, 각종 수로 및 연못, 지하수 등

○ 과세기반

- 사용된 물의 양

○ 과세표준 결정 절차

- 사용된 물의 양은 회계문서에 기록된 수질 측정 장치로 측정되어 표시됨
- 측정장비가 없을 경우 기타 신뢰가능한 방법 사용
- 납세자는 사용한 수자원 양에 대해 별도의 기록을 유지해야 함
- 수자원 공급망에서 사용하는 물과 지표 및 지하수 사용물은 각각 다르게 과세기준 결정



- 물을 공급하는 법인은 매년 1월 15일까지 물 공급량에 대한 정보를 주세무당국에 신고하여야 함
- 단일 토지세 납부자가 아닌 농업 기업은 과세 기간 동안 토지 1헥타르의 관개에 사용된 물의 평균 양을 기준으로 과세

○ 혜택

- 수자원 사용에 대한 세금 면제
 - 장애인 공공협회, 우즈베키스탄 체르노빌 협회가 소유한 기업으로 장애인 비율이 50%이상인 기업
 - 자발적 청산 법인
- 과세기반 감소(축소) : 과세표준, 과세기반에서 제외하는 것
 - 의약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지하수
 - 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지하수
 - 저장소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장소 내로 펌핑 된 지하수
 - 수력 발전소의 수력 터빈의 작동에 사용되는 물
 - 농지 세척에 사용되는 물
 - 열 전기 발전소 및 화력 발전소에 의해 사용된 물

○ 과세기간 : 1.1 ~ 12.31

○ 세금 계산 절차

- 과세 표준과 그에 따른 세율(대통령령에 따라 결정)에 따라 계산
- 데칸 농장의 수자원 사용에 대한 세금은 과세 기반 및 확정된 세율에 따라 주세무당국이 결정

* 데칸 농장(dekhkan farm) :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농업용지는 국가(주) 소유이며 그 중 가정(가족) 구성원에게 국가에서 임대해주는 소규모의 땅, 무엇이든 경작할 수 있고 가족구성원에게만 상속되며 영구임대가 되는 땅, 단, 매매 및 타인에게 양도 불가. 우즈베키스탄의 소의 93%가 이런 데칸 농장에서 길러지고 있음.



- 단일 토지세를 납부하는 농업 기업은 현 과세기간 12월 15일까지 신고
- 비거주자는 과세기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 세금 납부 절차

- 단일토지세를 납부하지 않는 농업 기업, 고정사업장을 통해 기업활동을 하는 비거주자법인, 데칸농장은 수자원 사용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함
- 과세기간동안 수자원 사용에 대한 세액이 최저 임금의 200배를 초과하는 법인
 - 매월 25일 이전에 연간세액의 12분의 1을 납부
- 과세기간동안 수자원 사용에 대한 세액이 최저 임금의 200배를 미만인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제외한 법인, 소기업 및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 각 분기의 세번째 달의 25일 이전 연간세액의 4분의 1 납부
- 데칸농장은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 1일까지 1년에 한번 납부
- 과소 납부시 벌금 부과 및 재계산하여 차액에 대해 과세

□ 재산세

1. 법인재산세

- 납세자 : 우즈베키스탄 영토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소유자가 없을 경우 사용자
- 과세대상
 - 금융리스 계약(임대계약)을 포함한 부동산
 - 미완성 건축물
 - 사용하기 전 장비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우즈베키스탄)

- * 부동산 등록(등기)기관은 부동산이 소재하는 주 세무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함
- *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님



- 과세기반
 - 감가상각을 고려한 재산의 잔존가치
- 과세기본 결정 절차
 - 과세대상에 대한 평균 연간 잔존가치
 - 비거주자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확인 서류에 명시된 가치에 근거하여 결정
- 혜택

(세금 감소 대상)

 - 물 공급시설, 하수 처리시설, 열분배 네트워크 시설, 가정용 보일러 실
 - 문화 예술, 교육, 보건, 체육 및 스포츠, 사회보장 분야 관련
 - 관개, 배수 네트워크
 - 환경, 위생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 소방안전, 화재 안전시설
 - 철도 트랙 및 공공도로, 파이프 라인, 통신 및 송전선로
 - 우즈베키스탄 내각령으로 결정된 미완성 건축물 및 부동산
 - 시민 보호 및 동원 목적의 재산
 - 근대화, 기술적 재건 관련 법인의 재산

(면제)

 - 법에 의해 정해진 공중 보건, 사회 보장, 교육, 문화 및 예술 조직
 - 주택 및 공동 서비스
 - 새로 설립된 기업 : 등록일로부터 2년간
 - 자발적 청산 법인
- 과세기간 : 1역년
- 세금 계산 절차
 - 법에 의해 계산된 과세기반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계산
 - 연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재산세 계산 내용 제출(1년에 1번 주 세무 당국에 신고)



- 부동산이 납세자가 등록된 주 세무당국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주 세무당국에 신고서 제출
- 현 과세기간 연도의 1월 10일 전에 납세대리인을 선출하고 주 당국에 납세대리인 신고 후 30일 이내에 주세무당국에 재산세 신고서 제출
- 해당 연도의 예상 평균 연간 잔존가치(혹은 연간 비용) 및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계산된 당기 세액 신고
- 소기업 및 중소기업 : 단일납세자

○ 납부

- 소기업 및 중소기업 : 매분기 셋째달 25일까지 법인재산세 연간금액의 4분의 1을 납부함
- 그 외 : 연간 재산세금액의 12분의 1에 대해 매월 10일까지 납부
- 비거주자인 경우 과세기간 다음해 2월 15일까지 1년에 1번 납부

2. 개인재산세

- 납세자 : 국제조세조약으로 면제되는 외국인, 혹은 데칸 농장을 제외한 재산 소유 개인
- 과세대상
 - 주거용 주택, 아파트, 여름별장, 차고 및 기타구조물, 건물
- 과세기반
 - 국가에 등록된 부동산 가치, 재산을 평가하는 권한있는 기관의 가치 평가가 없는 경우는 법으로 정한 재산 가치
 - 한 재산에 여러 소유자가 있는 경우 지분별로 계산
- 혜택
 - (면제)
 - 시민영웅(소련의 영웅, 노동영웅, 우즈베키스탄 카라흐모니 칭호를 수여받은 자)



- 전쟁 참가자, 전쟁으로 인한 장애인 (증명서 필요)
 - 10명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증빙서류 필요)
 - 연금 수급자
 -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공무원 등의 유가족, 미망인
- 세율적용 시 특이사항
- 개인 재산을 법인의 기업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법인재산세로 법인이 납부
 - 공동 소유 재산일 경우 지분 혹은 배분비율대로 안분 계산
- 세금 계산(신고) 및 납부
- 면세 혜택을 받을 자는 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 재산세는 1월 1일 현재 재산 지적도에 따라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계산
 - 공동 소유 재산은 소유 비율로 계산하여 납부
 - 과세기간동안 재산을 양도할 경우 당해 연도 1.1일부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까지 전 소유자가 세금 지불
 -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은 다음해부터 세금 지불
 - 상속받은 재산일 경우 상속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세금 지불
 - 재산이 소멸, 철거 되었을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부터 세금 납부 종료
 - 세금 납부 통지는 관할 주 세무 당국이 5월 1일까지 통지
 - 개인재산세 신고연도의 10월 15일까지 납부

□ 토지세

1. 법인 토지세

- 토지 사용 시 토지세 혹은 토지임대료 형식으로 부과

- 비거주자를 포함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사용 및 임대권 법적 소유자
 - 여러 지분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경우 소유한 지분만큼 부과
- 과세대상 : 소유권, 임대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 정착지(주거지)의 공용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님
 - 광장, 도로, 진입로, 관개 네트워크, 제방 등
 - 산림 공원, 공원, 가로수 길
 - 공동 주택 및 가정용 토지, 예비 토지
- 과세 표준
 -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구획의 총면적
 - 토지면적이 감소할 경우 감소한 달로부터 과세기반이 축소됨
 - 새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면적이 늘어났을 경우 다음달부터 과세기반으로 계산
 - 법인에게 토지세 세금 혜택(감소, 면제)이 있는 경우 그 적용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달부터 바로 적용되며 세금 혜택이 종료된 경우, 종료된 날의 다음 달부터 적용됨
- 혜택
 - 토지세 납부 면제
 - 문화, 교육, 건강, 사회복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토지
 - 장애인 공동 협회, 우즈베키스탄 체르노빌 협회 소유 법인으로서 총 직원의 50%이상이 장애인인 법인
 - 새로 만들어진 데칸 농장 : 국가 등록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2년간
 - 자발적 청산 법인
 -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 원예, 포도재배 토지, 트럭운송협회 집합 차고, 자연보호구역, 자연공원, 국립공원
 - 보건시설 토지(예방 및 치료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영구 임대되는 토지)



- 레크레이션 목적 토지
 - 역사적 문화적 목적 토지
 - 전력발전소, 변전소 및 그 구조물의 부속 토지
 - 수자원 관리를 위한 법인이 사용하는 토지
 - 전국 통신회선 관련 토지, 공공도로
 - 공공 교통 정류장과 지하철 역 및 그 시설이 차지하는 토지
 - 스포츠 및 피트니스 센터
 - 수도관, 급수 네트워크, 하수도관 관련 토지
 - 소방 및 비상 대응 관련 토지
 - 온수 공급용 순환 펌프 및 기타 유사한 설비를 포함한 주요 열 경로 관련 토지
 - 활주로, 유도로 및 항공기 주차 관련 토지
 - 숲, 산림 보호구역
 - 농업용지로 개간된 토지 : 개간일로부터 5년간
- 세율 적용시 특이사항
- 소유자의 잘못으로 토지의 질이 악화된 경우 토지의 질이 악화되기 전의 토지로 세율적용
 - 도시 행정 구역에 위치한 농지는 그 농지에 설정된 세율의 2배 적용
- 과세기간 : 1.1 ~ 12.31
- 세금 신고(계산)서 제출
- 각 과세기간의 1.1일 현재 기준으로 계산되며 1월 10일까지 주 세무 당국에 제출
 - 과세표준과 확정된 세율로 계산
 - 과세기간이내에 과세표준이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수정계산서 제출



- 과세기간이내에 농지의 총면적과 구성에 변화가 발생한 단일토지세 대상이 아닌 농업기업은 당해 과세기간 12월 1일까지 주 세무당국에 수정신고서 제출
- 소기업 및 중소기업 : 단일 토지세 납부

○ 납부절차

- 연간 토지세의 12분의 1을 매달 10일까지 납부
- 단일 토지세 납부는 신고연도의 7월 1일까지 연간 토지세의 20% 납부, 9월 1일까지 연간토지세의 30% 납부, 12월 1일까지 나머지 금액 납부

2. 개인 토지세

○ 납세자 : 개인, 데칸농장, 피상속인

○ 과세대상 : 데칸 농장의 경작지, 상속가능한 개인 주택, 개인 정원,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토지 할당분, 상속에 의해 주거용 주택과 건물이 함께 이전된 경우,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소유권 취득,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 또는 임차할 권한

* 아파트 부수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님

○ 과세표준

- 개인이 소유권, 임차권, 사용권을 가진 국가에 등록된 토지 면적
- 기관이 개인에게 토지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 기관의 자료에 의해 결정

○ 혜택

- 토지세 면제
 - 시민 영웅(우즈베키스탄 카흐라모니, 소련 영웅, 노동 영웅) 수여 받은 자
 - 전쟁 참가자(전쟁참가로 인한 장애인) : 전쟁 참가 증명서 필요
 - 단일 연금 수령자 : 혼자 사는 혹은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사는 연금 수령자



- 부모 중 1명이 사망하고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다섯 명 이상 있는 가족
 - 체르노빌 사고 피해자
 - 개인 연금을 받는 자
 - 정착민 : 토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 개인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 토지계획 제출일로부터 2년간
- 세율적용 시 특이사항
- 그 용도가 기업(법인)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지면 법인 토지세 세율이 적용됨
 - 개인이나 가족의 기업이 물품(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거주지에 거주하는 것과 동시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개인 토지세 세율이 적용됨
- 과세기간 : 1.1 ~ 12.31
- 세금 계산의 순서
- 개인 토지세는 주 세무당국에 의해 결정되어 짐
 - 주 세무당국은 개인토지세 납부자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을 유지
 - 혜택(특권)을 부여받은 자는 토지 소재지가 있는 주 세무당국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주 세무당국은 토지 세액과 납세고지서를 매년 5.1일까지 납세자에게 통지
- 납부 절차
- 토지 소재지 주 예산에 납부됨
 - 토지 할당 받은 다음달부터 납부, 토지가 감소된 경우 감소가 발생한 달부터 납부 감소
 - 과세기간 연도의 10월 15일까지 납부



□ 디젤연료 및 가스, 가솔린 소비에 대한 세금

- 납세자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법인
- 과세대상, 과세표준
 - 디젤 연료 및 가스, 가솔린 소비량, 판매량에 부과
- 과세 기간 : 분기
- 세금 계산 절차 및 납부 절차
 - 판매가격 기준으로 계산
 - 판매하는 법인이 소재하는 주 세무당국에 신고
 - 과세 기간 다음달 25일까지 분기별로 신고서(계산서) 제출

□ 의무적 납입금

1. 통합사회보장 및 연금보험 기여금

- 납세자
 - 우즈베키스탄 거주자 및 비거주자(항구적 사업장소가 국내에 있을 경우)
 - 시민권자, 외국인 영구거주자
 - 보험료 계산의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음
- 과세대상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외국에 파견되어있는 외교부 직원, 영사관 직원 등은 파견되기 전의 보수를 기초로 하여 계산
 - 단일과세대상 : 공화국 영토 내에서 외국 인력 사용 계약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력에게 지급되는 소득



○ 과세기반

- 지불된 소득금액
- 단일과세대상 :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소득

○ 혜택

(면제)

- 산업재해 또는 업무로 인한 기타 건강상 질병에 대한 보상금액
- 주 정부 혹은 외국 정부기관에서 지급한 보수(국제조세조약, 법에 의해 면제)
- 국방부, 내무부, 국가 안보국, 관세위원회, 헌법 재판소, 대법원, 민형사법원

○ 과세기간, 신고기간

- 과세기간 : 1역년
- 신고기간 : 한 달

○ 신고(계산) 및 납부절차

- 과세기반과 확정된 세율에 따라 매월 계산됨
- 통합사의보장료는 고용주에 의해 납부되며, 연금보험료는 개인(종업원, 노동자)의 소득에서 납부
- 한달에 한번 납부

○ 특이사항

- 보험료는 근로자가 근무한 날짜 수에 관계없이 한 달에 한 번 지급
- 기업 활동이 수행된 달의 25일 이전 보험료 납부
- 데칸 농장의 경우 신고연도의 10월 1일 까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
- 사업자 등록일 다음 달부터 계산하여 납부
- 지불 영수증(소득 영수증)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개월로 간주



- 고용주가 법적 책임을 하지 못하여 납부를 못한 경우 개인이 총 연간 소득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보험료 계산 납부
- 기업이 기업활동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경우, 보험료 납부 의무도 정지됨

2. 국가(주정부) 기금(펀드) 의무적 납입금

- 납세자 : 우즈베키스탄 거주자, 동지(참가자)
 - * 제외 : 비영리 법인(기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포함), 단일 법인세 및 토지세를 납부하는 법인
- 과세대상 : 순수익
- 과세기반 : 업종별에 따라 매출액, 리스수익금, 임대수입금, 판매량 등
- 과세 기간 : 1역년
- 신고 기간 : 분기
- 신고(계산)의 절차
 - 과세기반과 확정된 세율에 따라 매월 계산됨
 - 신고기간의 다음달 25일까지 분기 기준으로 계산하여 관할 주세무 당국에 신고

3. 공화당 도로 기금 수수료(2008년 기준)

- 개요
 - 우즈베키스탄 영토 내에서 차량을 구입하거나 일시적으로 수입할 때 수수료
 - 외국차량이 우즈베키스탄 영토를 통과할 때 수수료
- 납세자
 - 거주자 법인, 차량을 구입하거나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비거주자 기업
 - 외국소유의 차량에 의해 우즈베키스탄을 진입하거나 통과하는 운송, 승객 운반 차량의 운전자



○ 과세대상

- 구입 또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일시적으로 수입된 차량
- 외국소유 차량이고 우즈베키스탄에 진입하거나 통과하는 차량

○ 과세표준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내로 일시적으로 수입된 차량 혹은 구입 차량의 가격
- 우즈베키스탄 영토내로 진입하거나 통과하는 차량

○ 정부에 의해 주어지는 권리(혜택)

(면세)

- 장애인
-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오토바이나 차량을 받은 시민
- 법적 라이선스가 있는 승객운송 차량을 운영할 경우
- 40톤 이상의 운반능력을 갖춘 채석장 덤프 트럭
- 고아원, 실버요양시설, 장애인 시설에서 주예산으로 지원받은 차량
- 조직개편을 결과로 자동차를 인수받은 양수인

○ 세율 :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됨

○ 수수료 지불 절차

- 구입, 교환, 증여 등으로 차량 소유권을 획득한 영수증
- 임대 차량 취득
- 우즈베키스탄 영토내로 일시적인 차량 수입
 - * 수수료 지불에 대한 영수증 제출없이 차량 등록, 차량 검사 업무 수행 불가
 - * 우즈베키스탄 영토 내 외국소유 차량이 일시적으로 수입될 때 수수료 부과됨

□ 주정부 수수료

- 의의 : 주정부 기관이 문서를 발행하거나 확인을 해줄 때 받는 수수료



- 납세자 : 법적인 중요 행위, 공인된 문서발행 요구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 주정부 수수료 청구 대상
 - 특정 절차상 쟁점에 대한 항의서나 신고서, 영장, 고소장 등에 대한 문서발급
 - 단체 및 시민 파산 신청서, 분쟁조정신청서, 법적 사실 입증하는 신청서, 소송절차의 종결에 대한 결정, 청구 포기, 벌금 부과, 중재 재판소의 판결 취소 신청 등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및 영사관에 의한 공증 행위 수행
 - 시민 신분에 대한 기록 정정, 등록 등
 - 입국 허가서류, 체류증 발급 또는 연장 서류
 - 법인 및 개인기업의 주정부 등록
 - 특정 유형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면허 발급
 - 사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허가
- 일반 관할 법원의 주정부 수수료 면제(총 41항)
 - 원고 : 노동계약상 임금 및 기타 요구사항 청구
 - 원고 : 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상표, 마크, 저작권 및 기타 관련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
 - 원고 : 위자료 청구
 - 원고 : 가장의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보상금 청구
 - 원고 : 불법적인 행정벌금 부과, 불법적인 형집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분쟁소송
 - 원고 : 범죄로 인한 중대한 손해에 대한 청구
 - 중대한 손해(손상)이 범죄사건 때문인지에 대한 범죄사건소송에서 패소로 인해 항의한 사람



- 이혼소송에서 이의 신청, 항소한 사람
 -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술 신청한 법인 및 개인
 - 신청서상 법인 또는 개인단체 : 결정취소 요구, 형의 집행 연기, 재심사, 감소 요구
 - 법인 또는 개인단체 : 법원의 결정에 대한 사적인 불만 제기형태의 소송
 -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법적 권리위반에 대해 정부기관, 공무원이 부당한 결정에 대해 항소 시
 - 소비자 :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이익과 관련된 소송
 - 원고 : 허가되지 않은 벌채, 기타 산림 경영, 산림보호 위반에 대한 보상금 청구
 - 공공기관 : 단체가 소유한 역사적 문화유산에 대한 훼손, 파손에 대해 소송 제기 시
- **경제 법원의 주정부 수수료 면제(총 32항)**
- 농업 생산자 : 조달 및 서비스 기관에 의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소송(청구)
 - 기업(사업체) : 기업 활동 수행 시 의무위반에 대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항소
 - 원고 및 피고 : 기업청산에 관한 소송
- **공증 행위 수행에 대한 주정부 수수료 면제(총 18항)**
- 양육권, 입양, 공공연금 혹은 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한 공증
 - 국가 및 법인에 이익이 되는 재산 기증 계약서 및 유언장에 대한 공증
- **시민 신분을 등록할 때 주정부 수수료 면제(총 5항)**
- 국가 교육기관, 미성년자와 관련된 위원회 : 고아,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의 출생증명서 발생

- 출생신고, 사망신고, 입양 시 출생증명서의 변경, 성별 변경, 민사 법정 등록시 실수로 인한 증명서 발급
 - 실종, 정신질환으로 능력이 상실된 자, 3년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유로 인한 이혼증명서
 - 반복되는 증명서 발행, 갱생한 친척의 죽음에 대한 증명서를 바꾸는 것
 -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단체의 반복적인 증명서 발급
- 출국 서류 및 여권발행에 대한 주정부 수수료 면제
- 외교여권 발행
 - 출국허가서 발행 (친인척 사망, 외국법원 소환 시)
 - 16세미만 증명서 발급용
 - 공공보안상의 이유로 여권 발행
- 영사수수료 면제
- 국제조약(협정)이 있는 경우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시민의 본국 귀환
 - 호혜주의에 근거한 외교여권 발행
 - 외국 국가, 외국 기관, 국제기구를 영구적으로 대리하는 직원(가족)
 - 언론사 대표(그 가족 구성원)
 - 인도주의적 원조를 동반한 외국인
 - 16세 미만의 어린이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초청으로 방문한 외국국적시민
- 기타활동 수행 시 주정부 수수료 면제
- 노약자 및 장애자를 위한 기숙사에 살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
- 주정부 수수료 신고 및 납부 순서
-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현금 혹은 현금이 아닌 형태로 납부
 - 수수료 지불이 비현금 형태로 지불될 경우 은행에서 확인한 인보이스로 확인됨.



- 수수료 지불이 현금으로 지불될 경우 은행에서 발행된 확정된 양식을 수령하거나 공식적인 현금 사무 기관에 의해 발행된 바우처에 의해 확인됨. 이러한 모든 절차는 국가세무위원회와 재정부에서 정함.
- 주정부 수수료는 공공예산으로 납입되어 짐.

□ 관세

- 세관 당국이 관세법에 의해 징수
- 우즈베키스탄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의 대상이 됨. 과세기반은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가치)임. 관세율은 수입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5~70% 사이임. 통관세는 수입되는 물품의 가치에 대해 0.2% 부과됨. 통관세는 최소 25달러 이상 3,000달러 미만임

7 우즈베키스탄의 회계



□ 회계기준

○ IFRS의 도입

- 2015년 4월 대통령령 24의 NO-4720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자와 근대기업 경영방법의 실행을 위하여 IFRS 도입
- 모든 상장기업은 연간재무제표 공시할 때 IFRS를 사용하도록 강제함
- 재무상태표에 대한 감사는 국제감사기준에 의하여 감사되어야 함

○ 로컬 회계사의 실력부족

- 하지만 모든 형태의 기업에게 IFRS가 도입된 것이 아니며,



- 우즈베키스탄 회계사는 아직까지 IFRS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IFRS가 아닌 우즈베키회계기준을 사용해왔기에 회계방식을 한꺼번에 바꾸기에는 적응 시간이 필요함
 - 즉, 우즈베키스탄의 회계사는 서양의 회계기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기업의 과세소득을 전문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함
- 우즈베키스탄의 회계원칙
- 비금융회사 : NAS(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회계기준)를 사용하며, 아직 IFRS를 완전 반영하지 않았음
 - 금융회사 : CBU 지시(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법에 따른 회계원칙)
- 로컬 회계사 현황
- 타슈켄트 내에 250명 정도의 세무대리인이 있으며 향후 경제규모가 성장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므로 세무대리인 발전가능성이 높음
 - 1년에 약30장의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고 함
 - * 국세청 직원이 민간세무대리인처럼 세무상담을 해주어서 컨설팅료를 받는다는 점이 특이함
- IFRS와 우즈베키스탄(NAS) 회계기준의 차이
- 비록 NAS가 IAS에 기반하여서 만들어졌으나, 법에 명시된 회계구조가 본질적으로 IFRS와 다름
 - 다음은 IFRS와 NAS에서 중요한 차이가 나는 계정과목임
 - 금융상품
 - 자산의 손상차손
 - 자회사의 투자, 제휴와 합작투자
 - 이연법인세



□ 회계감사

○ 회계감사

- 2007년 4월 대통령령에 의하여 감사회사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김
- 여기에는 최소한의 정관자본, 필요한 주식보유량, 지역의 공인인증을 받은 최소한 회계감사인의 숫자, 3년 연속 후에는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의 순환 등을 담고 있음

○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 회사형태

- 공동출자 회사
- 은행과 신용조합
- 보험회사
- 투자펀드
- 법적단체와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하여 운영되는 자선과 다른 사회적인 펀드
- 주식과 상품거래소
- 자본 중에서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사업체
- 법적단체와 개인이 의무적으로 기부한 자금을 의하여 운영되는 비예산 펀드

8 — 최신 개정사항 —



□ 해외직접투자촉진을 위한 세계감면조치

- 해외직접투자투자시 소득세, 재산세, 인프라세, 통합세, 도로기금 등의 면제 혜택을 부여함



<해외직접투자 세금면제 대상분야>

연번	분야
1	전자, 컴퓨터, 부품 및 컴퓨터 기술
2	경공업 - 면, 모, 편직물, 혼합직물 등 - 속옷, 니트, 양말, 신발 등
3	실크(원단, 완제품 생산)
4	건축자재
5	조육 및 계란
6	식품(담배, 주류를 제외한 현지 원재료를 가지고 만든 가공식품)
7	육류, 유제품
8	생선가공 및 저장
9	화학
10	석유화학
11	제약(동물약품 포함)
12	포장자재
13	대체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소 건설
14	석탄(연탄제조, 세일산업 등)
15	전기합금철 및 금속 제조
16	기계엔지니어링
17	기계공구
18	유리, 도자기
19	미생물
20	장난감
21	관광(호텔·여행업, 17.6.1일부터 혜택적용)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법령조회 시스템(Lex.uz)

<해외직접투자 규모에 따른 세금면제 차등기간>

투자금액(US\$)	세금면제기간
300,000~3,000,000	3년
3,000,000~10,000,000	5년
10,000,000 이상	7년

- 단, 상기의 세금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해외직접투자 세금면제조건>

조 건
기업이 타슈켄트시 및 타슈켄트 주 외에 소재해야 함
우즈베키스탄 보증없이 해외에서 직접 투자해야 함
해외 투자기업의 법정자본금 비율이 33% 이상이어야 함(주식회사의 경우 15% 이상)
투자금을 경화 또는 최신기술설비 형태로 투자하여야 함
세금면제로 인한 이익의 50% 이상을 회사에 재투자하여야 함

<자유경제지구 투자 시 세제혜택 정보>

투자금액	혜 택	면세 대상
30만~300만 달러	3년간 면세	토지세, 재산세, 소득세, 통합세, 사회인프라세, 재건기금, 도로펀드, 원자재 설비 부품 등 수입관세
300만~500만 달러	5년간 면세	
500만~1,000만 달러	7년간 면세	
1,000만 달러 초과	10년간 면세 (추가 5년간 소득세, 통합세 50% 감면)	

□ 우즈베키스탄 세율변동상황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계산방법
법인세	7.5%	7.5%	14.0%	12.0%	18.4.1부로 아래특례 조항 삭제
부가가치세	20.0%	20.0%	20.0%	20.0%	
개인소득세	0,7.5%, 17%, 23%	0,7.5%, 17%, 23%	0,7.5%, 17%, 23%	12.0%	단일세율적용 (누진세율 폐지)
개인연금	7.5%	8.0%	8.0%	×	개인부담연금폐지
사회보장성 기금	25.0%	25.0%	25.0%	12.0%	정부투자기관 : 25% 민간기업 : 12% ※ 총급여기준 과세(한국인 급여, 병원비 등 공제 후)
토지세	2015년대비 15%인상	2016년대비 15%인상	2017년대비 15%인상	2018년대비 15%인상예상	매분기납부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계산방법
수도세	2015년대비 15%인상	2016년대비 20%인상	2017년대비 20%인상	2018년대비 20%인상예상	매월납부
매출액기준	1.6%	1.6%	3.2%	×	세목에서 폐지 ※ 현재까지 : 매출액기준과세
도로기금	1.4%	1.4%			
교육세	0.5%	0.5%			
재산세		5.0%	5.0%	2.0%	(건물구조물잔존가 - 공제 대상) × 2.0% → 감면특례 조항 18.4.1 일부로 삭제
기간사업세	8.0%	8.0%	×	×	세후이익×
고정자산구입시 VAT	20%	20%	20%	20%	고정자산을 Local 또는 수입하여 구매시 부가세 20%를 원가로 반영하였던 제도를 환급대상으로 변경
단일세	5%	5%	5%	4%	종업원 50인 이하 기준 단일세 과세대상선정에서 매출액기준으로 변경 (년간 10억숨이하 매출)
배당세	10%	10%	10%	5%	한국업체는 이중과세 방지법에 의거 5%이었음

□ 주요세법 개정사항

○ 부가가치세

- 예전에는 규모 있는 사업자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음
- 하지만 새로운 개정안은 업종, 직원 수에 관계없이 매출 10억숨 이상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 이에 추가적으로 2만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발생 예상됨



○ **개인소득세**

- 급여를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카드로 지급함에 따라서 근로자의 불만이 제기되므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축소신고하게 됨
- 이에 세무당국은 축소 신고 된 급여소득을 양성화하기위하여 소득세율을 기존의 누진세율(0~23%)에서 단일세율(12%)로 낮춤

□ **최신 세법관련 대통령령 (2018년 6월 29일, UP-5468)**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세금 인상 정책에 대하여

적용. 조세법 초안 조정 실무그룹 구성의 개정판에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조세법 초안을 개발하고 비효율적인 세금 및 관세 특권 및 특혜를 폐지한다.

1. 세금 부담의 지속적인 감소, 조세 제도의 간소화 및 조세 행정의 개선은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가의 투자 유치를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동시에 이 연구의 결과는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사업 및 투자 활동을 늘리며,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징수 수준 및 기타 의무 사항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 분야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를 보여 주었습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확립된 납세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세금 부담뿐만 아니라 간소하고 일반적으로 확립된 세제 하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제 주체 간의 세금 부담 수준의 현저한 차이입니다.

둘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납세자의 근로소득을 흐트러뜨리는 의무적 지불금으로 인한 중간단계 및 최종 소비자 제품의 비용상승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개발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높은 임금 세율로 인하여 납세자가 실제 직원수와 자본을 숨기는 것입니다.

넷째, 제공되는 혜택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제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경쟁을 보장하지 못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 및 관세 혜택을 통해 사업체를 지원하는 광범위한 관행입니다.

다섯째, 정부 기관과 기관 간의 정보 교환 메커니즘의 불완전성, 세금 및 세금 관리의 전자적 관리의 형식 및 방법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입니다.

여섯째, 수행된 통제수단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업체의 활동에 대한 간섭의 감소를 방지하는 통제활동의 이행에 있어 분석 및 위험관리의 명확한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점입니다.

일곱째, 부동산 및 토지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회계처리의 부족뿐만 아니라 그 관리를 위한 구조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지방세 및 수수료의 회수 수준이 불충분한 것이 문제점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제를 단순화하며, 2017 - 2021년 우즈베키스탄 개발의 5가지 중점 분야의 행동 전략에서 특정되는 세무 관리를 개선하고, 국제 통화 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oundation)과 세계 은행 및 국제 전문가의 다양한 공개 토론 및 권고의 결과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조세 정책 개선의 기본 방향 결정

- 경제에 대한 세금 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단순화되고 일반적으로 확립된 세제하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제 주체 간의 세금 부담 불균형 해소
- 세제 체계의 통일을 통한 조세의 최적화 뿐만 아니라 유사한 과세 기반을 가진 조세의 통합, 조세보고의 축소 및 단순화, 운영 경비의 최소화
- 거시 경제적 상황의 안정성, 우즈베키스탄 국무 예산의 형성 지속 가능성 및 수입
- 세법의 단순화, 조세 관련 분야의 규제행위에서의 모순과 갈등의 해소, 성실 납세자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 보호 강화
- 세법의 안정성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조세법 규범의 직접적인 효과 확보. 참고 규정 및 세율 등 기타 의무적 지불을 규제하는 법률 행위의 지양
- 외국인 투자자의 완전한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위한 유리한 조건 유지
- 과세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납세자의 가장 포괄적인 보상 기준을 산정하여 제공하고, 이전 가격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절차를 도입하여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광범위한 도입을 통하여 조세통제의 형태와 메커니즘을 개선



2. 우즈베키스탄의 세제 개선을 위한 개념 틀 안에서 2019 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조세제도 고려

a) 첫째, 임금 인상금에 대한 조세 부담은 다음과 같다.

- 개인 소득에 대한 단일 세율의 도입은 전체 국민의 12%정도이며, 그 중 0-1%가 개인 연금계좌에 배당된다. 이와 함께 현행 특정 민간 소득의 과세 면제 관련 절차는 최저임금의 4회분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 급여의 형태로 국민의 소득에서 공제 된 여분의 예산 연금에 시민의 보험료의 해제
-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편성 및 국유 기업, 공공 자본 (자본)이 50% 이상 국가의 점유율을 가지는 법인에 대해 25%의 단체 사회 급부를 설정하고, 공적 자본 (자본) 50% 이상 법인은 국가의 비율이 50% 이상 법인에 속하고 그 구조 부문은 다른 법률에서는 15%에서 12%로 감액되는 단체에 해당시킨다.

b) 둘째, 일반적으로 확립되고 간소화된 세금 납세자에 대한 과세는 매출액 (수익)에 대한 최적의 세금화와 다음과 같은 간소화된 세제 이행 기준에 따라 개선한다.

- 신탁 기금에 강제 공제 취소 (법인 매출)
- 법인 세율을 14%에서 12%로, 상업 은행은 22%에서 20%로 내리고 휴대 전화 서비스(휴대전화회사)를 제공하는 법인에게는 14%에서 20%로 법인의 수익성증가 수준에 따라 초과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다.
- 배당금과 이자의 형태로 지불된 소득에 대한 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한다.
- 전년도 말의 연간 매출 (수익)이 10억 이상인 기업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확립된 세금을 지불하기 위해 연간 10억 달러의 합계액을 웃돌거나 설립 기준액에 달했다. 동시에 연간 매출액 (매출액)으로 설정된 10억달러의 목표치는 적어도 3년마다 개정의 대상이 된다.
- 매출 (수익)이 최대 10 억엔의 법인, 법인의 고정자산세, 토지세, 수자원 사용세를 포함한 모든 사업체의 도입.
- 로열티 지불의 도입을 포함, 초과 이익 세의 계산 및 지급 절차를 개선한다.

c) 셋째, 단순화된 세금 납세자에 대한 세제 개선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 법인 재산에 대한 세율을 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하고, 과거에 민영화된 물건을 포함해 비효율적인 건축물등을 사용하는 법인의 세율 보다 높은 요금으로 계산하는 절차를 유지한다.
- 연간 매출액(수익)이 10억 달러 이하 납세자, 기본세율 4%로 턴오버세(수익)를 계산하고 납부하는 절차 및 자체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낼 가능성을 가진 납세자를 확립한다.
- 단일토지세 납세자를 위한 과세절차 보존.

d) 넷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순서는, 이하에 의하여 개선되고 있다.

- 본격적인 세액공제 제도 도입, 과세기준 지정, 은전수 감축, 세금 인하로 현재 세율을 2019년말까지 20%로 유지한다.
- 취득한 고정자산, 진행중인 건설 및 현재 그 가치에 포함되어 있는 무형 자산에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권리를 부여한다.
- 생산활동 단위에 설치된 주류 및 담배 제품 제조사의 소비세와 수수료를 합산하여, 관련활동을 위한 예산을 공화당 예산에 반영한다.

3. 신판에서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세법초안의 수립과 부속서에 기재되어 있는 비효율적인 세금 및 관세 혜택과 기호 철폐 조정에 관한 작업 위원회의 수정작업을 승인한다. 작업위원회(B. 마브로노프)

- 세무 분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및 사업대표자를 포함하여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일주일 이내에 조직한다.
- 2018년 11월 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세금, 세관 규칙에 비효율적인 세금 및 관세 혜택 폐지와 영구적인 세금 및 관세 혜택 부여 절차의 도입을 보장한다.
- 2018년 12월1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 등의 전문가의 도움으로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판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세법초안 작성을 보장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재무장관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세제개편안 및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세제개편안 작성에 관해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과의 교류를 조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2월중에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각에 대하여

- a) 납세자의 세금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리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승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 국가 세무 서비스 및 납세자에 대한 국세청 직원의 고급 교육. 여기에는 법률 기관의 이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세금의 계산 및 납부를 포함된다. 세무보고의 간소화, 자동회계를 도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제품과의 통합 확보세금 납부의 빈도를 포함하여 세금 관리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조치 프로그램연금 산정에 필요한 미지급 임금의 개별 회계에 관한 절차의 도입
 - b) 개개의 사업자가 허용하는 활동의 종류에 대해서 비판적 검토 및 삭감을 보장한다.
 - c) 세무당국의 통합정보 자원 기반에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되는 주(州)기관 및 조직의 목록을 승인한다. 2019년 1월 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세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세 및 기타 의무 납부액을 산출하고 도로 지도 개발에 활용되는 부처의 데이터베이스 정확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5. 우즈베키스탄의 토지자원, 지리, 지도, 국가생도 등에 관한 국가위원회는 국무위원, 재정부, 기타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법률기관의 고정자산의 시장 가치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하는 조치들을 대량평가 수행하는데 있어 선진 외국 경험을 고려하여 2개월 이내에 국무조정실에 제출한다.
 6. 경제부는 2018년 8월 1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재무부, 중앙은행 및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와 협력하여 2019-2021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개발에 관한 예측을 전략적 계획과 예측이라는 현대적 방법을 이용해 작성해야 한다. 본 규칙에 따라 정의되는 세제 개편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부총리-우즈베키스탄 재무장관 D.A. Kuchkarov
 - 2019년 예산 메시지에 본 칙령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과 규정을 제공한다.
 - 2019년 우즈베키스탄 국가 예산안 초안의 제출과 동시에, 2020-2021년 우즈베키스탄 국가 예산안의 매개변수에 관한 중기 예산 지침을 각료에게 제출한다. 해외 차입으로 지출된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2019-2021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국가 예산을 책정한다.
 8. 국세위원회, 관세청, 재정부 및 그들의 대리위원장들이 개인적으로 책임 있는 예산 전망을 하기 위해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주, 시, 카라켄트 공화국의 각료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9. 재정 및 예산의 규율을 강화하고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예산의 균형 있는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

2019년부터 부처, 수탁자 및 주 검사, 우즈베키스탄의 주정부 자본 중 허가 받은 자본에 대한 국가지분이 50% 이상의 사업체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30%의 순이익을 내어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예산에 기여하는 국영기업의 무조건적인 배당금 발생을 확보하는 것.

2018년 9월 1일까지 민영화된 기업을 지원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위원회에 대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국유재산의 최저 임대 율을 재검토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국세 위원회는 조세 및 기타의무적 지급 징수의 완전성, 고용된 시민의 최대한 합법화 및 임금 인상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두 달 안에 재무부 및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세위원회는 카라칼파크스탄 공화국 국무위원과 공동으로 우즈베키스탄의 회계회의소와 지역 및 시·도시의회와 협력하여 지역 및 도시들의 세금 기반의 확장과 소득예산의 추가적인 원천을 확인하기 위한 지침을 승인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균형을 보장하고 그들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세금업무와 재정, 그 외 기관 등 정부 당국의 엄격한 책임과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행동으로 적자의 발생을 방지한다.

10. 국가세무위원회, 국가관세청, 경제부,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 카라칼파크스탄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카키미야트 지역과 카슈켄트 시가 우즈베키스탄의 국내 텔레비전과 라디오 회사와 우즈베크 언론과 정보단체, 기타 관계부처 및 부서와 함께 체계적 기초에 근거하여 언론매체, 형성과 인터넷을 포함하여 이 법의 본질과 내용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을 구성한다.

11. 검찰총장실, 회계실, 국세청, 세관위원회, 재경부는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와 함께 납세자의 탈세 및 기타 의무적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연체와 미불입에 대한 개인 및 법인의 책임을 증가 시켜야 한다.

12. 우즈베키스탄 총리 Aripov A.N, 우즈베키스탄의 검찰총장 O.B Murodov,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 수석 보좌관 B.M Mavlonov에게 이 령의 시행을 감독한다.



9 기업인의 애로사항

□ 커미션료에 대한 비용 불인정

- 커미션(통행료)없이는 정상적인 사업 수주가 어려운 사실을 국내에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전액 비용 불인정되어 세금 추징 됨
 - 사업수주를 받으려면 공무원이나 수주업체에 일정비율을 커미션을 내는 것이 관행이며, 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지연되거나 중도에 파기되는 일이 허다함

□ 환차손 및 강제환전에 따른 어려움

- 17년 9월 시행된 외화정책 자유화 우선조치를 통해 시행된 단일환율조치로 환율이 반 토막남
 - 1달러 4,200숨에서 8,100숨으로 평가절하되어서 환차손 크게 발생함
- 받은 대가의 절반은 무조건 숨으로 환전해야하므로 국내에 송금되는 금액은 절반밖에 되지 못함

□ 급여를 현금과 카드로 지급

- 급여를 현금과 카드로 절반씩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 급여보다 축소 신고 하는 사업자가 다수임(통상 지급되는 급여총액의 20~30%만 신고함)
 - * 복지카드로서 충전해서 사용하며, 해당카드의 사용처가 모든 업장에서 사용가능하지 아니함. 따라서 직원들은 카드보다는 현금을 선호함

□ 외국인 사업체에 고유가 정책

- 외국인 항공업체에는 높은 유가를 적용하고 우즈베크 국내업체는 상대적으로 저유가 정책을 펴므로서 우리나라업체가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서, 수년째 적자에 빠져있음
 - * 우리나라 항공사 유류구입가격 1,200불, 우즈베크항공사 400불



□ 폐쇄된 문화

- 우즈벡사회에 동화되지 않으면 철저히 배제되고 격리 당함
 - * 정상적인 경쟁을 하기 힘든 고질화된 부패 문화
- 컴플레인 제기하였다가 바로 보복 조치 당함
 - * 공항시설 서비스 개선의견을 letter로 보냈다가 브릿지를 철거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당함
 - * 컴플레인을 선불리 제기하기보다는 협의하는 것이 필요함

□ 불안정한 사업구조 및 일관성없는 정책

- 사업이 안정되면 임차사업장에서 퇴거되어서 피해를 본 한국인 업체가 부지기수임
 - * 이러한 피해가 많아서 가게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꾸미지 않는다고 함
- 담당공무원이나 정권이 바뀌면 그동안 체결된 계약이 일괄 파기되는 일이 많음

□ 사업자에게 불리한 전기세

- 가정은 전기세를 낮게, 공장은 높게 설정함으로써 소비억제 및 산업친화적인 우리나라와는 다른 전기정책을 쓰고 있음

□ 비체계적인 공무원조직과 주먹구구식 행정

-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았고,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이를 시행할만한 인원 잘 갖춰지지 않음
 - * 총장이 휴가를 가면 잔디를 못 깎는다는 일화도 있음
- 우리나라와 달리 공무원신분이 안정되어있지 않음

(소득세 신고서 서식)

Приложение 7
 к изменениям и дополнениям, внесенным
 в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б утверждении форм
 налоговой отчетности»

Данная электронная форма представлена в виде рекомендации

ИНН 201523165

Вид документа 1 2 Отчетный период _____ Отчетный год _____

Вид документа: 1 - расчет, 2 - уточнения (через дробь номер уточнения)

Сведения о плательщике един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платежа и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ов граждан во внебюджетный Пенсионный фонд

Полное наименование юридического лица _____ человек

Численность работников в среднем за отчетный период _____

Микрофирма Малое предприятие Круп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Другие (нужное отметить знаком «V»)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_____

Местонахождение юридического лица _____

Почтовый адрес _____

Телефон: код _____ номер _____

Данный расчет составлен на _____ листах с приложением подтверждающих документов или их копий на _____ листах. Ед.изм Сум _____

Срок представления расчета (день/месяц/год) _____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в _____

(наименование орга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логовой службы по месту налогового учета)

Достоверность и полноту сведений, указанных в настоящем Справке, подтверждаю:	Заполняется сотрудником орга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логовой службы
Руководитель ИНН _____ Ф.И.О. _____ Подпись _____	<input type="checkbox"/> Лично <input type="checkbox"/> По почте на _____ листах
Гл.бухгалтер ИНН _____ Ф.И.О. _____ Подпись _____	Дата представления _____ ф.и.о. _____
Дата (дд/мм/гг) _____	Подпись _____

Приложение № 3 к
 Расчету един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платежа и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ов граждан во внебюджетный Пенсионный фонд
 ИНН _____

Справка-расчет минимального размера ЕСП

Показатели	Код строки	Сумма									
		В том числе:									
		семикне впяч рабочая неделя / Без выход ных	шестид невная рабоч я неделя с одним выход ным	пятиднев ная рабочая неделя с двумя выходными днями	четыре дневная рабочая неделя с одним выходным днем	триднев ная рабочая неделя с двумя выходными днями	двухднев ная рабочая неделя с одним выходным днем	однорднев ная рабочая неделя с одним выходным днем			
4	5	6	7	8	9	10					
1	2	3									
Количество работников, учитываемых при расчете минимального размера ЕСП:	010	1									
Фактически отработанные дни всеми работниками:	020										
Количество рабочих дней отчетного периода:	030	X									
Норматив ЕСП:	040	X									
Минимальный размер ЕСП (стр. 020 / стр. 030 x стр. 040)	050										
Сумма начисленного ЕСП за отчетный период (гр. 4 стр. 050 Расчет ЕСП и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ов граждан во внебюджетный Пенсионный фонд за отчетный период	060	X	X	X	X	X	X	X	X	X	X
- гр. 4 стр. 050 Расчет ЕСП и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ов граждан во внебюджетный Пенсионный фонд за предыдущий отчетный период	070*	0	X	X	X	X	X	X	X	X	X
Сумма доначисленного ЕСП на конец предыдущего отчетного периода (стр. 090 предыдущей Справки-расчета)	080		X	X	X	X	X	X	X	X	X
Сумма доначисленного ЕСП на конец отчетного периода (стр. 070 + стр. 080)	090		X	X	X	X	X	X	X	X	X

* В случае если значение строки «060» графы 3 больше или равно значению строки «050» графы 3, то в строке «070» графы 3 указывается

Примечание:

1. Графы 5 и далее заполняются в случае если на предприятии правилами внутреннего трудового распорядка, иными локальными нормативными актами, а при их отсутствии — по соглашению между работником и работодателем, установлены несколько видов рабочей недели (пятидневная рабочая неделя с двумя выходными днями или шестидневная рабочая неделя с одним выходным днем и т. д.).
2. В случае если плательщик ЕСП перешли на исчисление и уплату ЕСП с учетом минимального размера ЕСП в течение отчетного квартала данная Справка-расчет заполняется только за те месяцы отчетного квартала, в течение которых на них распространялся порядок исчисления и уплаты ЕСП с учетом введения минимального размера ЕСП.

Руководитель _____

Главный бухгалтер _____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Давлат статистика қўмитасининг
2017 йил 9 ноябрдаги 6-мб-сон қарорига
99-сон илова

ДАВЛАТ СТАТИСТИКА ХИСБО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СТАТИСТИЧЕСКАЯ ОТЧЕТНОСТЬ

Минсабор шахсларнинг давлат статистика қузатувини олиб бориш учун зарур бўлган ҳисбот ва бошқа маълумотларни тақдим этмасликда ифодаланган давлат статистика ҳисботларини тақдим этиш тартибини бузиши, ҳисбот маълумотларини бузиб қўрсатиши ёки ҳисботларини тақдим этиш муддатларини бузиши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Маммурий жавобгарлик тўғрисидаги кодексининг 215-моддасида белгиланган жавобгарликка сабаб бўлади.
Нарушение должностными лицами порядка предст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ческой отчетности, выразившееся в непредставлении отчетов и других данных,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татистических наблюдений, несвоевремен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тчетов влеч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установленную статьей 215 Кодекс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Интернет тармоғи воситасида, давлат статистика ҳисботларини электрон қўрнинида йиғиш автоматлаштирилган тизими eStat 2.0 орқали электрон рақамли имзодан фойдаланган ҳолда тақдим этилади.
eStat 2.0 тизимида мавжуд давлат статистика ҳисботларининг электрон шакли (шаблон) ни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Давлат статистика қўмитасининг www.stat.uz расмий сайтидан олишниғиз мумкин.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посредством сети Интернет через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ую систему сбор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ческой отчетности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иде eStat 2.0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Электронные фор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ческой отчетности (шаблоны), доступные в системе eStat 2.0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www.stat.uz
Ахборот махфиллиги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Давлат статистикаси тўғрисида” ги Қонунининг 7-моддасига мувофиқ қафолатланади.
Конфиденциальность информации гарантируе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7 Закон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е»

ТАШКИЛОТНИНГ МОЛНИЯВИЙ АХВОЛИ ТЎҒРИСИДА ХИСБОТ
ОТЧЕТ О ФИНАНСОВОМ СОСТОЯНИИ ОРГАНИЗАЦИИ

Тақдим этадилар Представляют	Тақдим этиш муддати Срок представления
Йирик тижорат юридик шахслар, уларнинг алоҳида бўлиналари (сугурта ташкилотлари, банклар, фермер хўжалиқларидан ташқари)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давлат статистика қўмитаси томонидан белгиланган рўйхат бўйича)	ҳисбот даврдан кейинги ойнинг 18 санасидан кечиктирмай
Крупные коммерческие юридические лица, их обособленны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кроме страховых организации, банков, 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 (по перечню установленном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комитетом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	не позднее 18 числа месяца, следующего за отчетным периодом

1-moliya shakli

Ойлик
Месячная

Статистик шакли тўддиришга сарфланган вақт, соатда (кераклисини белгиланг) Время, затраченное на заполнение статической формы, в часах (нужное отметить)					
1 соатгача до 1 часа	1-2	2-4	4-8	8-10	10 соатдан ортик более 10 часов
1					

Ташкилот номи Наименование организации	КТУТ ОКПО	СТПР ИНН

Ҳисбот даври Отчетный период	ой месяц	йил год



I БЎЛИМ. МОЛЯВИЙ НАТИЖАЛАР
РАЗДЕЛ I. ФИНАНСОВЫЕ РЕЗУЛЬТАТЫ

фонди (капитали) да давлат удуши, % да
дирекцияни доля в уставном фонде (капитале), в %

101 0

Кўрсаткичлар номи Наименование показателей	Сатр коди Код строки	минг сўм		тысяч сўм	
		Ҳисобот даври охирига (йил бошидан ортиб борувчи якумда) На конец отчетного периода (нарастающим итогом с начала года)			
		foyda прибыль	zarar убыток	1	2
A	B				
Фойда солиғи тўлағунга қадар фойда (зарар) Прибыль (убыток) до уплаты налога на прибыль	102				
Ўтган йилнинг тегишли даврига фойда солиғи тўлағунга қадар фойда (зарар) Прибыль (убыток) до уплаты налога на прибыль з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103				

II БЎЛИМ. ДЕБИТОРЛИК ВА КРЕДИТОРЛИК ҚАРЗЛАРИ
РАЗДЕЛ II. ДЕБИТОРСКАЯ И КРЕДИТОРСКАЯ ЗАДОЛЖЕННОСТЬ

A	Сатр коди Код строки	Жами Всего	шу жумладан муддати Ўтгани в том числе просроченная	минг сўм		тысяч сўм	
				Республика ташқарисидаги ҳамда қорхона фаолиятига ялоқадор бўлмаган сабаблар туфайли вужудга келган қарз Задолженность за пределами республики и образовавшаяся по причинам, не зависящим от предприятий			
				(1-устундан) жами (из графы 1) всего	(2-устундан) шу жумладан муддати Ўтгани (из графы 2) в том числе просроченная	3	4
Дебиторлик қарзлар – жами Дебиторская задолженность – всего (202+203+204+205+206)	201						
удаян: из нее:							
харидор ва буюртмачилар покупателей и заказчиков	202						
етказиб берувчиларга ва пудратчиларга берилган аванслар авансы, выданные поставщикам и подрядчикам	203						
соллиқлар ва бюджетга йиғимлар бўйича аванс тўловлари на мақсадли давлат жамғармалари авансовые платежи по налогам и сборам в бюджет 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целевые фонды	204						
шўба ва қарям хўжалик жамиятларининг қарзи (ички идоравий қарз) задолженность дочерних и зависимых хозяйственных обществ (внутриведомственная задолженность)	205						
банк ва дебиторлик қарзлар прочая дебиторская задолженность	206						
201-сатрадан: из строки 201:							
Ҳукумат қарори бўйича муддати узайтирилган қарз Задолженность, отсроченная по решения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207						
201-сатрадан: из строки 201:							
Хорижий давлатлар суларидан ва халқаро арбитражлардан изоляцияланган	2011						
Оспариваемая в судах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арбитражах							
203-сатрадан: из строки 203:							
энергия ресурслари учун за энергоресурсы	2031						
Кредиторлик қарзлар - жами Кредиторская задолженность-всего (209+210+211+212+213+214+215)	208						
удаян, етказиб берувчилар ва пудратчиларга из нее, поставщикам и подрядчикам							
олинган аванслар полученные авансы	210						
бюджетга тўловлар бўйича қарз задолженность по платежам в бюджет	211						
меҳнатга ҳақ тўлаш бўйича қарз задолженность по оплате труда	212						
давлат мақсадли фондларига тўловлар бўйича қарз задолженность по платежам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целевые фонды	213						
шўба ва қарям хўжалик жамиятларининг қарзи (ички идоравий қарз) задолженность дочерним и зависимым хозяйственным	214						



참고문헌



1. 국외 참고자료

- Uzbekistan Tax Guide / PKF, 2016 · 2017
- Tax and Investment Guide Uzbekistan / Deloitte, 2017
- Special Tax Alert Uzbekistan Tax and Fiscal Policy Improvement Concept / Deloitte / 2018
- 우즈베키스탄 세법 2008년

2. 국내 참고 자료

- KOTRA 국가정보 우즈베키스탄 / 코트라 /2018
- 우즈베키스탄 800일/ 연인 M&B/ 2016

3. 관련 홈페이지 참고 자료

- [http : //my.soli.uz](http://my.soli.uz)/우즈베키스탄 국세청 홈페이지
- [http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http : //overseas.mofa.go.kr/uz-ko/](http://overseas.mofa.go.kr/uz-ko/)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http : //uzkorean.net/](http://uzkorean.net/)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홈페이지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우즈베키스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 : 044 - 204 - 2814

팩스 : 044 - 216 - 6066

원고 작성 및 편집

국제조사관 김문정

국제조사관 조성철

국제조사관 노윤주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4-2814)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의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2018